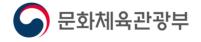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 방안 연구



제 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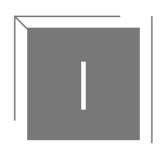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2024년 6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김 세 원

١.	서론 ·		٠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5
ΙΙ.	문화처	육관광 분야 재정정책 환경분석	7
	제1절	재정정책 거시환경분석 · · · · · · · · · · · · · · · · · · ·	11 14 20 26
	제2절	거시 환경 분석에 따른 문화재정 기조 변화 ···································	35
III .	문화처	육관광부 소관 기금 재정 현황 및 추이분석 ·····	39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재정현황	41 49 56 60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비교분석 · · · · · · · · · · · · · · · · · · ·	98
	제3절	소결 ····································	

IV.	문화차	∥육관광부 소관 기금 관련 이슈분석 ⋯⋯⋯⋯⋯⋯⋯⋯	125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관련 논의사항 ····	127
		1. 기금 관련 지적사항 및 논의사항	·127
		2.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129
	제2절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을 위한 의견 수렴 ····	135
		1. 조사개요 · · · · · · · · · · · · · · · · · · ·	135
		2.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	137
		3. 전문가 의견 분석 ·····	147
	제3절	기금 효율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통합사례	153
		1. 기금제도의 정비 : 효율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	153
		2. 기금의 통합 : 농림축산식품부 사례를 중심으로	·157
٧.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정책과제	161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정비의 기본방향	163
		1. 기금 정비의 방향성 ·····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에 대한 정비 방안 ·····	
	제2절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 방안	173
		1. 기금 간 전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2. 융합계정 · · · · · · · · · · · · · · · · · · ·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통합 ·····	
	제3절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	190
		1. 기금간 전·출인과 관련한 현행의 법태도 ·····	
		2. 새로운 방안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	194
		3.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 검토 ·····	
참고	1문허		197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 구조의 특징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 및 6개 기금으로 구성되며, 문화체육관 광부는 정부 부처 중 사업성 기금 운용 개수가 가장 많은 부처 중 하나임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 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임
- 사업성 기금은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2024년 현재 49개의 사업성 기금이 설치 및 운용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동일한 6개 기금을 소관하 고 있으나 예산규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약 2.5개 더 큰 규모임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 규모(본예산 기준)는 정부 총지출 대비 1.2%(7조 3,968억 원)의 소규모 재정이고, 이 중 기금(3조 6,666억원) 비중이 약 50% 수준으로, 기금 의존도가 높은 재정 구조임

■ 기금 간 재정격차 심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자체수 입의 부재로 인해 재정안정성이 하락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004년 법정부담금이었던 모금제도 폐지가 되면서 기금의 재정자립도 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2024년 행정부의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통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정책 추진으로 법정부담금이 폐지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애초에 법정부담금이 없이 일반회계 혹은 언론진흥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고 있음

재정자립도가 높았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해외여행 감소로 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관광업체 지원을 위한 지출 증가로 인해 여유자금이 축소됨. 더 나아가 2024년 법정부담금이었던 출국납부금이 30% 축소가 결정되면서 기금 수입 축소가 예상됨

현재 가장 재원이 많은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대부분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에서 비롯됨

부처 산하의 여러 기금으로 인한 재정칸막이와 기금 간 재정형편 격차는 기금의 가용재원에 따라서 재정이 배분되도록 유도되기 때문에 재정집행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지적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문화·체육·관광 분야 융합사업의 중요성 대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분야인 문화, 체육, 관광의 융복합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한 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음(기획재정부, 2021)

- 문화 분야는 제조와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범용 분야에 속하며 감성을 중요시하는 현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타 분야에서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시도하고 있음
- 관광의 경우 문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증가로 문화 관광(Cultural Tourism)의 개념이 강조되어 왔으며, 정책 역시도 문화와 접목한 시도들이 확대되고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체육 분야 역시 지역 특화 레저+웰니스+관광 융복합 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와의 융복합 사업을 시도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23d)

2. 연구 목적

■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운용의 현황 및 추세 분석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금운용계획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간 수입, 여유재원 등 운용 측면에서 각 기금의 현황 및 추세를 진단하고 기금 간의 격차를 파악함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6개 기금들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들의 안정성 및 연계활용 방안 제시

기금 간 전입 및 출입 등 기존의 임시 조치를 넘어 기금 전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기금 통합, 연계사업 발굴과 이를 위한 계정 마련 등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구조 개선 및 지속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재정 현황 분석

- 코로나19 기점으로 최근 5년간(2019~2023년) 재정 현황 자료 분석을 기초로 함
- 기타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 폐지 당시의 논의나 관련 자료는 2000년대 이후 자료를 분석함
- 필요시, 2024년도 정부 예산 관련 자료도 분석 범위에 포함시킴

▮ 대상적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

- 2019년~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운용계획

▮ 내용적 범위

재정정책 환경 분석

- 정책 환경 변화 요인에 따른 재정 추이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 자료 분석

-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수입, 여유재원 규모 등 재정 현황 분석

기금 안정화 및 연계 활용 방안 검토

- 기금 간 통합방안 및 연계 방안 검토
- 기금 통합 및 연계 강화를 위한 절차 및 과제에 대한 분석

타 부처 기금 사례 분석

- 기금 안정화 및 연계방안 등과 관련해서 타 부처의 기금 사례에 대한 사례 분석

2. 연구 방법

▮ 기초자료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관련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

- 연구보고서, 논문, 정책자료집 등을 수집하여 분석함

정부 재정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의 재정통계, 의안정보시스템의 정부 예산안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의 주요정책 및 정보공개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 사례분석

국내 타 부처의 관련 기금 사례 발굴 및 사례 분석

- 기금 안정화 및 연계 방안 등과 관련된 타 부처 사례 발굴(전문가 인터뷰나 부처 관련 자료 분석)
- 사례 기금 관련 부처 및 운용기관 방문을 사례 조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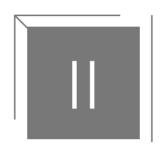
▮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FGI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관리주체 및 정부 담당자 대상 인터뷰

- (대상) 6개 기금 관리 주체 담당자,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 관리 담당자 등
- (내용) 기금 안정화 및 연계의 필요성, 기금 통합 및 연계 강화를 위한 절차, 과제 및 불안요소에 대한 의견 수렴, 공동 및 연계 사업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관련 전문가 대상 FGI

-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관련 이슈 대응과제에 대한 연구자료 발표 연구자, 기금 관련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전문가
- (내용) 전문가 그룹별 정책 방안 및 과제(기금간 통합 방안, 기금관리주체 결정 방안, 법률개정안, 타부처 사례 발굴 등) 에 대한 전문가 자문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 정책 환경 분석

제1절. 재정정책 거시 환경 분석 제2절. 거시 환경 분석에 따른 문화재정 기조 변화

제1절

재정정책 거시 환경 분석

1. 팬데믹 이후 물가상승 및 가계소비지출 변화

■ 코로나19 및 국제 정세에 따른 물가상승의 지속세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전 세계의 공급망 붕괴를 일으켰고, 더불어 우크라 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원유, 원자재 등의 국제 가격 상승 압력에 따른 물가상승폭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음(김덕파·어윤종, 2022)

- 국제 물가 상승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교통,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주택, 수도, 전기 등 부문의 추세 인플레이션(기본적인 인플레이션에서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한 소비자물가 변동 추이)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글로벌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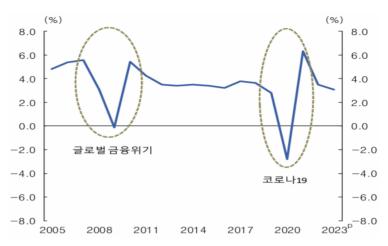
코로나19가 지난 팬데믹 이후에도 글로벌 경제는 성장률은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2023~2025년의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7%로 코로나 위기 이전의 5년(2015년~2019년) 연평균 성장률 3.0%보다 0.3%포인트 낮아질 전망임. 한편 2023~2025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연평균 2.8%로 코로나 이전 5년 평균인 1.8%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연합인포맥스, 2023.9.13.)

이렇듯 코로나19 이후의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때보다 더 심각한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지정학적 긴장 정세에 따라 전반적으로 성장 둔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음(한국은행, 2024)

위와 같은 국제 경제적 위험에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 있음. 우리나라도 원유 등 수입 물가 급등세로 인해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를 넘었음. 또한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수요 증대가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도 계속 높은 수준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 계속 예측됨(장민, 2022)

▮ 팬데믹 이후 가계소비지출의 변화

코로나19 시기에 맞추어 가계소비지출의 패턴에도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통계청이 2021년 발표한 '코로나19를 전후한 가계소비지출의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발생



자료: 한국은행(2024), p.3

[그림 2-1] IMF가 제시한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2년차인 2021년 분기별 가계소비지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2,419천원), 3.8%(2,475천원), 4.9%(2,544천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평균 소비지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평균치인 2,457천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음

코로나19 전후로 하여 소비지출액이 상승한 부문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인 반면에, 소비지출액이 하락한 부문은 의류·신발, 오락·문화, 음식·숙박으로 나타남

하지만 최근 수출 감소, 수입 증가 등 대외 부문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비는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서 2021년 4/4분기부터 2023년 1/4분기까지 GDP 성장률이 상회함에 따라 가계소비의 회복도 약 4%대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음(이태열, 2023)

- 다만, 위와 같은 가계소비 회복세는 팬데믹 이후 소비심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가계소비가 소득의 뒷받침 없이 증가한 성격이 존재하긴 했으나 전체 경제 성장률 하락을 완화시키는 데는 기여한 부분이 있음

202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을 살펴보면 가구월평균소득은 502만 4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9%가 증가하였는데, 가계지출은 381만 3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2%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여기서 통신, 주류·담배 지출은 감소하였는데 주거·수도·광열, 보건, 음식·숙박이 증가하였고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이 전년동분기대비 12.3%나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표 2-1> 참고)

다만 2023년 11월 한국경제인협회가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국민 소비 지출 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3%가 내년 소비 지출을

올해에 비해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하였고, 가장 큰 이유로 고물가 지속(43.5)를 꼽은 만큼, 앤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민간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부분 이 존재함

<표 2-1>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금액					증감	남률	
	′22.4/4	구성비	′23.3/4	′23.4/4	구성비	'22.4/4	′23.3/4	′23.4/4	실질
소 비 지 출	2,697	100.0	2,808	2,833	100.0	5.9	3.9	5.1	1.6
식료품·비주류음료	399	14.8	431	409	14.4	-1.1	6.0	2.4	-3.9
주 류 · 담 배	39	1.5	41	38	1.4	4.2	-1.6	-2.8	-4.1
의 류 · 신 발	164	6.1	116	171	6.0	1.6	-4.7	4.2	-2.4
주 거 · 수 도 · 광 열	296	11.0	290	324	11.4	6.0	7.9	9.5	6.6
가정용품·가사서비스	114	4.2	120	128	4.5	-11.5	-6.2	11.4	6.3
보 건	231	8.6	231	253	8.9	-0.8	1.7	9.2	7.4
 교 통	345	12.8	326	356	12.6	16.4	4.7	3.4	3.0
	135	5.0	130	129	4.6	5.0	-1.1	-4.3	-4.6
오 락 · 문 화	173	6.4	211	194	6.8	20.0	16.7	12.3	9.3
교 육	176	6.5	256	177	6.2	14.3	7.0	0.5	-1.4
음 식 · 숙 박	415	15.4	443	433	15.3	14.6	2.1	4.3	-0.2
기 타 상 품 · 서 비 스	210	7.8	213	223	7.9	-3.7	0.8	6.0	1.5

자료: 통계청(2024), 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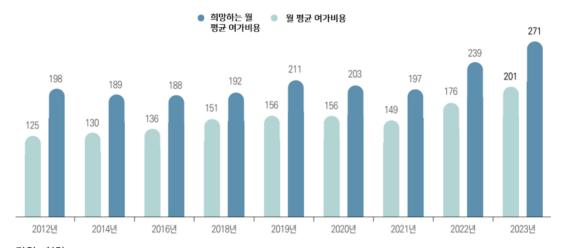
■ 물가상승 및 가계소비지출의 변화가 문화·체육·관광에 미치는 영향

2020년 기준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지출항목별 민간지출 성장률을 보면 오락·스포츠 및 문화 부문은 -19.2%, 숙박 및 음식점 서비스는 -13.8% 등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간 소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알 수 있음(김형종·송철재·송정 연 외, 2022)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문화·관광·콘텐츠 생산 뿐만 아니라 소비 또한 증가세도 전환되면서 가시적인 회복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추세임

예로, 「2023년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민들이 소비한 월 평균 여가비용은 20만 1천 원이며, 이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남([그림 2-2] 참고). 또 「2023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참여할 의향이 2022년 8.8% 대비 2023년 10.3%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





단위: 천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a), p.40

[그림 2-2] 월 평균 여가지출비용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4분기 가계소비지출 비목 중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오락·문화 지출은 19만 4천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2.3% 증가하였음. 이 중에서 국내·외여행 등단체여행비는 전년동기대비 88.5%, 운동 및 오락서비스는 3.7%, 문화서비스는 2.1% 지출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2-2> 참고)

- 이와 같은 결과는 그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억눌려있던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소비 억제 심리가 앤데믹을 통해 해소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 특히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도 자유로워지면서 국내외 대면 관광 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주목할 수 있음

<표 2-2> 2023년 4/4/분기 오락·문화 가계소비지출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211 221 1 222 1 1 1										
		금액					증감률			
	′22.4/4	구성비	′23.3/4	′23.4/4	구성비	′22.4/4	′23.3/4	′23.4/4	실질	
오 락 · 문 화	173	100.0	211	194	100.0	20.0	16.7	12.3	9.3	
· 오락 및 오락서비스	29	16.6	35	30	15.3	20.9	2.9	3.7	0.8	
· 문 화 서 비 스	42	24.2	45	43	22.0	2.0	0.6	2.1	0.3	
·단체 여 행 비 ¹⁾	26	15.1	57	49	25.3	277.2	150.5	88.5	75.9	

주: 1) 단체여행비: 국내단체여행비, 국외 개인 및 단체여행비

자료: 통계청(2024), p.6

- <그림 2-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와 별개로 백신접종률이 높아지고 국민의



자료: 김형종·송철재·송정연 외(2022), p.87, 한국문화정보원(2021) 자료 재인용

[그림 2-3] 2021년 월별 공연 매출액 및 백신접종률, 확진자 수

민감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공연 대면 관람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김형종·송철재·송정연 외, 2022)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및 국제 정세에 따른 물가상승 및 소비위축 현상은 팬데믹 종료와함께 소비회복세를 띄고 있는 양상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경우 팬데믹 시기에 물리적인소비 압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었으나, 앤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완화되고 여가와 문화 활동 등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 소비가 크게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소비 진작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사업들이 다시 관심을 받고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여전히 높은 체감물가 및 이에 따라 변동성이 큰 소비자물가지수로 인해 가계소비지출의 긴축 운영이 언제든 재발될 수 있는 만큼, 이 때 가장 먼저 긴축 지출 항목으로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은 문화 및 여가 분야의 소비도 추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

2. 인구구조의 변화

■ 전 세계적인 인구감소 현상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한 나라에서 인구는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임.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한 나라의 인구 구성원인 국민 개인은 생산활동을 하는 주체이자 담당자, 내수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로서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주체로 여겨짐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1750년부터 1930년까지 인구가 약 두 배 정도로 증가하는 인구폭발 시대를 거쳐 이후 소산소사(小産小死)를 실천하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 저출산의 문제를 겪었음.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출산율을 회복하여 최근 인구대체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과거 유럽국가들에 비해 단기간에 급격한 인구증가를 이루었으나, 1920년대부터 소산소사(小産小死)를 주장하였고, 2008년부터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인구감소는 어느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미국 럿거스대 교수이자 인구·도시 계획 전문가인 앨런 말라흐(Alan Mallach)는 그의 저서 '축소되는 세계(원제: Smaller Cities in a Shrinking World)'에서 2040년이 되면 전 세계 국가 중 1/3인 65개 국가에서 인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며, 2070년 즈음은 전 세계 인구가 감소하는 변곡점의 시기로 예측하였음

이렇게 인구가 감소될 시에는 고령인구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와 아동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서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됨. 예를 들어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숙련된 노동자가 감소하면서 생산성과 혁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또 새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자본조달이 어려워지고, 줄어드는 세수에 비해 고령층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임(Mallach,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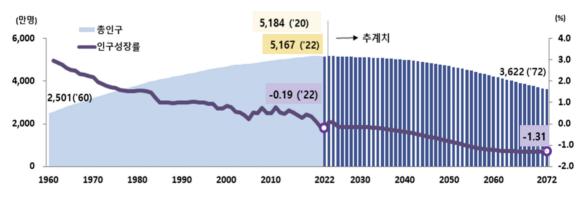
▮ 한국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위에서 언급한 전 세계의 인구감소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여기에서는 통계청이 2023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를 설명하고자함

먼저 총인구를 볼 때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총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22년에는 5,167만 명에서 2030년 5,131만 명,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이를 전망임

특히 인구성장률이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기는 2020년도에 진입하면서 나타나는데, 2022년 -0.19%에서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 수준을 거쳐 이후 감소속도가 더욱 빨라져 2072년에는 -1.31%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그림 2-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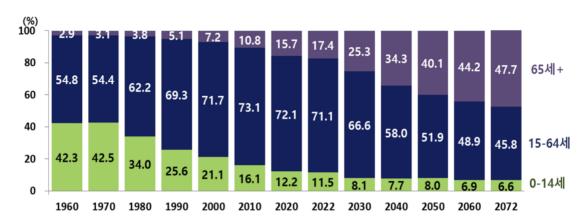
인구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는 출생, 사망, 국제이동이 있는데, 통계청(2023)에 따르면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증가 수치가 2022년 -11만 명에서 2072년 -53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됨. 즉, 최근 저출산율, 혼인감소에 따른 미혼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사망자수에 비해 출생아수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이며, 해가 거듭될수록 해당 수치는 더 낮아질 것을 의미함. 또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 유입 규모도 2022~2023년 15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나 2024년 이후에는 6만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될 때 외부로부터의인구 유입 수준도 점차 낮아지게 됨으로써 결국 국내 총 인구수가 계속 감소되게 될 것임



자료: 통계청(2023). 보도자료_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년 12월 14일, p.1

[그림 2-4]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1960~2072년

한편, 연령계층별 인구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15~64세로 분류되는 생산연령인구는 총인구의 71.1%(3,674만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7.4%(898만 명), 0~14세 유소년 인구는 11.5%(595만 명)인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2072년이 되면 생산연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총인구 대비 45.8%로, 저출산에 따라 유소년인구 또한 6.6%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반해 고령인구는 47.7%로 매우 높아질 전망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년 12월 14일, p.7

[그림 2-5]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1960~2072년(중위)

위 현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72년 63.4세로 높아질 전망임. 이는 세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초고령사회의 진입 속도로 나타나며, 2050년 기준으로 볼 때 OECD국가 중 총인구의 평균연령이 세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함(윤소영·김윤경, 2023)

결국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나타나는 저출산, 혼인 감소에 따른 미혼율 상승, 초고령사회로 의 빠른 진입 등은 총인구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급속히 나타내면서 지속적인 인구 위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됨

▮ 인구 위기가 경제 및 재정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구 규모 감소와 고령화 등의 인구 위기 문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성장률, 납세 등 국가 경제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됨

거시경제변수에 있어 경상GDP 증가율은 2020년대 평균 3.76%의 증가율로 성장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2050년대에 들어 2.1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또한 경제활동참가율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지속 축소되어 2020년대 63.3%에서 2050년대에 들어 53.4%로 낮아질 것으로 것이며 이에 따라 고용률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김학수·이태석·홍우형, 2021)

이에 따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결국 노동력 부족 문제로 나타나 국가경 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총부양비가 2022년 40.6명에서 2072년

118.5명으로 증가되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통계청, 2023; 국회예산정책처, 2023)

납세 부문에서도 볼 때,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세입 기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또한 인구변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는 국민부담률 및 사회보 장부담률을 높일 것으로 예측해볼 때, 인구변화는 부족한 세입 상황에서 더 많은 지출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국회예산정책처, 2023)

- 예를 들어, 고령인구 비중이 1%p 상승할 때 1인당 총수입은 1.12% 감소하고,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1인당 의무지출은 약 1.49% 상승하고, 그 중에서도 복지에 대한 의무지출은 2.32%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됨(국회예산정책처, 2023)
- 인구감소 위험은 생산가능인구의 축소로 경상 GDP 증가율의 둔화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자수 축소 현상으로 나타나며,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등 총수입 항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물론 장기재정 전망 측면에서 복지, 사회안전망 등을 국가의무지출 규모가 인구감소율에 따라 점차 축소될 것이 예상되지만, 그 축소율보다 총수입 축소율이 훨씬 크게 하회할 것이 예측됨에 따라 결론적으로 향후 국가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김학수·이태석·홍우형, 2021)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저출산 흐름 개선과 인구감소 시대에 걸맞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목표로 한 저출산 환경개선,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등의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음(성창훈, 2022)

- 「재정비전 2050」 수립 등을 통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 및 사회의 구조적 문제 전반에 대한 개혁과제를 발굴하여 미래위험 대비 재정투자 체계, 효과성 평가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개선,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관리체계 등을 구축하고자 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22)

<표 2-3> 저출산 흐름 개선과 인구감소 시대에 맞는 경제사회시스템 개편 전략

전략	주요 내용
 저출산 환경 개선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초등·마을 돌봄 운영 20시까지 확대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결혼·출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지원 강화
경제활동인구 확충	OECD 평균(64.8%)보다 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9.9%) 제고 고령자 고용연장과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 인적자본 등 생산성 제고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교육·병역 제도를 인구감소 시대에 맞도록 개편 메가시티 중심 경제협력권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확산 방지 로봇(돌봄, 제조 등), 바이오헬스 등 미래 유망산업 발굴·육성
고령사회 대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고령화로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부족한 의료·돌봄·요양 서비스 확충

자료: 성창훈(2022), p.61

■ 인구구조의 변화가 문화·체육·관광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응,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중요성, 지역 인구 변화 등에 대한 문제 해결 등이 강조되면서 문화 분야에도 크게 문화향유 영역, 문화예술교육의 대상별 접근 방식, 창작과 매개 영역, 시설 등 기반 영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윤소영·김영현, 2021)

- 특히 문화소비인구, 관계인구의 개념을 새롭게 설정, 활용하여 정책 대상으로서 국민 개인의 삶에 대한 다양성과 개방성 인정,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삶의 균형감 있는 성장, 정부-민간·중앙-지방· 부처 연계 등 다층적 문화적 접근이 반영된 새로운 정책 목표 설정이 요구됨



자료: 윤소영·김영현(2021), p.137

[그림 2-6]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방향과 대응전략

특히 정책대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문화정책은 좀 더 생애주기별 개인의 문화적 취향과 개성을 존중하고 집중하는 정책, 내국인-외국인, 향유자-창작자를 구분하는 방식을 지양한 연령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1인

가구나 고령자 등의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새로운 정책 발굴을 중요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관광 및 체험관광, 고령자들의 신체활동이나 문화활동, 여행경험 등 고령자 생활 전반에 대한 소통 및 사회적 관계 맺기와 관련된 서비스 개발 등이 제시됨

관광 분야의 경우, 인구 고령화에 맞서 고령친화적 관광시장 조성을 위해 고령층의 국내관광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층 관광시장 분석 시스템의 체계화 및 고령층 안전관광 환경 조성 및 교육 운영 확대를 주장함. 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 기 위해 휴가문화 개선 및 지역 간 청소년 관광 활성화 교류를 지원해야 하며,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개인화의 양상 속에서 맞춤형 관광 지원 및 질적 여건 개선 등을 제안하고 있음(김현주· 최경은·김형종, 2021)

체육 분야는 인구구조의 변화 중 특히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체육정책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안하고 있음. 첫째, 인식을 실천으로 전환하는 '참여 동기 강화', 둘째로 스포츠활동의 지속적 참여를 위한 '친화적 스포츠 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건강과 행복수명, 사회적교류,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스포츠문화 정착'임(김미숙, 2016)

- 고령화 및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생활체육정책 10대 과제는 다음 <표 2-4>와 같음

<표 2-4> 인구구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체육정책 방향 및 10대 과제

	정책 방향	10대 과제				
장벽없는 시작	인식을 실천으로 전환시키는 참여 동기 강화	 스포츠클럽 유입 확대와 시니어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스포츠활동 접근성 제고 스포츠친화 인증제 개발 시니어 스포츠바우처 운영 지역 기반 체육대회와 시니어리그대회 체계화 및 활성화 				
일상적·지속적 참여	진화적 스포츠환경 조성 주력	5. 고령 세부연령층(예비고령, 고령, 초고령) 대상 맞춤형 건강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중장년 및 노년층 대상 주말 운동프로그램 제공 및 운동 시간대 다양화				
함께 공유하는 가치	건강·행복수명, 사회적 교류, 세대 간 이음을 위한 스포츠문화 정착	7. 여성·고령 참여자들의 비경쟁적이고 다양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8. 고령층 선호 종목 구성과 전문지도자 배치 강화 9. 지역공동체 기반 건강증진 시스템 연계 운영 및 강화 10. 스포츠활동 인식제고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자료: 김미숙(2016), pp.290~297을 토대로 재구성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최근 정책들은

정책 대상을 개인에 집중하고 있으며, 개인이 개별적으로 갖는 특성과 취향에 따라 맞춤 방식의 정책들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또한 지역별, 세대별, 분야별로 큰 구분 없이 통합적 관점에서 문화·체육·관광과 관련된 서비스와 상품 등을 활용하고 관련 시설 및 프로그 램을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3. 국가재정 건전성과 재정 지출 효율화 강조

▮ 현 정부 출범 이후 긴축재정, 건전재정 기조의 강조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정부는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물가, 금리 등 거시경 제 변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확장적 재정이 아닌 긴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 재정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였음

- 이로 인해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사업 구조조정 및 부정수급 검증 강화, 경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금융시장 선진화, 해외투자 유치 및 사업 수주 활성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재무 효율화 등을 주요 재정정책의 기조로 내세웠음

2023년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회 의결·확정한 2024년 예산을 볼 때, 국가채무 증가 최소화를 실천하고자 역대 최저 총지출 증가율(2.8%)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정부안 656.9조원에서 0.3조원이 더 축소된 656.6조원으로 총지출 규모가 확정되었음(기획재정부, 2023)

- 하지만 수출 부진, 법인세 및 양도세 등 세입 감소 등에 영향을 받은 국가채무가 여전히 1,100조대를 유지하고 있고,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가 전년 대비 각각 44.4조원, 91.6조원 적자로 더욱 악화될 것에 따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총량의 엄격한 관리는 향후에도 계속이어질 것으로 전망됨(기획재정부, 2023; 국회예산정책처, 2023b)

<표 2-5> 2024년 정부 재정 총량(국회 확정)

단위: 조원, %

	′23년	'23년 '24년			증감	CTI - 12 C, 70
	본예산(A)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대비 (C-A)	%
◇ 총수입	625.7	612.1	612.2	+0.1	△13.5	△2.2
◇ 총지출	638.7	656.9	626.6	△0.3	+17.9	+2.8
◇ 관리재정수지	△58.2	△92.0	△91.6	+0.4	△33.4	-
(GDP대비, %)	(△2.6)	<i>(△3.9)</i>	<i>(∆3.9)</i>	-	-	-
◇ 통합재정수지	△13.1	△44.8	△44.4	+0.4	△31.3	-
(GDP대비, %)	(△0.6)	(△1.9)	(△1.9)	-	-	-
◇ 국가채무	1,134.4	1,196.2	1,195.8	△0.4	+61.4	-

(GDP대비, %)	(50.4)	(51.0)	(51.0)	-	_	_

자료: 기획재정부(2023), p.4

위와 같은 상황과 더불어 202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 초반, 2024년에는 2%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볼 때,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성장기반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달성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고 보다 시급한 분야에 재원을 재배분하기 위한 노력을 강하게 요구될 것임(국회예산정책처, 2023b)

- 나아가 경제, 사회 등 재정 여건 변화를 반영한 재정 준칙의 탄력성 제고도 함께 요구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
- 2024년 재정 운용 기조 중 세출·지출예산 증액 분야 및 적정성 분석 기준

정부 재정은 총지출 긴축을 통한 재정 건정성 및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도 국정기 조 등에 발맞추어 지출을 증액한 분야들도 존재하고 있음

-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은 소상공인·농어민 경영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청년응원 프로젝트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 지출 증액하였음
- '미래대기 강화'는 R&D 투자 보강, 탄소저감 확대, 육아부담 완화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증액을 포함하고 있음
- '안전·안보 투자 확대'는 민생범죄 예방·대응, 생활안전, 국방·보후 분야의 사업들을 증액 지원함

<표 2-6> 2024년 정부 예산 중 지출 증액된 주요 사업

주요 사업		주요 내용			
	소상공인·농어민 경영부담 경감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이자 일부 감면,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인상부 일부 한시보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및 발행량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한지 지원			
미새겨제	00+000	농어민 경영 부담 및 피해 최소화 지원			
민생경제· 취약계층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 필요한 복지 지원 요양병원 간병 및 희귀질환자 요양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장비 한시지원			
	청년응원 프로젝트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추가 지원 등 주거, 교통, 일자리, 학자금 대출, 근로장학금 등에 대한 지원			
Blallellul	R&D 투자 보강	연구자 고용 불안정 지원 최신형 고성능 대형장비 확충 지원 차세대·원천기술 및 부품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대비 강화	탄소저감 확대	저금리 녹색금융 지원 확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증액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개선을 위한 전동차, 광역버스 증차			
	육아부담 완화	육아근로자 출퇴근, 근무 제도 장려금 지원 확대 민간 어린이집 급식 및 안전도 강화를 위한 운영부담 경감			
안전·안보	민생범죄 예방·대응	현장 중심 경찰조직 개편, 현장추적 도구 및 서비스 강화 마약 검색 및 치료보호기관 지원 확대 전세사기,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지원			
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안전	출퇴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철 시설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 산업안전 컨설팅 지원			
	국방·보훈	첨단전력, 장병 지원, 저소득 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새만금 투자	입주기업 경영 및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고속도로, 신항만,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원			
	SOC· 산업 인프라	지역 간 교통망 확충, 국도·철도 신규노선 설계·착공비·계속지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인프라, 스마트 공장 고도화 등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2023), pp.6~10

- '지역경제 활성화'는 새만금 투자, SOC·산업 인프라 지원 등의 세부분야를 포함함
- 지출 지원이 증액된 사업들의 대부분 성격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고용불안, 민자유치 등을 위한 현장 의견의 반영을 주로 담고 있음

<표 2-7> 2024년 세출·지출사업 예산안의 적정성 분석 및 조정 필요 사업의 예시

적정성 기준		주요 사업(예)
사업 목적 및 내용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aaS혁신펀드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내 '성장지원펀드'의 일부 주요 투자 분야에 SaaS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SaaS 분야에 투자 재원 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
대용되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조정	(문화체육관광부) 포스트 코로나 메가 로드쇼 개최	전년 대비 67% 증액된 76억원이 편성되고 한국문화 관광대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6억원이 편성되었으 나, 두 사업은 내용 등이 유사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해당사업 업무와 재외동포청 업무 간 대상 및 사업 수행 방식이 유사하여 중복집행될 우려
지해기노서 미층에	(기획재정부-환경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 중 일부 사업대상지는 관계기관 협의 및 타당성 재조사 진행 필요, 사업 재추진방향 검토 등에 따라 사 업 추진이 불확실함에도 2024년도 3차 사업비가 반영 됨
집행가능성 미흡에 따른 예산 조정	(고용노동부)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해당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3개월·6개월 이상 근속 시각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2024년 9월까지 취업한 청년에게도 지급함으로써 2025년도 지출분까지 계상하여 예산안이 과다 산정됨
사업의 내용·대상·일정 등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수혜 대상의 범위와 목표가 모호하고 사업 수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예산안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 음
사업계획 구체화되지 않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TOP 전략연구단 지원 사업	신규사업으로 1,00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계획이 전무하고 2023년 내에 구체화해 나갈계획이라는 입장뿐임
	(해양수산부) 수산물 비축사업	생산자가격 지지효과 및 소비자가격 안정효과가 검증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예산이 대폭 증액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투입의 효율성이 불분명하거나 저조	(교육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도입한 유형인 '지자체 주도형'은 참여 지자체 및 대학 선정은 완료되었으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으며, 지자체 전략산업을 지원 분야로 선정하였으나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이 협업하는 사업 특성상 컨소시엄 내 타 지역 혹은 수도권대학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취업 등의 측면에서 지역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음
예산 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국방부)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	일부 사업은 국방중기계획2)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서, 「국방기획관리기본훈령」등 당해연도 중기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만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방예 산의 편성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관련 예산이 편성
사업 추진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생태계금융지원 사업	「전기사업법」및 시행령에 따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 상 해 수출지원, 기술사업화, 기반조성을 위한 인 프라 투자 등에 대한 지원만 가능하므로 이외의 용도로 지원할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 가 없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b), pp.71~76

한편, 2024년도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세출·지출사업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한 국회예산정책처(2023b)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출·지출사업을 구성함에 있어 1) 사업 목적 및 내용의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조정, 2) 집행가능성 미흡에 따른 예산 조정, 3) 사업의 내용·대상·일정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4)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투입의 효율성에 대한 불분명성 및 저조, 5) 예비타당성조사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 미이행, 6) 사업 추진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세출·지출의 적정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음

향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정의 효율적 및 효과적 운용, 책임성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 구조조정 및 통폐합 등에 주요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측됨

■ 정부 재정운용 기조가 문화·체육·관광에 미치는 영향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 문화'의 편성방향을 토대로 2023년 대비 2,137억 원이 증액된 6조 9,545억이 확정되었음

<표 2-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4년	전년 본예산 대비(C-A)		전년 최종예산 대비(C-B)	
T T	본예산(A)	추경·수정 (B)	예산(C)	증감액	%	증감액	%
총 합계	6,740,823	6,800,193	6,954,450	213,627	3.2	154,257	2.3
□ 예 산	3,494,095	3,494,095	3,696,044	201,949	5.8	201,949	5.8
일반회계	3,044,631	3,044,631	3,192,277	147,646	4.8	147,646	4.8
지특회계	298,001	298,001	386,796	88,795	29.8	88,795	29.8
아특회계	151,463	151,463	116,971	△34,492	△22.8	△34,492	△22.8
□기금	3,246,728	3,306,098	3,258,406	11,678	0.4	△47,692	△1.4
문예기금	407,867	407,867	446,216	38,349	9.4	38,349	9.4
영화기금	85,086	85,086	58,966	△26,120	△30.7	△26,120	△30.7
지역신문기금	8,813	8,813	8,806	△7	△0.1	△7	△0.1
언론기금	20,414	20,414	19,201	△1,213	△5.9	△1,213	△5.9
관광기금	1,057,996	1,103,196	1,102,488	44,492	4.2	△708	△0.1
체육기금	1,666,552	1,677,722	1,622,729	△43,823	△2.6	△54,993	△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c), p.19

- 그 중 청년,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맞춤형 민생 예산 항목이 대폭 증액되었음. 예로 통합문화이 용권이 2,102억 원→2,397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이 852억 원→1,203억 원, 노인세대 맞춤형 지원사업이 468억 원→502억 원 등으로 증액됨(문화체육관광부, 2023c)

- 예산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는 모두 증액되었으나, 기금 의 경우 최종예산 기준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제외한 5개 기금이 모두 감액되었음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소폭의 예산 증가가 나타났으며 특히 콘텐츠 분야는 신시장 개척, 정책금융 1조원 공급, K-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을 목적으로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임. 그 외 체육 및 문화행정 일반의 경우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하였음

<표 2-9>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부문별 예산 편성

단위: 억원, %

¬ ⊔	2023년		2024년 예산		전년 본예산		전년 최종예산			
구 분	본예산(A)	추경·수정	정(B)	(C)		대비(C-A)		대비(C-B)	
합계	67,408	100	68,002	100	69,545	100	2,137	3.2	1,543	2.3
문화예술 부문	23,140	34.3	23,170	34.1	23,683	34.1	543	2.3	513	2.2
콘텐츠 부문	11,738	17.4	11,738	17.3	12,780	18.4	1,042	8.9	1,042	8.9
관광 부문	12,339	18.3	12,791	18.8	13,161	18.9	822	6.7	370	2.9
체육 부분	16,398	24.3	16,510	24.3	16,164	23.2	△234	△1.4	△346	△2.1
문화행정일반	3,792	5.6	3,792	5.6	3,737	5.4	△55	△1.5	△55	△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c), p.10

실, 국 단위로 일반회계 기준 예산 변동성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된 곳은 콘텐츠정 책국으로 전년 대비 178,187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다음으로 예술정책관이 전년 대비 42,676백만 원이 증액되었고, 종무실 13,443백만 원, 체육국·체육협력관이 1,034백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가장 많은 예산이 감액된 실, 국으로는 지역문화정책관이 전년 대비 73,261백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미디어정책국이 35,427백만 원, 문화정책관이 22,913백만 원 감액되었음. 관광정책국·관광산업정책관 및 기조실은 각각 389백만 원, 1,542백만 원으로 감액됨

또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조금 현황을 살펴볼 때,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사업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 재정의 효율화를 실천하기 위한 목적 하에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보조금 예산 총계가 2023년 대비 2024년에 163,107백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 중 민간경상보조가 112,239백만 원 등 큰 폭으로 감소되었음

<표 2-10>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금 예산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3년 재정(A)	'24년 재정(B)	증감(B-A)	증감(%)
보조금 예산 총계	4,311,866	4,148,759	-163,107	-3.8
일반회계	1,558,477	1,490,185	-68,292	-4.4
민간경상보조	1,413,326	1,301,088	-112,239	-7.9
민간자본보조	15,895	26,222	10,327	65.0
 자치단체경상보조	43,030	33,008	-10,022	-23.3
자치단체자본보조	86,226	129,867	43,641	50.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open/assistance/assistTotal.jsp(접속일: 2024.5.4.)

이렇듯 민생지원, 산업 성장동력 강화, 지방균형 등 대 정부의 국정기조 및 예산 편성 방향성에 맞추어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 편성 내역이 움직임에 따라, 부문별 예산 편성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사업 조정을 통해 신규 사업 및 사업 폐지 등이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재정 지출이 향후에도 엄격하게 설정될 시에 실, 국 및 분야별 융합·연계할 수 있는 사업 구성을 통한 재정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

4. 융합사회로의 지향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 간, 부처 간 융합 정책의 중요성

인구위기, 지역소멸 위기, 지구온난화, 코로나 19 팬데믹, 국제 사회의 진영 갈등, 탈세계화추구와 같이 전 세계적인 시대적 정책과제들로 인해 국내외의 질서들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민감한 사회 문제와 정책 과제들에 대해 거시적·통합적·장기적국가 비전 수립을 위한 범정권·범부처의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음(황윤원, 2022)

- 예를 들어, 초고령자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돌봄 서비스 제공에 있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고용, 문화, 환경, 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새로운 주거문화 형성, 여가 향유 콘텐츠 개발에 있어 대면 공연·전시관람 외에도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의 보편화 등을 들 수 있음
- 이는 곧 사회의 복잡다난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시스템과 사회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 어느 특정한 한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 간 융합, 협력, 경계를 허무는 움직임들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이에 정부는 다양한 부처 및 부문이 합동하여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계획 및 핵심과제들을 발표하고 추진해나가고 있는 추세임

<표 2-11>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요 계획 및 합동부처의 예

발표계획	합동부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6개부터 합동 업무계획(2022)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 부, 금융위원회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2023)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 전처,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 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금융위원회,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2022)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이를 통해 정부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사업들 간의 연계성, 분야별 협력 등을 강조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 들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다양한 주체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 단계에 참여하는 개방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열어가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분야 간 융합 활성화

문화, 예술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생산 및 향유 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이는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온라인 및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문화예술 창작 및 소비 행위와 그 사이에서의 인간들 간의 공유된 지식들을 생산해내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필두로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 광주아시아문화의전당, 국립예술단체들이 실시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기술 융합 창·제작, 유통, 매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이를 통해 문화예술 창작의 확장과 더불어 관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표 2-1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 내 문화예술-기술 융합 지원 사업의 예

사업명	주요내용	지원대상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융합 테스트베드 후속지원-후속제작·실험지원	'23년도 테스트베드 프로젝트 완성작 후속지원	'23년도 사업 참여 예술가(단체)	
(아트코리아랩) 사운드 특화 지원	예술산업 내 사운드 장르 저변 확대 및 융합예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체별 사운드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지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활용 공연예술 Art, Digital Technology 지원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모바일 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공연예술 창작모형 개발 및 기존 공연 작품을 온라인/모바일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한 작품 재구성 지원	예술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 & Tech 활성화 창작지원	동시대 다양한 기술을 접목한 예술작품 창작에 대한 단계별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기획, 제작, 후속 개발)	예술가 및 예술단체	
(국립현대무용단) 무용X기술 창작랩	워크숍, 레지던시를 통한 연구 및 네트워킹, 랩을 통한 작품 개발	안무가, 기술전문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프로그램	레지던시, 공동기획 과정을 통한 예술-기술 융합 기반의 프로젝트 리서치, 개발, 멘토링, 쇼케이스 등을 위한 인프라 지원	예술, 기술, 과학, 인문, 가회 등 다분야 창작자 및 연구자 (개인 및 팀)	

문화 향유 방식에 있어서도 직접 공연, 전시를 대면관람하는 것과 달리 TV,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매체를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2023년 기준 약 75% 수준으로 매우 높음. 특히 최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방식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 이로 인해 문화예술계는 작품의 영상, 음향, 전송 기술들을 최적화한 온라인 공연 및 전시 방식에

2023년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또한 VR과 같은 첨단 기술이 장착된 기기들을 활용하여 실감성을 높인 문화예술 향유 방식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2014년2016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

자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b), p.34

[그림 2-7]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이용 매체

한편, 관광 분야 2023-2025 트렌드 전망 분석에 따르면 거시환경 분석, 미디어 스캐닝,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총 27개의 이슈를 도출하였음. 그 중에서 관광과 문화, 기술, 여가,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함께 접목된 이슈들도 함께 도출되었음. 이에 따라 관광 시장, 사업, 지역관광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항들이 관광과 타 분야와의 접목이 예견되는 바임

<표 2-13> 2023-2025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중 관광 이슈

분야	관광 이슈	키워드
	· 국제관광 재개에 따른 방한 여행 단계적 회복	국제관광 재개, 인바운드
	· 국제관광 재개에 따른 갈등과 안전 이슈	문화의 다양성, 안전
	· 글로벌 K-콘텐츠 인기상승에 따른 한류관광 확대 기대	한류, 콘텐츠
	· 관광여행 잠재 수요, 보상여행으로 발현	자기만족, 억제
	· 양극화되는 여행경험과 여행소비	자산양극화
관광	·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 부상	재택근무, 비대면 서비스
시장	· 랜선여행 확대와 메타버스 진화	AI,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13개)	· 근거리에서 즐기는 스테이케이션 확산	워라밸, 가치다양화
	· 개인 취향을 반영한 커스터마이징 여행	맞춤형 여행
	· 가족·지인 중심 소규모 그룹 여행	자유여행
	· '욜드(YOLD)'를 위한 실버관광, 모두를 위한 여행	고령화, 사회적 고립
	· 치유의 여행화, 웰니스 관광의 지속 성장	힐링, 치유
	· 여행의 친환경 소비 증가	친환경 제품, 탄소 제로
관광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관광산업의 대응 강화	AI, 빅데이터, 가상현실

분야	관광 이슈	키워드
	· '트래블 테크' 기반 스타트업의 고성장	DT, Al 기술
산업	· 기술 기반의 맞춤 여행 서비스(AI 활용) 고도화	AI, 빅데이터
(5개)	· 관광산업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관광 일자리 변화 대응	뉴노멀 업무 형태
	· 관광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 지속 상승	디지털 플랫폼
	· 비도시 지역이나 소규모 도시 등 여행지의 다변화	생활관광
	· 숨어 있는 매력적 장소인 나만의 관광지 찾기	개인화, 인플루언서
	·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환경친화적 관광지 확대	친환경, 자연친화적
지역	· 초광역 메가시티 기반의 '초광역 관광권' 도래	초광역, 메가시티
관광	· 지역 핵심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개발 증가	지역특화
(9개)	· 반려동물 동반 지역여행지 확대	펫 친화, 동반여행
	· 지역관광을 기획 및 발굴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관광일자리, 관광기업
	· 지역 스스로 기획 및 책임지는 관광 확대	역량 강화
	· 민간 역할 강화로 지역관광이 민·관 협력체계로 전환	민간기업, 협력

자료: 진보라·조아라·김진영·김현정(2022), p.xiii

체육 분야도 2023년 12월 20일에 발표한 「제1차 스포츠진흥계획」에는 여가 및 레저, 관광, 콘텐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K-스포츠 신성장 동력, 생활-전문 스포츠 활성화 등을 위한 핵심과제가 포함되어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23e)

- '전략 3. 함께 성장하는 생활-전문 스포츠'에서는 생활체육동호회를 법상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스포츠클럽의 국민참여 및 여가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핵심과제를 제시함
- '전략 4. 국가 신성장동력, K-스포츠'에는 자전거, 서핑, 요트,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스포츠를 활성 화하기 위한 대회 개최와 더불어 지역 특화 레저+웰니스+관광 융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핵심과 제를 추진할 것을 발표함
- 김종호(2022)의 연구에서도 지역 중심 생활체육 브랜드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생활체육과 관광의 연계를 꼽고 있음. 왜냐하면 스포츠 콘텐츠는 스포츠 외적으로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능하고 연관 분야와 융복합이 용이한 고유의 특징이 있으며, 관광산업은 고용 창출, 부가가치 창출, 외환 획득 등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임. 그래서 체험과 관람이 어우러진 스포츠관광이 지역사회 발전 전략의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그 외에도 기술-스포츠 연계 사업, 기술기반 경기 데이터 수집-맞춤형 분석 등을 통해 기술과 융합을 통한 스포츠산업 생태계 혁신을 핵심과제로 내세움

특히 스포츠 레저, 웰니스, 관광 융복합산업 창출을 위하여 육상, 항공, 해양이 연결된 레저스 포츠와 웰니스 콘텐츠 간 결합(스포츠+산림치유, 스포츠+해양치유 등)을 통한 지역 특화 레저스포츠 치유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을 지원하고, 야외 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사업들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간 융합, 혹은 기술 등 타 분야와 문화·체육·관광 간의 융합, 연계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 및 사업들을 개발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가치들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활발히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지역 및 국제 협력, 상생 강화

■ 지역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강조

오늘날 지방분권 및 지역 간 무한경쟁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정부는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과 강점들을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결정 및 집행권 을 행사하고 있음

- 지역이 갖는 현안과 문제점, 예를 들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지방인구 감소의 가속화, 중앙정부 주도적 정책의 성과 창출 한계 등은 지역의 여건 및 역량을 고려한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을 필요로 하였음

하지만 자족적, 한정적인 지역이 고립적인 존재로 남기 보다는, 다른 지역과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면서 새로운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간 공동정책 수행을 통해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간 상생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음(김필두·유영아, 2008)

최근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2023)는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하여 분권형 지역 균형발전으로의 전환 및 중앙-지방 간 상생적 협력관계 확립을 강조하였음

- 특히 지방 주도로 지역계획·개발을 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중앙-지방 간 기능 재정립 및 상생 협력 관계를 통하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유기적으로 연계·통합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 필요함
- 이는 곧 중앙-지방 간 대등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호혜적·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는 분권형 국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임

또한 2023년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지방분권 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유기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시데 국정과제와 지역정책과제의 동시 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전 사회적 문제를 비롯해 지역별로 나타나는 각종 사회적 요구와 다양한 행정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의 유연한 공동대응이 가능하게 됨
- 국제적 상호연결성을 통한 국제 동반성장의 지속가능성 필요

최근 영국 브렉시트,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무역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국제협력을 기반으로 했던 세계화가 무너지고 탈세계화를 비롯한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 깊어지고 있음 - 2022년 다보스포럼에서는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강조하는 탈세계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세계 모든 국가, 기업이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비용을 감당해야 할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을 주장함. 특히 자유경제와 국제무역을 통해 발전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탈세계화로 인해 선진국 경제에 더욱 의존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함(임팩트온, 2022.6.10.)

위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는 상생적 원조와 국제개발협력을 원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가들 사이의 국익 균형과 상호연계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음

예로, 2020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 우리나라 정부 주도의 중장 기적 협력과 상대국의 상생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한국의 강점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상생 방식인 Win-Win형 경제협력 모델인 'K-패키지'를 제안하였음(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 K-패키지는 불안정한 국제 교역환경 변화 및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 주도의 기업지원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전략임
- 우선 상대국의 발전 전략과 대외협력 수요 및 산업 수요, 한국이 보유한 발전 경험이나 ODA, 산업별 노하우, 양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자금 등의 교집합을 찾아내어 정부 간, 기업 간, 기업·정부 간 협력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모델임
- 양국 정부 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과제를 발굴, 실행, 점검하는 체계를 포함하고 있음
- K-패키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요에 기초한 경제협력을 통해 상대국의 산업육성을 도모하고 확대된 산업 안에서 우리 기업들의 시장진출 기회도 함께 확대하는 데 있음. 즉, 과거에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K-패키지는 상대국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임

■ 지역 및 국제 협력, 상생 강화 기조가 문화·체육·관광에 미치는 영향

지역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이 점차 강조되면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도 지방시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지역 간 격차, 획일화, 지방 소멸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고지역 간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략 및 정책 사업들을 발표하였음

2023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은 '함께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있는 지역'의 비전 및 3개 전략, 11개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였음. 그 중에는 지역 문화 발전에 있어 지역 간, 주체들 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23d)

- 2023년 말 신규 예비지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지역 고유 문화자원 활용으로 문화·예술·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0),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00000008bid=0008&act=view&list_no=170036&otp_id

[그림 2-8] K-패키지 체계(대상국 예: 베트남)

관광·도시계획 등이 망라된 권역별 선도 도시를 집중 육성하고자 함. 사업 내용 중에는 '앵커사업'을 설정하여 문화도시와 인근 도시 간 연계·네트워킹 강화로 부처 간, 지역 간, 지역 내 기관 간 광범위한 동반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시키고 있음

- 지역 간 수평적 협력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실천을 위하여, 3개 이상 권역 소재 문화재단이 협력한 '문화가 있는 날' 기획 사업 추진, 수도권-비수도권 내 박물관·미술관 연계 기획전 개최, 지역대표 문화축제를 지리적 접근성·유사성에 따라 연계 홍보하는 (가칭)지역축제벨트 구축 등을 신규사업으로 제시함
- 또한 지역문화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광역도서관장회의 등 분야별 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여 중앙-지 방 간 정보 공유와 협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함
-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지역 대학·민간단체 간 쌍방향 국제문화 교류를 지원하고, 유네스코창의도시·동아시아문화도시·역사문화도시·법정 문화도시 등의 국제홍 보를 위해 재외한국문화원과 연계하여 해외 주요 문화도시들과의 네트워킹을 지원하고자 함

또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관광생태계 및 지역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들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음. 이는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전략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역들을 경험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 지역 연계관광 활성화 사업은 권역별 테마여행상품 연계를 통하여 인근 지역 간, 관광자원 간의 연계와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연계 관광이 정착될 수 있는 홍보마케팅을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지원하였음 - 서울관광재단은 2023년 재단과 MOU를 맺은 강원, 고창, 대구, 부산, 익산, 제주, 6개 지역에 한해 서울-지방 상생 관광협력 사업을 시범운영하였음. 이를 통해 서울에 집중된 방한 관광객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여행사의 지역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서울-지방 상생 팸투어 개최 등을 통하여 29개 연계관광상품 발굴, 약 3,400명의 단체관광객을 모객하여 지역 간 연계관광활성을 위한 성과를 거두었음(서울관광재단, 2023)

국제교류 차원에서 체육 분야는 주요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역량 미비, 태권도 종주국 주도권 약화, 스포츠 유산 확산의 공감대 부족, 국제스포츠 인재 진출 및 활용 미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약화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스포츠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하여 국제스포츠 공적개발원 조, 공공 외교 차원에서의 체육 소프트파워 등을 활용한 국가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함 (조현주, 2022)

- 이를 위해 국제 수준의 메가스포츠이벤트의 지속 유치, 개도국 스포츠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스포츠 신시장 개척, 남북 및 동북아 스포츠 협력 기반 강화 등 우리나라 스포츠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세부 전략들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자료: 조현주(2022), https://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05224

[그림 2-9] 국제스포츠 교류협력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익

향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국내외 상생 협력의 방식들은 점차 단순한 하드웨어적인 시설 투입이나 기구(기관) 설치보다는 지역 간, 국가 간 적극적인 협력, 경제적 통합, 지식공유, 인적자 본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대한 다각화된 교류와 연결을 보다 강조할 것으로 전망됨

제2절

거시 환경 분석에 따른 문화재정 기조 변화

- 1.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 따른 문화재정 지출의 재구조화 필요
 - 팬데믹, 인구 위기, 정부의 긴축재정 등에 따른 경제 불안정성 및 조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지출 효율화의 요구
 - 코로나 1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인구 위기에 따른 세입원의 축소 및 복지세출 증가 등 거시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그간 총수요를 견인하기 위해 최근 2020년~2022년 3개년 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왔음(윤소영·정보람·김정훈·정원희·황아람, 2021)
 - 문화·체육·관광 분야 또한 재정지출이 꾸준히 확대되었는데, 특히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스포츠기업 지원, 내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가, 관광소비쿠폰 제공,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화향유 및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등이 대표적임(원종학·윤소영·정보람, 2022)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의 긴축재정 및 지출 효율화에 대한 요구와 기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도 정부 재정운용 기조에 따라 조정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됨(윤소영·정보람·김정훈·정원희·황아람, 2021)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기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6%로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되었던 만큼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출효율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또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점차 확대되는 국가채무를 고려하여 지출구조 조정 및 성과평가 내실화 등 재정지출 효율화가 강화되는 상황임
- 이이 따라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미흡 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 (예산 삭감 혹은 사업 폐지) 및 제도 개선 강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재정 또한 대표 지표 위주의 성과 공개를 강화하여 미흡 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 조정, 제도 개선 추진 등을 요구받고 있음(정보람·김윤경·배관표, 2023)
- 문화재정이 갖는 특징 및 한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화재정 실제적 운용 방안 필요문화재정은 그간 다양한 관련 연구, 재정투자 평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등을

통해 문화재정이 갖고 있는 특징들과 그에 따른 한계들을 꾸준히 논의해왔음

특히 가장 많이 지적받은 문화재정의 한계로는 소액다건 지원 방식, 전달체계의 복잡성, 각종 기금의 효율화 방안, 보조금 방식에 의한 사업 운영의 높은 의존도 등이 거론되었음. 하지만 위 한계들은 실제적으로 완화·해결되지 못한 채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기금 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계속된 사업 수요 증에 따라 지출 또한 확대되고 있으나, 기금 수입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그래서 새로운 자체수입원을 발굴하거나 기금 간 체계 개편 등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수입을 안정화하고 지출구조를 개선하는 등 기금 재정의 재구조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원종학·윤소영·정보람, 2022)

또한 2010년~202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예산안 및 결산 분석 보고서, 각종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재정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 계획 부실', '내역 사업 단위의 예산 과다 편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으며, 소액 다건형 재정사업 구조로 인해 간접비용(보조금 신청, 교부 결정, 예산 계산, 정산 등)의 증가,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의 미흡함이 문제로 남아있음(정보람·김윤경·배관표, 2023)

위와 같은 문제와 한계들이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수년간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문화재정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실제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또한 그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체계적인 재정 운용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시점임

2. 분야별 연계·융합 사업의 필요성 증가 및 이에 따른 문화재정의 통합적 운용

■ 융합·연계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사회의 필요성 및 국내외적 연계와 상생이 강조되는 거시 환경 변화에 따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있어 향후 문화 재정 집중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전망되었음(원종학·윤소영·정보람, 2022)

-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문화권 보장: 개인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참여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문화환경권을 제공하며, 관련 종사자의 표현과 활동의 자유를 최소로 보장할 수있는 문화안전망 구축 필요
- 사회문제 해결형 문화정책 지향: 사회적 고립 및 고독, 재난, 도시소멸,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문화다양성 보호와 존중의 사회적 요구 증가: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면서, 누구든 차별받지 않고 문화적 참여에서부터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 필요

위와 같은 문화재정 집중 투자 분야들은 문화·체육·관광, 어느 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장르적, 분야적 접근보다는 향유, 창작, 산업, 기반, 교류 등 정책 지원 유형별로의 접근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활동이 융합, 연계된 방식을 추구하는 사업 체계로 혁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관광을 통한 여가활동 접근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경우 여가활동의 주 요소인 문화활동, 문화체험, 스포츠경기 관람, 체육활동과 연관된 독특한 콘텐츠들을 지역에 정립시켜, 이를 즐기기 위한 사람들이 어느 특정 지역, 장소를 방문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기획될 수 있음. 이 때, 문화·체육·관광, 모든 분야가 연계된 하나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융합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운용의 통합적 관점 필요

다양한 분야 간 연계된 사업들이 확대 전환 시, 이에 따라 각기 흩어져있던 사업들이 하나로 융합되면서 각 사업에 사용되었던 재원인 예산·기금 또한 연계하거나 통합하는 방안들의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기존에 부처 간, 재정 간 칸막이로 인한 문화재정 전체의 비효율성 및 유사중복 사업 간의 조정 요구 등을 극복하고 문화·체육·관광의 혁신 성장을 위해 새롭게 지원되어야 할 융합 사업들을 개발하게 되면서 재정 운용 또한 통합적 관점에서 관리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나아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화 분야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 치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을 통해 문화·관광·체육 등 각 분야별 사업들을 연계·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재정 성과관리 또한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관점에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윤소영·정보람·김정훈·정원희·황아람, 2021)

<참고사례> 영국 DCMS의 문화개발기금(Cultural Development Fund, CDF)

영국 DCMS가 2019년부터 배분한 문화개발기금(Cultural Development Fund, CDF)은 문화예술, 문화유산 및 창조산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금으로 장소 중심의 투자를 통해 지역의 성장을 돕고 공동체를 재생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장소기반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본투자를 통해 지역이 경제 및 사회적으로 회복하도록 촉진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함

단순히 문화 또는 문화유산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지역(장소)을 문화적으로 보다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 기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측면의 성장을 장려하고 있음

자료: 원종학·윤소영·정보람(2022), p.3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재정 현황 및 추이 분석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재정현 황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비교분 석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재정현황

-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5년간 재정현황과 추이
- 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일반현황
 -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목적과 용도

『문화예술진흥법』제16조(기금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1973년도에 설치됨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목적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문화예술진 흥법』 제16조 제1항)
- 동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의 세부적인 용도를 지정하고 있음. 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원,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남북 문화예술 교류, 국제 문화예술 교류,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 그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는 정부출연금, 개인/법인 기부금,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갈음 민간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등이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설치된 초기에는 극장 및 공연장 등으로부터의 모금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음(한국재정학회, 2020)
- 1973년 7월부터 영화관, 공연·전시장, 고적·사적지 등의 입장료에 2.0~8.5%를 부가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모금실적은 2000년 당시 2700억 원에 이르렀음(기획재정부, 2001)
- 2000년, 정부는 공연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제정비계 획에 따라 공연장 이용자 등에 부과하던 모금제도를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함(박종미, 2017)
- 이후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해당 법 부칙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제도 존속기 한을 2003년 12월 31일로 단축 변경하였으며, 이후 2002년 헌법재판소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모금제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접수되고, 2003년 12월 18일 헌법재판 소는 영화관등의 이용자에게 부과되던 문화예술진흥기금 납입금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음
- 결국, 2004년 참여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침에 따라 모금제도는 폐지되어, 그 이후의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2003년 위헌결정 시까지 적법하게 모금된 재원의 이자와 정부의 출연금, 기부금, 타 기금 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조성되어 왔음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금관리주체

『문화예술진흥법』제16조 제2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5년 문화예술정책의 대원칙인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진 흥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사업규모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주체가 됨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16조(기금의 설치 등) ②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2)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현황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체수입

자체수입 총액은 2019년 87,907백만 원으로 전체 수입 총액 대비 18.76%에 불과하며, 2022년 10.77%, 2023년 11.41%로 하향추세에 있음

- 자체수입 중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건물대여료는 변동성이 없이 안정적이지만 약 10억 원 수준으로 규모가 작음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여유자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기타재산 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약 50억 원 수준으로 규모가 작음
- 민간출연금은 변동성이 적어보이지만 민간기부금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대체기부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경기에 비례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 안정적이지 않음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유의 골프장과 문화시설의 운영수익금인 입장료 수입은 안정적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정부내부수입

정부내부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복권기금 전입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관광진흥 개발기금 전입금이 있으며, 전입금 총액은 2019년 305,561백만 원에서 2023년 373,896 백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일반회계전입금은 2019년에 50,000백만 원에서 2023년 30,000백만 원으로 감소세임
- 복권기금 전입금은 2019년 105,561백만 원에서 243,896백만 원으로 약 2.4배 증가했으며, 이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확대에 기인함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19년 2020년 50,000백만 원 규모의 전입이 있었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 은 계속 100,000백만 원 규모로 전입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융자원금 회수와 여유자금 회수

융자원금 회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대출원금 회수액이며 2022년부터 증가 세를 보이고 있음

매년 만기 도래로 인한 통화/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를 의미하는 여유자금 회수는 2021 년 190,225백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하향 추세에 있음

<표 3-1> 문화예술진흥기금 주요 수입 구성(2019~20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총 계	468,533	543,910	523,902	523,987	539,637	
	건물대여료	1,175	1,175	1,175	1,175	1,175	예술위 직접운영 기관의 임대수입
	기타재산수입	3,280	4,500	4,500	5,179	5,382	여유자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민간출연금	24,276	25,504	26,167	26,167	27,884	
	- 민간기부금	17,807	14,022	11,847	10,070	10,070	민간기부금 유치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대체기부금	6,469	11,482	14,320	16,097	17,814	
- 148.1.01	기타경상이전수입	10,478	10,478	10,478	16,400	19,400	민간 또는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의 반납금
자체수입	입장료수입	6,244	6,244	6,244	6,244	6,244	예술위 직접운영 기관의 입장료 및 전시, 교육 수입
	기타잡수입	48	48	1,254	1,254	1,470	기부금 운용수익, 연습공간 대관수익, 부가세 환급, 소송비용 환급 등
	기타영업외잡수입	18,130	18,130	16,395	-	-	경륜경정 수익금 일부(24.5%) 법정전입
	계 (자체수입/합계)	63,631 (13.58%)	66,079 (12.15%)	66,213 (12.64%)	56,419 (10.77%)	61,555 (11.41%)	
	전입금	305,561	293,324	267,464	300,868	373,896	
거니비	- 일반회계전입금	50,000	21,000	20,370	30,000	30,000	일반회계(정부출연금)
정부내부 수입	- 복권기금 전입금	105,561	101,324	150,094	173,868	243,896	및 타기금으로부터
1 0	- 체육기금 전입금	100,000	100,000	97,000	97,000	100,000	전입금
	- 관광기금 전입금	50,000	50,000	-	-	-	
	당자원금회수	-	-	-	4,640	17,888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여	유자금 회수	99,341	184,507	190,225	162,060	86,298	여유자금 중 만기된 예치금 회수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 방안 연구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총지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출 합계는 2019년 468,533백만 원에서 2020년 543,910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 523,902백만 원, 2022년 523,987백만 원, 2023년 539,637백만 원으로 정체되어 있음

<표 3-2> 문화예술진흥기금 주요 지출 구성(2019~20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 : 먹인편)
프로그램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예술창작 지원	45,033	45,548	48,186	53,414	51,644	예술 정책관
		예술인력 육성	14,082	14,540	21,672	29,388	32,629	예술 정책관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융자)	8,500	19,000	24,000	23,000	18,000	예술 정책관
		예술인생활 안정자금	-	-	-	900	1,087	예술 정책관
예술의창작		계	67,615	79,088	93,858	106,702	103,360	
역량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지어 다신	지역문화 예술지원	6,739	10,457	9,957	3,470	3,294	예술 정책관
711-12	지역문화 예술진흥	예술의 관광자원화	21,233	11,070	8,862	7,477	7,083	예술 정책관
		계	27,972	21,527	18,819	10,947	10,377	
	예술향유 기회확대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22,950	23,877	21,694	21,671	22,055	예술 정책관
		문화예술 향유지원	132,540	143,303	167,123	226,274	248,793	예술 정책관
		계	155,490	167,180	188,817	247,945	270,848	
		인건비	11,498	11,978	12,124	12,332	12,542	예술 정책관
	문화예술진	기관운영비	7,491	7,866	7,223	8,065	8,696	예술 정책관
기금운영비	흥기금운영 비	지원심의평가 제도운영	580	580	556	553	362	예술 정책관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	1,085	1,063	1,662	1,424	1,682	예술 정책관
		계	20,654	21,487	21,565	22,374	23,282	
기금간거래	복권기금반 환금(문예진 흥기금)	복권기금 전출(반환금)	5,000	5,000	7,800	3,000	17,895	예술 정책관
여유자금 운용			191,802	249,628	193,043	133,019	113,875	
	합계		468,533	543,910	523,902	523,987	539,637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주요단위사업으로는 예술창작 역량강화, 지역문화 예술진흥, 예술향유 기회 확대로 구성됨

- 예술창작역량강화와 예술향유기회확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임
- 반면, 지역문화예술진흥은 2019년 27,972백만 원에서 2023년 10,377백만 원으로 감소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주요 단위사업

예술창작역량강화 단위사업 중 예술창작지원사업, 예술육성사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2021년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예술인안정 자금은 2022년에 신설되어 증가세임

- 세부사업의 경우 장르별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창작지원사업(보조 및 직접)은 2019년 45,033백만 원에서 2023년 51,644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차세대 예술인 력을 육성하고 예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술인력육성사업(보조 및 직접)은 2019년 14,082백만 원에서 2023년 32,629백만 원으로 증가함
- 생활형편이 열악한 예술인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전세대출 융자를 제공하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직접)사업의 경우 2019년 8,500백만 원에서 2021년 24,000백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서서히 감소세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ماعد
	예술창작 지원	45,033	45,548	48,186	53,414	51,644	예술 정책관
01 A +1 T I	예술인력 육성	14,082	14,540	21,672	29,388	32,629	예술 정책관
예술창작 역량강화	예술인생활 안정자금(융자)	8,500	19,000	24,000	23,000	18,000	예술 정책관
	예술인생활 안정자금	-	-	-	900	1,087	예술 정책관
	계	67,615	79,088	93,858	106,702	103,360	

<표 3-3> 예술창작 역량강화 세부사업 지출추이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 중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과 예술 관광자원화 사업 모두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지원과 아르코공공예술 지원을 하는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직접 및 보조)의 경우 2020년 10,457백만 원에서 2023년 3,294백만 원으로 감소함
-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 공연을 지원하고 전통공연 예술 활성화를 지원하며 공연예술 해외진출

을 지원하는 예술의 관광자원화(직접 및 보조)의 경우 2019년 21,233백만 원에서 2023년 7,083 백만 원으로 감소함

	구분		202013	20211=	202213	202213	ШЭ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지어묘신	지역문화 예술지원	6,739	10,457	9,957	3,470	3,294	예술 정책관
지역문화 예술진흥	예술의 관광자원화	21,233	11,070	8,862	7,477	7,083	예술 정책관
	계	27,972	21,527	18,819	10,947	10,377	

<표 3-4> 지역문화 예술진흥 세부사업 지출추이

예술향유 기회확대 단위 사업 중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은 사업규모가 정체되었으며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의 경우 2019년 132,540백만 원에서 2023년 248,793백만 원으로 크게증가하였음

- 예술정책 정보공유 지원, 문화예술기부 캠페인 지원,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를 수행하는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사업(직접 및 보조)의 경우 2019년 22,950백만 원에서 2023년 22,055백만 원으로 5년 전과 동일함
-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를 제공하는 통합 문화이용권, 신나는 예술여행,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을 수행하는 문화예술 향유지원은 2019년 132,540백만 원에서 2023년 248,793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함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01 A + b 0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22,950	23,877	21,694	21,671	22,055	예술 정책관
예술향유 기회확대	문화예술 향유지원	132,540	143,303	167,123	226,274	248,793	예술 정책관
	계	155,490	167,180	188,817	247,945	270,848	

<표 3-5> 예술향유 기회확대 세부사업 지출추이

기금운영비의 경우 인건비, 기관운영비는 규모에 있어서 상승하였지만 총사업규모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으며,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의 경우 2020년에 비해 2021년 약 56% 상승하였고 그 추세는 2023년까지 이어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의 인건비의 경우 2019년 11, 498백만 원에서 2023년 12,542백만 원으로 증가함
- 문예위의 비정규직 인건비, 직원교육훈련비, 각종 시설 유지 및 소모품 비용 등 기관운영비의

경우 2019년 7,491백만 원에서 2023년 8,606백만 원으로 증가함

- 공정하고 합리적인 문예기금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심의평가제도 운영의 경우 2019년 580백만 원에서 2023년 362백만 원으로 감소함
- 문예위 대표누리집 운영 및 내부 통합경영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운영관리 등 문화예술위원회 경영정보화의 경우 2019년 1,085백만 원에서 2023년 1,682백만 원으로 증가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단	2023년					
	인건비	11,498	11,978	12,124	12,332	12,542	예술 정책관				
문화예술진흥 기금운영비	기관운영비	7,491	7,866	7,223	8,065	8,696	예술 정책관				
	지원심의평가 제도운영	580	580	556	553	362	예술 정책관				
	문화예술위원회경 영(정보화)	1,085	1,063	1,662	1,424	1,682	예술 정책관				
	계	20,654	21,487	21,565	22,374	23,282					

<표 3-6> 문화예술진흥 기금운영비 세부사업 지출추이

기금 간 거래의 경우 복권기금반환금은 점점 증가세

- 복권기금 공익사업 추진 후 발생하는 사업비 집행 잔액을 복권위원회로 반환하는 복권기금 반환금 은 2019년 5,000백만 원에서 2023년 17,895백만 원으로 증가함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2019년 191,802백만 원에서 2021년 249,628백만 원으로 증가했다 가 2023년 113,875백만 원으로 크게 감소함

2. 영화발전기금의 5년간 재정현황과 추이

1) 영화발전기금의 일반현황

▮ 영화발전기금의 목적과 용도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기금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2007년에 설치됨

- 영화발전기금의 설치 목적은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 발전임(『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 기금의 용도는 한국영화 창작·제작 진흥관련 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소형영화, 단편영화의 제작지원, 전용상영관 지원,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 및 유지 개선 지원,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영화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관련 사업 지원,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지원 등임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①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2. 영상 전문투자조합 출자 3. 한국영화의 수출 및 국제교류 지원 4.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4의2.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의 지원 5. 영화상영관 시설의 보수·유지 및 개선 지원

5의2.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6.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영화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의 영화 관련 사업 지원 6의2. 영화 관련 교육·연수 등과 관련된 사업 지원 7. 예술영화·독립영화의 발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 영상문화의 다양성·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9. 비디오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사업 지원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10의2. 남북 간 영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11.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2. 그 밖에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지원 ②제1항제12호의 사업에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의 액수는 연간 기금 집행 액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영화발전기금의 주요재원은 정부출연금, 개인/법인 기부금, 영화상영권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이 있음(『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

- 영화비디오법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징수함
-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극장의 영화 관람객이 줄어들면서, 부과금 수입이 2019년 545억 원에서 2020년 105억 원, 2021년 170억 원으로 급감함
-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영화산업이 OTT 등 온라인플랫폼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극장은 코로나 이전의 매출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김지민·배성희, 2022)
- 영화상영관 부과금 조항은 한시적 규정으로, 2021년 12월 31일자로 일몰기간이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2021년 법 개정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2022년 코로나로 인한 부과금 수입 저하로 인한 적자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00억 원 차입함
- 정부는 2023년 영화발전기금에 정부일반회계 전입금 800억 원을 편성했지만, 2022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차입한 800억 원을 조기상환하는데 전액 쓰여 2024년부터는 다시 기금의 적자가 예상되던 차에 2024년 부담금 폐지를 결정함

2024년 행정부는 부담금 원점 재검토를 통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정책을 추진하며 영화산업진흥에 대한 영화 관람자의 책임성 곤란의 이유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화부담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 영화발전기금의 주요재원이었던 법정부담금은 폐지되었기에 또 다른 법정부담금 혹은 목적세가 설치되지 않고서는 이제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혹은 타 기금에서의 전입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4. 11., 2023. 8. 8.>

- 1. 정부의 출연금
-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3.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영화발전기금의 기금의 관리주체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73년 창립된 영화진흥공사가 1999년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화진 흥위원회로 조직성격이 변경되어 출범함

- 2024년 현재, 9인의 영화진흥위원회와 10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됨
- 위원회의 주요 역할로는 영화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이며, 소위원회들의 주요 역할로는 공정한 영화산업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방안 논의 및 제안, 법 제14조제1항제9호와 관련, 예술영화, 독립영화, 소수자 영화 및 시네마테크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정책 입안운영 등에 대한 자문, 법 제14조 제1항 제14의2호에 따른 지역 영상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및 의견 제시 등, 「영화비디오법」제14조 제1항 각호와 관련한 영화산업 내 성평등 기반 조성등이 있음

『영화·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설치 등) ②기금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가 관리·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영화발전기금의 수입현황

▮ 영화발전기금의 총수입

영화발전기금의 수입총액은 2021년 305,245백만 원을 정점으로 하락추세에 있음

-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 19로 인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법정부담금)의 감소와 만기가 도래하는 예치금 감소에 있음
- 이에 2022년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부터 80,000백만 원의 예수금을 차입, 2023년 일반회계로 부터 80,000백만 원을 전입 받음

▮ 영화발전기금의 자체수입

자체수입은 기타재산수입, 법정부담금, 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으로 구성되고 2023년 수 입합계에서 자체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26.36%임

- 자체수입 총액은 2019년 55,992백만 원으로 전체 수입 총액 대비 21.13%에 불과했으며 2021년 61,088백만 원으로 절대액수는 증가했으나 비중은 20.01%로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26.36% (60,625백만 원)로 비중은 증가했지만 이는 총수입의 감소로 인한 것임
- 자체수입 중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은 2022년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임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수입인 법정부담금은 영화관 산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타격을 받으며 2022년에 감소하였지만 2023년 다시 회복세를 보이나, 결산을 보면 2019년 54,582백만 원이 었던 법정부담금은 2020년 10,522백만 원, 2021년 17,086백만 원으로 현격히 감소함
-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화관 산업은 OTT의 성장으로 인해 그 이전의 매출액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회복세를 예상하는 2023년의 법정부담금 수입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 2024년 영화발전기금의 법정부담금 폐지가 확정되면서 재원구조의 변동이 필요한 상황임

<표 3-7> 영화발전기금 주요 수입 구성(2019~20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총 계	264,950	269,514	305,245	200,447	230,016	
	기타재산수입	3,704	3,688	4,703	1,005	3,628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법정부담금	50,398	54,446	55,522	46,605	52,431	법정부담금 수입
	경상이전수입	15	16	17	9	14	부과금 미납 가산금
자체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250	711	711	906	1,417	민간 또는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의 반납금
	기타잡수입	1,625	135	135	135	3,135	기술사업,
	계 (자체수입/합계)	55,992 (21.13%)	58,996 (21.89%)	61,088 (20.01%)	48,660 (24.28%)	60,625 (26.36%)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등의 수입
	전입금	-	-	_	-	80,000	일반회계(정부출연금)
	- 일반회계전입금					80,000	로부터 전입금
정부내부 수입	기금예탁이자수입	3,674	3,403	1,178	-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의 이자수입
ТВ	기금예탁원금회수	20,000	94,000	75,000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원금 회수
	기금예수금	_	_	_	80,000	_	
0	유자금 회수	185,284	113,115	167,979	71.787	89,391	여유자금 만기된 예치금 회수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 영화발전기금의 정부내부수입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예탁이자수입, 기금예탁원금회수, 기금예수금으로 됨

- 정부내부수입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예탁이자수입, 기금예탁원금회수, 기금예수금이 있음
- 2022년에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예수금 80,000만 원을 차입함
- 2023년에 일반회계전입금 80,000백만 원 전입함

▮ 영화발전기금의 여유자금 회수

매년 만기 도래로 인한 통화/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를 의미하는 여유자금 회수는 증감을 반복하면서 하향추세에 있음

3) 영화발전기금의 지출현황

▮ 영화발전기금의 총지출

<표 3-8> 영화발전기금 주요 지출 구성(2019~2023년)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년 2023년								(27	1 . 멕인권)
대한 영화시작시원 17,311 33,482 48,198 46,868 23,324 위원회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자동지원 18,810 22,366 22,643 20,330 20,507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전학자원 16,412 20,128 22,253 19,050 17,551 영화진흥 위원회 1양주종합촬영소 유영 1,937 영화진흥 위원회 연화기획개발지 원원 6,150 5,843 5,841 5,836 6,998 영화진흥 위원회 연화정보시스템 육성 2,220 1,559 2,152 1,847 1,825 영화진흥 위원회 경화정보시스템 육성 105,266 97,840 72,944 연화정보시스템 2,220 1,559 2,152 1,847 1,825 영화진흥 위원회 기금운영비 원화인학자원학자원 10,835 11,587 11,741 12,176 12,142 공공자급관리기급 예수원리리 상환 연화자급관계장 예수이자상환 예수의라상환 연화자급관계장 예수의라상환 관리기금 시축한 연화자급관계장 예수의라상환 공공자급관리기 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급관리기급 계탁 2,324 13,115 167,979 188,238 89,391 63,946	프로그램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변화 전			영화제작지원	17,311	35,482	48,198	46,868	23,324	
관련스 선업육성 및 지원 설단영화 기술육성 3,160 4,570 4,179 3,909 2,739 영화진흥 위원회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1,937 영화진흥 위원회 명화정보시스템 유성 및 제 66,000 89,948 105,266 97,840 72,944 연화진흥 위원회 기금관리비 1,965 2,299 2,136 2,437 2,237 영화진흥 위원회 계 10,835 11,587 11,741 12,176 12,142 공공자금관리기 급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예수원리금 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급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의공자금관리기 급 (총괄계정) 예수의라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급 (총괄계정) 예수의라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급 (총괄계정) 예수의라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급 (총괄계정) 예수의라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급 (총괄계정) 예수원리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급 (총괄계정) 예수원급상환 유공자금관리기 급 (총괄계정) 예약원급상환 유공자금관리가 급 (총괄계정) 연합원급상환 유공자금관리가 급 (총괄계정) 연합원급상환 유공자금관리가 급 (총괄계정) 연합원급상환 유공자금관리가 급 (용괄계정) 연합원급상환 유공자금관리가 급 (용후 관계정) 연합원급상환 유공자금관리가 급 (용후 관계정 (원원급상환) 유공자금관리가 급 (원원급상환) 유공자금관리가 급 (원원급상환) 유공자금관리가 급 (원원급상환) 유공자금관리가 급 (원원급상환) 유용자금관리			영화유통지원	18,810	22,366	22,643	20,330	20,507	
관텐츠 산업육성 위원회 성및 지원 남양주종합촬영소 인공 1,937 영화진흥 연화기획개발지 원 6,150 5,843 5,841 5,836 6,998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전시스템 육성 2,220 1,559 2,152 1,847 1,825 영화진흥 위원회 계 66,000 89,948 105,266 97,840 72,944 연화진흥 원형비 기금관리비 1,965 2,299 2,136 2,437 2,237 영화진흥 위원회 계 10,835 11,587 11,741 12,176 12,142 공공자금관리기 급(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예수이자상환 예수이자상환 예수이자상환 예수이자상환 예수인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급(총괄계정) 예수인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급(총괄계정) 예수인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급(총괄계정) 예수인금상환 이유원급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급(총괄계정) 예약원급상환 유공자금관리기 급(총괄계정) 유공자금관리기 급(총괄계정 유공자금관리기 급(총괄계정 유공자금관리기 급(총괄계정 유공자금관리 유공관			영화정책지원	16,412	20,128	22,253	19,050	17,551	
1,937 - - 영화신흥 영화기획개발지 원 6,150 5,843 5,841 5,836 6,998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정보시스템 원 2,220 1,559 2,152 1,847 1,825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진흥 위원회 영화진흥 영화진흥 영화진흥 연화진흥 위원회 기금관리비 1,965 2,299 2,136 2,437 2,237 영화진흥 위원회 기금관리비 1,965 2,299 2,136 2,437 2,237 영화진흥 위원회 기금관리비 1,965 2,299 2,136 2,437 2,237 영화진흥 위원회 기금관리비 1,9835 11,587 11,741 12,176 12,142 12,142 12,142 12,142 12,142 12,142 12,142 12,142 12,142 12,142 12,142 12,142 12,142 12,142 12,142 12,142 12,143 12,143 12,143 12,143 12,143 12,143 12,143 12,144		육성 및	첨단영화 기술육성	3,160	4,570	4,179	3,909	2,739	
원 6,150 5,843 5,841 5,836 6,998 위원회 영화정보시스템 육성 2,220 1,559 2,152 1,847 1,825 영화진흥 위원회 계 66,000 89,948 105,266 97,840 72,944 제 66,000 89,948 105,266 97,840 72,944 지금운영비 연화별전기금 운영비 1,965 2,299 2,136 2,437 2,237 영화진흥 위원회 계 10,835 11,587 11,741 12,176 12,142 지금관리비 구글라이크 등(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의수이자상환 의수이자상환 의수이자상환 의수이자상환 의수이자상환 의수이자상환 의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기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의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의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의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의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약된 기금 (총괄계정) 예탁 113,115 167,979 188,238 89,391 63,946	건 남푸(6	지원		1,937	-	-	-	-	
대한 대				6,150	5,843	5,841	5,836	6,998	
기금운영비 영화발전기금 운영비 기금관리비 1,965 2,299 2,136 2,437 2,237 영화진흥 위원회 기금관리비 1,965 11,587 11,741 12,176 12,142 경하진흥 위원회 경하고 등 위원회 기금간거래 경화 기금관리비 구급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경화진흥 위원회 경화진용 기원회 경화 기원회				2,220	1,559	2,152	1,847	1,825	
기금운영비 영화발전기금 영화발전기금 영화 1,965 2,299 2,136 2,437 2,237 영화진흥 위원회 기금관리비 1,965 2,299 2,136 2,437 2,237 영화진흥 위원회 경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경환 경환 기금간거래 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탁 기동,000 구 구 구 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탁 기동,000 구 구 구 중			계	66,000	89,948	105,266	97,840	72,944	
기금군영비 원영비 기금관리비 1,965 2,299 2,136 2,437 2,237 영화진흥 위원회 계 10,835 11,587 11,741 12,176 12,142 공공자금관리기 급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수인라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금(총괄계정) 예탁 기5,000 구 구 구 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예탁 예탁 113,115 167,979 188,238 89,391 63,946			인건비	8,870	9,288	9,605	9,739	9,905	
기금간거래 공공자금 공공자금관리기 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이수이자상환 의원회	기금운영비		기금관리비	1,965	2,299	2,136	2,437	2,237	
기금간거래			계	10,835	11,587	11,741	12,176	12,142	
기금간거래 상환 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80,000 영화진흥 위원회 공공자금 공공자금관리기 금(총괄계정) 예탁 75,000 영화진흥 위원회 여타 문용 113,115 167,979 188,238 89,391 63,946		금 공공자금 (총괄계정)		-	-	-	1,040	984	
관리기금 예탁금(총괄계정) 예탁75,000 예탁당와신용 위원회여유자금 운용113,115167,979188,23889,39163,946	기금간거래		금 (총괄계정)	-	-	-	-	80,000	
		관리기금	금(총괄계정)	75,000	-	-	-	-	
कामा 264,050, 269,514, 205,245, 200,447, 220,045	여유자금 운용			113,115	167,979	188,238	89,391	63,946	
답게 204,330 203,314 303,243 200,447 230,016		합계		264,950	269,514	305,245	200,447	230,016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영화발전기금의 지출합계는 2019년 264,950백만 원에서 2021년 305,245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200,447백만 원으로 크게 감소한 후 코로나 19 엔데믹으로 인해 2023년 230,016백만 원으로 다소 증가함

▮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세부사업

영화발전기금의 단위사업은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영화제작지원, 영화유통지원, 영화정책지원, 첨단영화 기술육성,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영화기획개발지원, 영화정보시스템 육성이 있음

- 독립예술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지원, 장편극영화 촬영공간 지원, 중국 필름비즈니스센터 입주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지원하는 영화제작 지원(직접, 출자 및 보조)은 2019년 17,311백만 원에서 2022년 46,868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23,324백만 원으로 감소함
- 전용관 운영지원, 독립예술영화 개봉지원,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필름마켓 등 참가지원, 한국영화 해외상영행사 지원, 국내외 영화제 육성 지원 등을 수행하는 영화유통지원(직접 및 보조)은 2019 년 18,810백만 원에서 2021년 22,643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20,507백만 원으로 감소함
- 영화산업 연구를 통한 진흥정책 방향 제시 및 공정환경 조성, 한국영화아카데미를 통한 영화산업 인력 양성, 영화향유권 강화, 아시아 영화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영화정책지원(직접 및 보조)은 2019년 16,412백만 원에서 2021년 22,253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17,553백만 원으로 감소함
- 영화기술 표준화 및 상용화 지원, 첨단영화 특성화 지원을 하는 첨단영화 기술육성(직접 및 보조)은 2019년 3,160백만 원에서 2020년 4,570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2,739백만 원으로 감소함
-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의 경우 2019년 1,937백만 원 지출했다가 촬영소 매각으로 사업 종료됨
- 시나리오 공모전 운영,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기획개발 전문역 량강화 지원 등 영화기획개발지원(직접 및 보조)의 경우 2019년 6,150백만 원에서 2021년 5,841백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6,998백만 원으로 증가함
- 영화진흥위원회 대표홈페이지 운영 및 전국 417개 영화관 연동 및 영화온라인상영관 연계확대 등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을 수행하는 영화정보시스템 육성(직접)의 경우 2019년 2,220 백만 원에서 2023년 1,825백만 원으로 감소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단	2023년	미끄
	영화제작지원	17,311	35,482	48,198	46,868	23,324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유통지원	18,810	22,366	22,643	20,330	20,507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책지원	16,412	20,128	22,253	19,050	17,551	영화진흥위원회
	첨단영화 기술육성	3,160	4,570	4,179	3,909	2,739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 육성 및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1,937	-	-	-	-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영화기획개발지 원	6,150	5,843	5,841	5,836	6,998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정보시스템 육성	2,220	1,559	2,152	1,847	1,825	영화진흥위원회
	계	66,000	89,948	105,266	97,840	72,944	

<표 3-9> 영화산업 육성 및 지원 세부사업 지출추이

▮ 영화발전기금의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의 경우 인건비와 기금관리비 모두 상승 추세에 있음

- 영화진흥위원회의 인건비의 경우 2019년 8,870백만 원에서 2023년 9,905백만 원으로 상승
-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상운영비인 기금관리비의 경우 2019년 1,965백만 원에서 2022년 2,437백 만 원으로 상승했다가 2023년 2,237백만 원으로 하락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보
O#####	인건비	8,870	9,288	9,605	9,739	9,905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 운영비	기금관리비	1,965	2,299	2,136	2,437	2,237	영화진흥위원회
는 0기	계	10,835	11,587	11,741	12,176	12,142	

<표 3-10> 영화발전기금 운영비 세부사업 지출추이

▮ 영화발전기금의 기금 간 거래 및 여유자금 운용

기금 간 거래의 경우 2023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80,000백만 원의 예수원금 상환을 하였으며, 2022년, 2023년에는 1,040백만 원, 984백만 원의 예수이자를 상환하였고 2019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75,000백만 원을 예탁하였음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2019년 113,115백만 원에서 2020년 167,979백만 원, 2021년 188,238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89,391백만 원, 2023년 63,946백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3. 지역신문발전기금의 5년간 재정현황과 추이

1)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일반현황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목적과 용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근거하여 2004년에 설치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설치목적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함(『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 13조 제1항)
- 초기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유효 기간이 2010년까지인 6년 한시법으로 공포되었지만, 2010년, 2016년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법의 효력이 2022년 12월까지 연장됨 (김은규, 2018)
- 한국사회에서 처음 시행된 언론에 대한 '지원법'으로써 행정적 규제 차원을 넘어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진흥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됨(한국언론정보학회, 2011)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용도는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그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는 정부출연금, 타 기금 전입금, 개인/법인 기부금, 기금운용수 익금 등이 있음(『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 제2항)

-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특별한 자체 재원 없이 거의 모든 재원을 정부가 출연함(한국언론정보학회, 201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기금관리주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기금의 관리·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이 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 기금의 출납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2)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수입현황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자체 수입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자체수입은 여유자금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이 해당함

- 자체수입은 160백만 원으로 동일하나, 수입총액 증가에 따라 자체수입률이 2019년 1.85%에서 2023년에는 1.63%로 감소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내부수입

지역신문발전기금 수입의 대부분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전입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일반회계에서만 전입을 받아오다, 2023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중이 줄고 언론진흥기금에서 전입을 받음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 회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여유자금 회수는 증감을 반복해면서 2023년에는 1,172백만 원으로 2019년에 비해 증가함

<표 3-11> 지역신문발전기금 주요 수입 구성(2019~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총 계	8,649	10,448	9,960	9,525	9,832	
자체수입	기타재산수입	160	160	160	160	160	이자수입 등
T10.00	전입금	8,000	8,000	8,700	8,300	8,500	일반회계(정부출연금)
정부내부 수입	- 일반회계전입금	8,000	8,000	8,700	8,300	2,500	및 타기금으로부터
тв	- 언론진흥기금 전입금	-	-	-	-	6,000	전입금
0=	유자금 회수	489	2,288	1,100	1,065	1172	여유자금 중 만기된 예치금 회수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3)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출현황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총지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출합계는 8,649백만 원에서 2020년 10,448백만 원으로 증가 후 9,960백만 원, 9,525백만 원, 9,832백만 원으로 정체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주요단위사업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개선 및 로컬 저널리즘 역량 강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신문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지원, 지역 언론의 공익적 역할 확대 지원을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직접 및 보조)의 경우 2019년 7,150백만 원에서 2020년

8,650백만 원, 2021년 8,699백만 원으로 상승했다 2022년 8,264백만 원, 2023년 8,251 백만 원으로 다소 감소했음

여유자금 운용은 2019년 906백만 원에서 2020년 1,196백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669백만 원, 2022년 686백만 원으로 감소하다 2023년 다시 1,019백만 원으로 증가함

<표 3-12> 지역신문발전기금 주요 지출 구성(2019~20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ماتد
문화미디어 산업육성및 지원	지역신문발 전지원	지역신문발전지 원	7,150	8,650	8,699	8,264	8,251	미디어 정책국
기금운영비	지역신문발 전기금운영 비	지발기금 기금관리비	593	602	592	575	562	미디어 정책국
여유자금 운용			906	1,196	669	686	1,019	미디어 정책국
합계			8,649	10,448	9,960	9,525	9,832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4. 언론진흥기금의 5년간 재정현황과 추이

1) 언론진흥기금의 일반현황

▮ 언론진흥기금의 목적 및 용도

언론진흥기금은 2009년 7월 22일에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언론진흥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근거하여 2010년 설치됨

- 법률 개정 전 신문발전기금에서 개정 후 언론진흥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
- 국내 신문을 포함한 언론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문,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잡지의 뉴스콘텐츠 제작과 유통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읽기 문화 확산 기사 및 광고의 자율 심의 지원 등과 같은 언론산업의 진흥 사업을 위해 운영되도록 개정함(유홍식·이은주·이지은, 2017)
- 설치목적은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 기금의 용도는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신문·인터넷 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신문사업 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 비스 및 잡지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 있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제35조(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등)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 해외 한국어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언론진흥기금의 재원으로는 정부출연금, 타기금 전입금, 개인/법인기부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이 있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 언론진흥기금은 정부출연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수입을 통한 법인 출연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고 있음(유홍식·이은주·이지은, 201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언론진흥기금의 기금의 관리주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언론진흥의 관리·운용)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진흥기금을 관리 및 운용할 것을 규정함

- 2009년 7월 22일에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 재단, 신문유통원이 해산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설립됨
- 언론진흥기금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뉴스미디어 진흥사업, 뉴스 유통구조 개선사업, 언론공익사업과 같은 3가지로 구분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언론진흥기금의 관리 · 운용) ① 언론진흥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 · 운용한다.

- ②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 금관리위원회를 둔다.
- ③ 언론진흥기금의 조성방법 \cdot 관리 \cdot 운용 및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cdot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2) 언론진흥기금의 수입현황

▮ 언론진흥기금의 자체수입

언론진흥기금의 자체수입은 기타재산수입과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있음

- 기타재산수입은 여유자금 예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며, 기타경상이전수입은 한국언 론진흥재단 법인예산에서 기금으로의 출연금과 민간경상보조사업 반납금 등 사업비 회수금액임
- 언론진흥기금 수입총액의 대부분은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구성됨
- 2019년 자체수입률이 94.07%였지만 2023년 만기 도래된 예치금 회수가 증가하며 수입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2023년 62.68%로 감소함

언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회수는 2023년 16,864백만 원으로 2019년 1,600백만 원에서 크게 증가함

<표 3-13> 언론진흥기금 주요 수입 구성(2019~20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총 계		26,978	31,293	34,048	38,184	45,193		
	기타재산수입	378	378	546	329	329	대기성자금 금융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25,000	25,000	25,000	25,000	28,000	한국언론진흥재단 법인예산에서 기금으로의 출연금	
	계 (자체수입/합계)	25,378 (94.07%)	25,378 (81.10%)	25,546 (75.03%)	25,329 (66.33%)	28,329 (62.68%)		
여유자금 회수		1,600	5,915	8,502	12,855	16,864	여유자금 중 만기된 예치금 회수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3) 언론진흥기금의 지출현황

■ 언론진흥기금의 총지출

언론진흥기금의 지출총액은 2019년 26,978백만 원에서 2023년 45,193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임

반면, 신문발전지원 단위사업 규모는 2019년 22,454백만 원에서 2023년 20,223백만 원으로 감소세임

<표 3-14> 언론진흥기금 주요 지출 구성(2019~2023년)

(단위: 백만원)

(L1)								1 . 422)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문화미디어 산업육성및 지원	신문발전 지원	뉴스미디어진흥	11,070	11,117	9,684	9,664	9,052	미디어 정책국
		뉴스유통구조개 선	3,766	3,422	3,229	3,229	3,125	미디어 정책국
		언론공익사업	7,618	8,023	8,064	8,214	8,046	미디어 정책국
		계	22,454	22,562	20,977	21,107	20,223	미디어 정책국
기금운영비	영비 언론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 운영비 기금관리비		235	229	216	213	191	미디어 정책국
기금간거래	기금간전출	지역신문발전기 금 전출	-	-	-	-	6,000	미디어 정책국
여유자금 운용			4,289	8,502	12,855	16,864	18,779	한국언론 진흥재단
합계			26,978	31,293	34,048	38,184	45,193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 언론진흥기금의 주요 단위사업

신문발전지원 단위사업은 뉴스미디어진흥사업, 뉴스유통구조 개선사업, 언론공익사업으로 구성됨

- 뉴스콘텐츠 생산 및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BIG KINDS 등 뉴스기반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기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언론산업 관련 전문연구수행 및 통계조사 실시, 고품질디지털 뉴스콘텐츠 보급 및 취재역량 강화, 국내외 언론 교류지원 및 재외동포 언론지원 등 뉴스미디어 진흥 사업(직접 및 보조)의 경우, 2019년 11,070백만 원에서 2023년 9,052백만 원으로 감소함
- 중복비용 제거를 위한 공동배달, 배달한계지역 거주 국민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개선, 통합배달센터를 통한 신문유통의 효율적 운영체계 확립 등 뉴스유통구조개선 사업(직접 및 보조)의 경우, 2019년 3,766백만 원에서 2023년 3,125백만 원으로 감소함
- 전 연령대 국민 대상 리터러시 배양, 뉴스친화도 제고, 기사 및 광고 자율심의 강화, 소외계층 대상 신문 구독기회 제공 등을 지원하는 언론공익사업의 경우, 7,618백만 원에서 8,046백만 원으로 증가함

<표 3-15> 신문발전지원 세부사업 지출추이

	구분	201013	202014	20211=	202214	202214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신문발전 지원	뉴스미디어진흥	11,070	11,117	9,684	9,664	9,052	미디어 정책국
	뉴스유통구조개선	3,766	3,422	3,229	3,229	3,125	미디어 정책국
	언론공익사업	7,618	8,023	8,064	8,214	8,046	미디어 정책국
	Й	22,454	22,562	20,977	21,107	20,223	미디어 정책국

▮ 언론진흥기금의 기금운영비/기금간거래/여유자금 운용

기금운영비는 2019년 235백만 원에서 2023년 191백만 원으로 감소함

기금 간 거래는 2023년 6,000백만 원 한 차례 발생함

- 지역신문발전기금 상시법 전환에 따른 지역신문발전지원 계속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재원의 안정성 충당을 위한 6,000백만 원을 전출함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2019년 4,289백만 원에서 2023년 18,779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5년간 재정현황과 추이

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반현황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목적 및 용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972년 12월 29일에 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근거하여 1973년도에 설치됨

-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할 것을 설치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
- 기금의 용도는 동법 제5조에 규정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 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 1.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1. 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 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 사업
- 3.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 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 9. 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10.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수 있다.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 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⑤ 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법정납부금(카지노 납부금, 출국납부금), 융자이자 수익 및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함

- 1973년 정부출연금 2억 원으로 설치 및 운용되기 시작하여 1996년 8월 14일 카지노 부담금이 신설되고, 1997년 6월 1일 출국납부금 신설되었음
- 2017년 11월 28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재원이 신설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11. 28.>

-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관리주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3조(기금의 관리)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에서 관리하고 있음

- 동법 제3조(기금의 관리)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산하 기금운용단에서 관리하고 있음
- 국외여행자납부금, 카지노납부금, 운용수익 등 수입 재원 검토, 각 사업 부서별 보조사업 등 요구 및 조정, 정부 관광정책과의 연계성 검토, 사업의 타당성 및 여타 재원과의 중복 여부 검토 등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3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현황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자체수입

자체수입은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토지 및 건물대여료, 기타재산수입,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2023년 수입합계에서 차지하는 자체수입의 비중은 36.03%로 2019년 57.48%에 비해 하향추세에 있음

- 2019년 자체수입은 711,077백만 원으로 수입총액의 57.48%를 차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법정부담금 감소와 수입총액의 증가로 인해 2023년 자체수입비중이 36.03%(622,983백만 원)로 감소하였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정부담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한 기금 납부금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의 납부금으로 구성됨
- 코로나 19로 인해 2019년 683,806백만 원이던 법정부담금은 2021년 534,700백만 원, 2022년 431,418백만 원으로 축소되다가, 2023년 589,359백만 원으로 회복세를 보임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계속해서 증가세임
-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증가함
-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인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안정적인 편임
- 2023년 코리아센터 입주기관의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에 따른 토지 및 건물대여료 395백만 원 발생함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정부내부수입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 예수금으로 구성됨

- 『관세법』 제 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2019년 30,441백만 원에서 2023년 17,376백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임
- 한편, 기금재원부족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2021년 300,000백만 원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차입하고, 2022년 800,000백만 원, 2023년 300,000백만 원을 차입함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원금 회수 및 여유자금 회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원금 회수는 2019년 310,605백만 원에서 2023년 652,497백만 원으로 증가세를 보임

여유자금 회수는 2023년 136,406백만 원으로 2019년 184,958백만 원에 비해 감소함

<표 3-16> 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 수입 구성(2019~20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총 계	1,237,011	1,518,520	1,662,463	1,873,357	1,729,262	
	통화금융기관이자 수입	6,823	6,742	4,566	6,833	9,160	융자이자수입
	토지 및 건물대여료	-	-	-	-	395	
	기타재산수입	4,128	3,639	4,272	4,421	5,004	기타민간 이자수입
자체수입	법정부담금	683,806	687,312	534,700	431,418	589,359	출국납부금,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기타경상이전수입	16,250	16,615	15,372	18,935	19,065	
	계 (자체수입/합계)	711,007 (57.48%)	714,308 (47.03%)	558,910 (33.62%)	461,607 (24.64%)	622,983 (36.03%)	
	전입금	30,441	30,441	37,750	10,950	17,376	일반회계(특허수수료)
정부내부 수입	- 일반회계전입금	30,441	30,441	37,750	10,950	17,376	전입금
	기금예수금	-	-	300,000	800,000	300,000	
පි	자원금회수	310,605	600,344	482,300	590,800	652,497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 회수
여	유자금 회수	184,958	173.427	283.503	10,000	136,406	여유자금 중 만기된 예치금 회수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현황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총지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출합계는 2019년 1,237,011백만 원에서 2022년 1,873,357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1,729,262백만 원으로 다소 감소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프로그램은 국내관광 활성화, 외래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 진흥 기반 확충으로 구성됨

<표 3-17> 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 지출 구성(2019~2023년)

(단위 : 백만원)

	7.11						(난 누	시 : 백만원) -
	구분	1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2020 [.	2021	2022 [.	2023 [2175
		전통문화체험지원	35,912	32,216	32,616	34,748	35,048	관정책국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1,321	1,084	-	-	_	관정책국
	관광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	14,006	20,207	14,204	16,911	15,700	관정책국
	인프라	핵심관광지 육성	29,300	12,100	10,295	-	-	관정책국
	조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4,200	17,200	39,900	35,431	-	관광정책국
		계	84,739	82,807	97,015	87,090	50,748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6,760	8,861	8,381	8,424	7,582	관정책국
		문화관광해설사육 성	5,930	9,956	9,956	-	-	관광정책국
		문화관광축제지원	6,315	5,790	4,281	4,164	3,747	관정책국
		국내관광 역량강화	30,312	36,569	41,784	46,736	47,693	관광정책국
		스마트관광활성화	7,747	15,712	30,172	48,971	33,631	관정책국
		국내여행활성화지 원	-	-	41,800	-	-	관광정책국
국내관광	국내관광 육성지원	융복합관광서비스 사업화지원	2,345	1,523	2,901	-	_	관광정책국
확성화 활성화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컨텐츠 융복합및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	705	1,095	632	-	관광정책국
		관광서비스혁신성 장 연구개발(R&D)	-	-	-	4,425	6,650	관광정책국
		계	59,409	79,116	140,370	113,352	99,303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2,228	22,401	21,191	17,377	20,948	관광정책국
	출국 납부금 징수위탁	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	-	7,066	385	580	관광정책국
		계	22,228	22,401	28,257	17,762	21,528	
	7171	관광산업융자자원(융자)	495,000	550,000	599,000	649,000	449,100	관광정책국
	관광 사업체 융자지원	관광산업융자지원 (신용보증기관출연)	-	-	-	10,000	10,000	관광정책국
	0.1.15	계	495,000	550,000	599,000	659,000	459,100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지원	53,680	78,198	56,510	49,402	51,419	관광정책국
01311313131	해외	한국관광해외광고	28,479	34,055	31,958	30,253	31,733	관광정책국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객 유치활동	한국관광공사운영지원	76,707	78,952	84,647	87,048	89,953	관정책국
π^	ㅠ시필ᆼ 사업	고품질관광기반조 성	-	-	21,671	24,675	40,564	관광정책국
		계	158,866	191,205	194,786	191,378	213,669	
-	_		_	_	_	_	_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9177
		한스타일육성지 원	6,738	7,774	10,567	12,571	11,314	문화장책관
		해면당반대입	10,363	20,310	15,510	-	-	문화정책관
		한국문회관광연구원 운영지원	10,263	10,801	12,311	12,519	12,195	기획조정실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유치	3,149	2,645	2,437	2,349	2,247	중앙박물관
외래관광객	문화협력을 통한	문화예술해외교 류	3,152	2,850	2,745	2,558	2,311	문장작관
유치	외래관광객 유치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6,261	6,545	5,971	5,606	5,568	해외문화 홍보원
		관광산업활성화 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시범지 원	1,780	800	384	360	324	콘텐츠 정책국
		공예관광산업육 성	5,330	5,960	5,896	5,528	4,975	예술정책관
		계	47,036	57,685	55,821	41,491	38,934	
		관광활성화기반구축	14,498	17,459	25,531	32,431	26,156	
		국민여기캠핑장조성	4,705	5,550	4,038	4,716	4,212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산업인재발 굴 및 전문역량강화	7,194	10,966	10,751	19,981	17,443	관광산업 정책관
7171101		관광사업창업지 원 및 벤처육성	19,746	51,464	74,504	76,354	61,904	
관광산업 활성화		계	46,143	85,439	114,824	133,482	109,715	
201	교리카지관 산업육성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8,417	10,347	10,151	11,951	13,231	
		마이스(MICE)산 업 육성 지원	25,878	30,347	30,257	38,964	32,800	관광산업 정책관
	1 1 H 4 0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14,990	17,241	20,378	20,378	18,340	
		계	49,285	57,935	60,786	71,293	64,371	
		관광자원 기반조성	25,727	26,672	33,513	50,446	-	· 관광산업
관광진흥 기반확충	관광자원 활성화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8,264	14,816	-	-	-	정책관
		계	33,991	41,488	33,513	50,446	-	
기금운영비	관광진흥개발 기금운영비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625	635	635	641	628	관광정책국
	공공자금 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 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6,262	16,306	23,155	52,655	53,793	관광정책국
기금간거래	예수금 상환	공공자금관리기 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	-	-	318,361	443,260	관광정책국
	기금간전출 (문예기금)		50,000	50,000	-	-	-	관정책 ³
	여유자금 운	-	173,427	283,503	314,301	136,406	174,213	관정책국
	하게		1 237 011	1 518 520	1 662 463	1 873 357	1 729 262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국내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국내 관광 활성화는 관광 인프라 조성, 국내 관광 육성 지원,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으로 구성됨

- 관광 인프라 조성 단위사업의 경우 2019년 84,739백만 원에서 2023년 50,748백만 원으로 감소함
- 국내관광육성지원 단위사업의 경우 2019년 59,409백만 원에서 2021년 140,370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3년 99,303백만 원으로 감소함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의 경우 2019년 22,228백만 원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21,528백만 원으로 다소 감소함
-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의 경우 2019년 459,000백만 원에서 2022년 659,000백만 원을 증가했다 가 2023년 459,100백만 원으로 감소함

▮ 국내 관광활성화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관광 인프라 조성은 전통 문화체험 지원사업,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한국형 생태녹색관광육 성, 핵심관광지 육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로 구성됨

- 템플스테이 지원, 선비문화연수원 지원, 서원·향교 지원, 인천공항 내 전통문화 체험관 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통문화체험 지원(보조)의 경우 2019년 35,912백만 원에서 2023년 35,048백만 원으로 정체됨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의 경우 2019년 1,321백만 원에서 감소하다가 2021년 폐지되었음
- 핵심관광지 육성은 2019년 29,300백만 원에서 감소하다가 2022년 폐지되었음
-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을 역사·문화·인문학적 이야기와 결합하여 관광자원화하고, 노후화된 관광 시설의 인프라 개선 및 문화콘텐츠 접목을 통해 관광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한국형 생태녹생관광 육성(직접 및 보조)은 2019년 14,006백 만 원에서 20,207백만 원으로 증가 후, 2023년 15,700백만 원으로 감소함
-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의 경우 2019년 4,200백만 원에서 2022년 35,431백만 원으로 증가하다 2023년 폐지됨

<표 3-19> 관광인프라 조성 세부사업 지출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니ㅗ
	전통문화체험지원	35,912	32,216	32,616	34,748	35,048	관광정책국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1,321	1,084	-	-	-	관광정책국
관광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	14,006	20,207	14,204	16,911	15,700	관광정책국
인프라	핵심관광지 육성	29,300	12,100	10,295	-	-	관광정책국
조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4,200	17,200	39,900	35,431	-	관광정책국
	계	84,739	82,807	97,015	87,090	50,748	

국내 관광육성지원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문화관광축제 지원, 국내 관광 역량강화, 스마트관광 활성화, 국내여행활성화 지원, 융복합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컨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 관광서비스혁신성장 연구개 발로 구성됨

<표 3-20> 국내관광 육성지원 세부사업 지출추이

	구분	201013	20201=	202113	202213	202214	ШD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6,760	8,861	8,381	8,424	7,582	관광정책국
	문화관광해설사육성	5,930	9,956	9,956	-	-	관광정책국
	문화관광축제지원	6,315	5,790	4,281	4,164	3,747	관광정책국
	국내관광 역량강화	30,312	36,569	41,784	46,736	47,693	관광정책국
	스마트관광활성화	7,747	15,712	30,172	48,971	33,631	관광정책국
	국내여행활성화지원	-	-	41,800	-	-	관광정책국
국내관광 육성지원	융복합관광서비스 사업화지원	2,345	1,523	2,901	-	-	관광정책국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컨텐츠 융복합및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	-	705	1,095	632	-	관광정책국
	관광서비스혁신성장 연구개발(R&D)	-	-	-	4,425	6,650	관광정책국
	계	59,409	79,116	140,370	113,352	99,303	

- 관광안내소 운영·관광안내서비스 개선·관광안내표지 개선·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관광경 찰 협업·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등을 지원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보조)은 2019년 6,760백만 원에서 2023년 7,582백만 원으로 증가함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은 2019년 5,930백만 원에서 2021년 9,956백만 원으로 증가하다가 2022

년에도 폐지됨

- 성장가능성 있는 축제의 문화관광 자원화 및 관광상품으로 특화하여 지역이미지 개선 및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을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직접 및 보조)은 2019년 6,315백만 원에서 2023년 3.747백만 원으로 감소함
- 범국민적 여행캠페인 및 국내관광 컨텐츠 발굴, 관광복지 확대를 통한 여행 문화 확산 및 국내여행 총량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관광 역량강화(지원, 출연 및 보조)는 2019년 30,312백만 원에서 2021년 47,693백만 원으로 증가함
-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을 이용해 편리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관광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 분석하며 온라인을 통해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스마트관광 활성화(보조)는 2019년 7,747백만 원에서 2022년 48,971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33,631백만 원으로 감소함
- 국내여행활성화 지원은 2021년 41,800백만 원으로 일회성 집행됨
- 융복합관광서비스 사업화 지원은 2019년 2,345백만 원에서 2021년 2,901백만 원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폐지됨
- 공간정보기반 실감형 컨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의 경우 2020년 705백만 원에서 증감하다 2023년 폐지됨
- 전통 관광기업 등의 첨단기술 기반 지원을 통한 강소형 관광기업으로의 도약 기반 마련 및 주요 관광서비스의 혁신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관광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관광서 비스혁신성장연구개발(출연)는 2022년 4,425백만 원에서 2023년 6,650백만 원으로 증가함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단위사업은 출국납부금 징수위탁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 흥기금 전출로 구성됨

-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은 2019년 22,228백만 원에서 2023년 20,948백만 원으로 감소함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은 2021년 7,066백만 원에서 2023년 580백만 원으로 감소함

<丑 3-21>	축군난부근	징수위탁	세부사업	지축추이

	구분	201013	202013	20211=	202213	202214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n177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2,228	22,401	21,191	17,377	20,948	관광정책국
출국 납부금 징수위탁	보세판매장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	-	7,066	385	580	관광정책국
	계	22,228	22,401	28,257	17,762	21,528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은 관광산업융자지원(융자)과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 출연)으로 구성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끄
관광 사업체 융자지원	관광산업융자지원(융자)	495,000	550,000	599,000	649,000	449,100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융자지원 (신용보증기관출연)	-	ı	-	10,000	10,000	관광정책국
8/1/12	계	495,000	550,000	599,000	659,000	459,100	

<표 3-22>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세부사업 지출추이

-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관광시설 확충 지원 및 관광사업체 운영지원을 통한 관광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융자)의 경우 2019년 495,000백만 원에서 2022년 649,000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449,100백만 원으로 감소함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가 보다 쉽게 관광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 출연을 통해 관광사업체 신용보증을 시행하는 관광산업 융자지원(신용보증기관출연)의 경우, 2022년, 2023년 10,000백만 원 두 차례 지출됨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외래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외래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은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로 구성됨

-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의 경우 2019년 158,866백만 원에서 2023년 213,669백만 원으로 증가함
-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의 경우 2019년 47,036백만 원에서 2023년 38,934백만 원으로 감소함

▮ 외래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사업은 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한국관광 해외광고, 한국 관광공사 운영지원,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으로 구성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0177	
해외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지원	53,680	78,198	56,510	49,402	51,419	관광정책국	
에되 관광객	한국관광해외광고	28,479	34,055	31,958	30,253	31,733	관광정책국	
유치활동사	한국관광공사운영지원	76,707	78,952	84,647	87,048	89,953	관광정책국	
업	고품질관광기반조성	-	-	21,671	24,675	40,564	관광정책국	
	계	158,866	191,205	194,786	191,378	213,669		

<표 3-23>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세부사업 지출추이

- 해외시장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인바운드 전략 수립 및 홍보마케팅 지원, 지역관광상품 개발 지원,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및 시장 건전화, 한국 관광통계 관리 및 조사 등을 수행하는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지원(직접, 출연 및 보조)은 2019년 53,680백만 원에서 2020년 78,198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51,419백만 원으로 감소추세임
-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미지광고, 온라인 홍보, 아리랑TV 등을 활용한 한국관광 해외홍보를 지원하는 한국관광 해외광고(보조)의 경우, 2019년 28,479백만 원에서 2020년 34,055백만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31,733백만 원으로 감소함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보조)의 경우 2019 년 76,707백만 원에서 2023년 89,953백만 원으로 증가함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코리아그랜드세일 개최, 관광편의성 제고를 위한 외국인 개별관광객의 이동편의성 향상 및 위치기반 쇼핑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고품질관광기반 조성(직접 및 보조)의 경우 2021년 21,671백만 원에서 2023년 40,564백만 원으로 증가함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는 한스타일 육성지원,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한국문화관 광연구원 운영지원, 문화시설 활용 외래 관광객 유치, 문화예술해외교류,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 사업, 공예관광산업 육성으로 구성됨

- 전통문화자원(한복, 한지) 대표 분야 지원, 한식 문화 진흥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한스타일육성지 원(직접 및 보조)의 경우 2019년 6,738백만 원에서 2023년 11,314백만 원으로 증가함
-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의 경우 2019년 10,363백만 원에서 2021년 15,510백만 원으로 증가한 후 2022년 폐지됨
-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의 연구 및 조사, 통계, 평가 등을 통해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진흥을 지원하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연구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출연)의 경우 2019년 10,263백만 원에서 2023년 12,195백만 원으로 증가함

- 우리문화재 국외전시 및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박물관 고객서비스 강화, 한국민속문화 해외전시 및 한국실 지원, 우리 민속한마당 운영, 남도예술여행 및 굿음악축제 등을 지원하는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직접)는 2019년 3,149백만 원에서 2023년 2,247백만 원으로 감소함
- 한중일 문화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 및 민간협업 지원, 우수프로그램 해외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는 문화예술해외교류(직접 및 보조)의 경우 2019년 3,152백만 원에서 2023년 2,311백만 원으로 감소함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재외한국문화원 특화사업 추진, 한일축제 한마당 지원, 한중일 예술제 추진 등을 수행하는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직접)의 경우 2019년 6,261백만 원에서 5,568 백만 원으로 감소함
- 외국 영상물의 한국 내 촬영을 유치 지원하는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보조)의 경우 2019년 1,780백만 원에서 2023년 324백만 원으로 감소함
- 한국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 가치 사슬체계를 구축하는 공예관광산업 육성(보조)의 경우 2019년 5,330백만 원에서 2023년 4,975 백만 원으로 감소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0177
	한스타일육성지원	6,738	7,774	10,567	12,571	11,314	문화정책관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	10,363	20,310	15,510	-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10,263	10,801	12,311	12,519	12,195	기획조정실
문화협력을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유치	3,149	2,645	2,437	2,349	2,247	중앙박물관
통한	문화예술해외교류	3,152	2,850	2,745	2,558	2,311	문화정책관
외래 관광객 유치	재외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6,261	6,545	5,971	5,606	5,568	해외문화 홍보원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시범지원	1,780	800	384	360	324	콘텐츠 정책국
	공예관광산업육성	5,330	5,960	5,896	5,528	4,975	예술정책관
	계	47,036	57,685	55,821	41,491	38,934	

<표 3-24>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세부사업 지출추이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산업활성화 프로그램

관광산업활성화 프로그램은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으로 구성됨

-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은 2019년 46,143백만 원에서 2023년 109,715백만 원으로 증가함

-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육성은 2019년 49,285백만 원에서 2023년 64,371백만 원으로 증가함

▮ 관광산업활성화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관광산업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은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관광산업 인재 발굴 및 전문역량 강화,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 육성으로 구성됨

-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호텔등급제도 운영, 안전민박 활성화,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유통 활성화 지원, 관광두레 조성, 전통한옥 브랜드화, 복합리조트 조성지원, 지역특화형 숙박시설 조성 등을 수행하는 관광활성화기반구축(직접 및 보조)은 2019년 14,498백만 원에서 2023년 26,156백만 원으로 증가함
- 등록야영장 지원을 위한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화재안전성확보 지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친환경 안전 캠핑문화 캠페인 지원 등을 지원하는 국민여가캠핑장조성(지원)은 2019년 4,705백만 원에서 2023년 4,212백만 원으로 감소함
- 관광전문인력 양성, 종사원 전문역량 강화, 관광산업 일자리 활성화, 유원시설 안전관리, 관광단체 및 연구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는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보조)는 2019년 7,194백만 원에서 2023년 17,443백만 원으로 증가함
- 관광분야 혁신적 사업소재를 지닌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발굴, 관광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업 성장 지원, 관광벤처 및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공간 및 종합 상담·컨설팅 서비스 지원,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는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출자 및 보조)의 경우 2019년 19,746백만 원에서 2023년 61,904백만 원으로 증가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스		
	관광활성화기반구축	14,498	17,459	25,531	32,431	26,156	관광산업 정책관		
	국민여가캠핑장조성	4,705	5,550	4,038	4,716	4,212	관광산업 정책관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산업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7,194	10,966	10,751	19,981	17,443	관광산업 정책관		
	관광사업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19,746	51,464	74,504	76,354	61,904	관광산업 정책관		
	계	46,143	85,439	114,824	133,482	109,715			

<표 3-25>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지출추이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육성 단위사업은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마이스 산업 육성지원,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로 구성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75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8,417	10,347	10,151	11,951	13,231	관광산업 정책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25,878	30,347	30,257	38,964	32,800	관광산업 정책관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14,990	17,241	20,378	20,378	18,340	관광산업 정책관
	계	49,285	57,935	60,786	71,293	64,371	

<표 3-26>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세부사업 지출추이

-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한국의료관광 통합플랫폼 구축, 웰니스 관광 육성,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는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보조)은 2019년 8,417백만 원에서 2023년 13,231백만 원으로 증가함
- 기업회의·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컨벤션 유치·개최 지원 활성화, 해외마켓 참가 및 국제이벤트 활성화, MICE 산업통계조사 및 운영, 지역MICE 활성화 지원, MICE 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직접 및 보조)은 2019년 25,878백만 원에서 2023년 32,800백만 원으로 증가함
- K-POP, 드라마, 공연, 음식, 스포츠 등 한국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하는 관광상품화를 지원하는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직접 및 보조)는 2019년 14,990백만 원에서 2023년 18,340백만 원으로 증가함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진흥기반 확충 프로그램

관광 진흥 기반 확충 프로그램은 관광자원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구성되고 여기에는 관광자원 기반조성과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이 있음

- 관광자원 기반조성은 2019년 25,727백만 원에서 2022년 50,446백만 원으로 증가하다가 2023년 폐지됨
- 폐광지역관광상품 개발은 2019년 8,264백만 원에서 2020년 14,816백만 원 증가하다가 2021 년 폐지됨

<표 3-27> 관광자원 활성화 세부사업 지출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끄
וסודוקור	관광자원 기반조성	25,727	26,672	33,513	50,446	-	관광산업 정책관
관광자원 활성화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8,264	14,816	-	-	-	관광산업 정책관
	계	33,991	41,488	33,513	50,446	-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운영비/기금간거래/여유자금 운용

기금운영비는 2019년 625백만 원에서 2023년 628백만 원으로 정체됨

- 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채용해 기금의 집행, 평가, 결산 및 여유자 금을 수행함

기금 간 거래의 경우,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대한 예수이자상환이 2019년 16,262백만 원에서 2023년 53,793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2년, 2023년에는 318,361백만 원, 443,260백만 원의 예수원금 상환이 있었고, 문예기금으로의 전출이 2019년, 2020년 각 50,000백만 원 이루어졌음

여유자금 운용은 2019년 173,427백만 원에서 2021년 314,301백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136,406백만 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2023년 174,213백만 원으로 다소 증가함

<표 3-28>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운영비/기금간거래/여유자금운용 세부사업 지출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니ㅗ
관광진흥개발 기금운영비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625	635	635	641	628	관광정책국
공공자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6,262	16,306	23,155	52,655	53,793	관광정책국
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	-	-	318,361	443,260	관광정책국
기금간전출 (문예기금)	문예기금전출	50,000	50,000	-	-	_	관광정책국
여유	자금 운용	173,427	283,503	314,301	136,406	174,213	관광정책국

6. 국민체육진흥기금의 5년간 재정현황과 추이

1)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일반현황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법적근거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기금의 설치 등)에 근거하여 1972년에 설치됨

-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 제1항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취약분야 육성, 스포츠산업진흥,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금의 용도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자금의 융자,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피해자 지원, 그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이 있음
- 위의 설치목적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한다.),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1.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4.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시행산업 또는 불법시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삭제 <2021. 8. 10.> 7.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다환와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다환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2014. 12. 23.> 10. 대한체육회, 지방제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평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지원 11. 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스포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1의3.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피해자 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자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 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시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 가 학교 체육 활성를 위한 시업 나 학교 및 작장 운동경 부 활성를 위한 시업 다 심판 양성 및 자원을 위한 시업
- 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시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시업 바.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시업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

『국민체육진흥법』제20조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 광고사업수입금, 골 프장 입장료 부가금, 기금운용수익금, 복권수익금, 부담금 및 가산금, 기부금 등으로 규정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6년과 2017년에는 중앙정부 체육 재정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 재원으로 부상함(금경만, 2020)
-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 토토)으로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및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공익사업이며 체육 재원을 조성하고 여가체육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며, 수익금 전액은 생활체육 활성화 등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함

-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발행 주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 사업을 승인 및 감독함
- 시행 초기 연 매출액 6천억 원을 목표로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이 기대되었지만 1년 동안 목표금액의 4%에 불과한 249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결국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2002년 9월 경영악화로 중단됐다가 2003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으로 10개월 만에 다시 발행이 재개됨
-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발행 회차를 추가하며, 다양한 게임방식을 개발하고, TV 광고를 진행하는 등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며, 2004년 4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야구·골프·씨름·배구 등 4개 종목의 토토가 추가됐고 해외경기에 대한 토토 발행도 가능해짐
- 이를 통해 본래 목표대로 체육진흥투표권은 2023년 약 7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게 됨

반면, 회원제 골프장 시설에 대한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음 으로써 없어짐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단순위헌)
-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단순위헌, 2017헌가21, 2019. 12. 27. 구 국민체육진흥법(2007. 4. 11. 법률 제8344호로 전부개정 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2017. 12. 19. 법률 제1526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3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기금관리주체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 제3항에서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

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20일에 설립됨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 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운용한다.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현황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자체수입

<표 3-29> 국민체육진흥기금 주요 수입 구성(2019~2023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u> </u>	2,292,442		2,612,259		3,165,171	9122
	기타민간이자수입	2,612	3,876	2,654	1,812	4,207	스포츠산업 융자, 기금조성사업 융자 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8,906	8,906	10,714	10,584	10,714	예탁금 이자수입
	법정부담금	31,313	32,879	1,920	1,522	1,553	회원제골프장부담금
자체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41,555	35,164	55,723	44,765	138,059	민간 또는 지자체 경상보조 사업의 정산금
	기타잡수입	23,984	24,578	23,930	16,691	26,384	각종 경기장, 공연장, 훈련원,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생활체육 인프라 등 운영 수입
	기타영업외잡수입	1,526,589	1,622,526	1,569,241	1,603,310	1,812,429	경륜, 경정, 투표권
	계 (자체수입/합계)	1,634,959 (71.32%)	1,727,929 (67.85%)	1,664,182 (60.07%)	1,678,684 (60.85%)	1,993,346 (62.98%)	전입금 및 투표권 재정외운용잔액
	전입금	75,423	77,916	88,565	93,814	91,450	타기금으로부터
	복권기금 전입금	75,423	77,916	88,565	93,814	91,450	전입금
정부내부 수입	기금예탁이자수입	16,880	14,778	20,410	21,150	22,086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자금의 이자수입
	기금예탁원금회수	400,000	270,000	407,020	620,000	620,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회수
여	유자금 회수	152,000	435,840	430,739	300,000	370,000	여유자금 중 만기된 예치금 회수
융 [,]	자원금 회수	13,180	20,226	10,343	44,656	68,289	스포츠산업 융자금 회수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자체수입은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영업외잡수입으로 구성되며, 2023년 수입합계 대비 자체수입의 비중은 62.98%로 2019년 71.32% 대비 감소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자체수입으로는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재산수입, 법정부담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기타영업외잡수입으로 구성됨
- 자체수입 규모 자체는 2019년 1,634,959백만 원에서 2023년 1,993,346백만 원으로 증가세에 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탁원금 회수액 증가, 만기도래 예치금 회수액 증가로 수입총액이 증가하면서 자체수입비중 자체는 2019년 71.32%에서 2023년 62.98%로 감소했음
- 경륜경정융자금 및 스포츠산업발전융자금 이자수입인 기타민간이자수입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함
- 예치금 이자수입인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세임
- 법정부담금인 회원제 골프장 시설이용자의 시설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

결로 인해 폐지되면서 2021년부터 크게 감소함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세임
- 소마미술관, 올림픽홀, 경륜·경정 시설, 친환경대중골프장의 운영수입과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수탁 받는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수입인 기타잡수입의 경우 2022년을 제외하고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
-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 수입으로 구성된 기타영업외잡수익은 2019년 1,526,589백만 원에서 2023년 1,812,429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임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정부내부수입

정부내부수입은 전입금, 기금예탁이자수입, 기금예탁원금 회수로 구성됨

- 전입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전입되며 2019년 75,423백만 원에서 2023년 91,450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기금예탁이자수입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한 자금에 대한 수익으로서 2019년 16,880백만 원에서 2023년 22,086백만 원으로 증가세임
- 기금예탁원금회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했던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서 2019년 400,000 백만 원에서 2023년 620,000백만 원으로 증가세임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융자원금 회수/여유자금 회수

스포츠산업의 기업들을 대상 융자사업 원금회수는 꾸준히 증가함

매년 만기 도래로 인한 통화/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회수를 의미하는 여유자금 회수는 2019 년 152,000백만 원에서 2023년 370,000백만 원으로 증가세임

3)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출현황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총지출

<표 3-30>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주요 지출 구성(2019~20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	1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4,668	27,654	33,236	51,896	85,232	체육국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84,659	102,088	111,946	132,857	146,035	체육국
		국민체력인증	10,923	18,717	16,739	17,173	17,513	체육국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 문예술 (압기 지원	70,206	77,585	75,502	73,275	71,534	체육국
	를 9기	안전한스포츠활동 지원	16,300	5,434	23,044	60,444	5,044	체육국
		스포츠 종목 보급	11,747	14,000	16,078	15,778	15,470	체육국
		<u>스포츠</u> 호 다입 선정·지원	-	100	95	95	85	체육국
생활체육 육성		계	218,503	245,578	276,640	351,518	340,913	
" 0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07,479	255,314	269,382	204,218	168,523	체육국
	생활체육 시설 지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16,773	28,580	15,040	6,055	25,730	체육국
		B자 보고	69,195	81,385	64,187	65,568	63,961	체육정책과
		계	293,447	365,279	348,609	275,841	258,214	
	학교체육 육성	초등학교스포츠강 사 배치지원	11,817	11,586	11,662	11,682	10,451	체육국
		방과 <u>후스포츠프로그램</u> 운영지원	24,598	22,598	20,751	19,467	19,967	체육국
		계	36,415	34,184	32,413	31,149	30,418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16,663	18,692	23,273	35,185	36,489	체육국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33,102	36,742	39,489	39,105	42,396	체육국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청사이전	150	300	285	-	6,474	체육국
	전문체육	우수선수 양성지원	99,191	113,120	110,595	113,015	124,696	체육국
	육성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5,655	4,603	4,289	5,888	11,481	체육정책과
전문체육		체육인재육성	1,372	1,372	1,303	1,222	1,094	체육정책과
육성		주최단체 지원	138,393	156,772	151,026	146,446	155,515	체육국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	2,291	5,312	6,185	7,268	체육국
		계	294,526	333,892	335,572	347,046	385,413	
	전체유성 기반구축	전국(소년)체전 지원	31,727	32,595	36,500	31,950	30,151	체육국
		체육인복지사업	18,766	17,012	17,440	17,512	17,919	체육국
	체육인 복지사업	장애체육인복지사 업	3,987	4,607	4,377	5,407	5,852	체육협력관
		계	22,753	21,619	21,817	22,919	23,771	
								89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스포츠과학지원	4,535	5,091	4,393	5,719	6,666	체육국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	2,955	4,100	4,291	3,007	-	체육국
	스포츠산업	스포츠창업 선도기업육성 핵심기술 개발(R&D)	1,949	3,782	1,701	-	-	체육국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 &D)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	-	-	3,950	4,000	5,000	체육국
		스포츠산업 혁신기반조성(R&D)	-	-	7,733	13,672	11,922	체육정책과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R&D)	-	-	-	-	2,000	체육정책과
스포스인입 육성		계	9,439	12,973	22,068	26,398	25,588	
퓩싱		국민체육진흥공 단 운영지원	28,981	67,343	65,034	59,367	72,313	체육국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올림픽스포츠콤 플렉스조성	21,372	4,000	44,878	54,741	82,626	체육정책과
	ALE 	경륜·경정 융자	-	-	-	65,000	-	체육국
		계	50,353	71,343	109,912	179,108	154,939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41,220	76,220	119,220	184,000	80,000	체육국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	-	-	24,320	10,101	체육국
		스포츠산업활성 화지원	37,799	55,558	60,386	66,564	72,156	체육국
		계	79,019	131,778	179,606	274,884	162,257	
		국제체육교류 지원	24,473	17,652	15,517	18,429	15,135	체육협력관
		도핑방지활동 지원	6,408	7,676	9,076	9,251	10,071	체육협력관
		국제대회국내개 최지원	32,673	10,690	18,200	18,500	37,146	체육협력관
국제스포츠	국제스포츠	태권도 진흥	15,000	18,731	18,407	16,441	16,397	체육협력관
역량강화	교류활성화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21,147	23,443	20,589	18,636	19,116	체육협력관
		개도국스포츠발 전지원	6,193	7,243	7,193	7,444	7,377	체육협력관
		계	105,894	85,435	88,982	88,701	105,242	
_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18,610	34,167	30,124	27,473	30,255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	장애인체육	장아인생활체육지원	20,494	25,669	26,894	27,521	28,058	체육협력관
육성	육성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26,178	31,571	33,893	34,930	37,777	체육협력관
		계	65,282	91,407	90,911	89,924	96,090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끄
		인건비	12,660	13,091	13,392	14,122	15,052	체육국
		기타경비	1,013	1,039	1,044	1,058	962	체육국
	국민체육진	투자사업운영	4,213	3,792	3,998	4,872	4,369	체육국
기금운영비	흥기금운영	한국스포츠정책 과학원 운영	3,941	3,883	3,822	3,649	3,690	체육국
	·	생활체육인프라 운영	7,417	7,310	7,384	7,400	7,690	체육국
		계	29,244	29,115	29,640	31,101	31,763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국민체육진흥기 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 금으로 예탁(총괄계정)	520,000	520,000	520,000	560,000	600,000	체육국
기금간거래	기금간전출 (문화예술진 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 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 금으로 전출	100,000	100,000	97,000	97,000	100,000	체육국
	국민체육진흥기 복권기금 금에서 전출 복권기금으로의 반환금		-	-	4,571	13,136	14,600	체육국
여유자금 운용		435,840	471,491	427,018	337,629	805,812		
	합계			2,546,68 9	2,621,25 9	2,758,30 4	3,165,17 1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및「예산및기금운용계획 각목명세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출합계는 2019년 2,292,442백만 원에서 2023년 3,165,171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체육 육성, 전문체육육성, 스포츠산업 육성, 국제스 포츠 역량 강화, 장애인체육 육성으로 구성됨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프로그램에는 생활체육활성화, 생활체육시설 지원, 학교 체육 육성으로 단위사업이 구성됨

- 생활체육활성화는 2019년 218,503백만 원에서 2023년 340,913백만 원으로 증가함
-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2020년 365,279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258,214백만 원으로 감소함
- 학교체육 육성은 2019년 36,415백만 원에서 2023년 30,418백만 원으로 감소함

▮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세부사업

생활체육활성화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국민체력인증,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스포츠 종목 보급, 스포츠 친화 기업 선정·지원으로 구성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0 14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4,668	27,654	33,236	51,896	85,232	체육국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84,659	102,088	111,946	132,857	146,035	체육국
	국민체력인증	10,923	18,717	16,739	17,173	17,513	체육국
생활체육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70,206	77,585	75,502	73,275	71,534	체육국
활성화	안전한스포츠활동 지원	16,300	5,434	23,044	60,444	5,044	체육국
	스포츠 종목 보급	11,747	14,000	16,078	15,778	15,470	체육국
	스포츠친화기업 선정 · 지원	-	100	95	95	85	체육국
	계	218,503	245,578	276,640	351,518	340,913	

<표 3-33> 생활체육 활성화 세부사업 지출추이

- 저소득층 유·청소년 91,600명과 장애인 14,000명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보조)은 2019년 24,668백만 원에서 2023년 85,232백만 원으로 증가함
- 일반 국민 및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보조)은 2019년 84,659백만 원에서 2023년 146,035백만 원으로 증가함
- 개인 체력수준의 객관적 분석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제공을 지원하고 국가 주도의 과학적 체력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국민체력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국민체력인증(보조)은 2019년 10,923백만 원에서 2023년 17,513백만 원으로 증가함
- 전문체육 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보조)은 2019년 70,206백만 원에서 2020년 77,585백만 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71,534백만 원으로 감소
- 안전교육 시스템 체계화 및 지속적 지원과 전국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직접 및 보조)의 경우 2019년 16,300백만 원에서 2023년 5,044백만 원으로 감소함
- 전통스포츠보급, 전통무예진흥, 민속씨름진흥, 레저스포츠보급, 바둑대회지원, 바둑보급사업, 유네 스코 국제무예센터 운영, 충주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등을 지원하는 스포츠 종목 보급(보조)은

2019년 11,747백만 원에서 2023년 15,470백만 원으로 증가함

- 스포츠친화기업지수 측정 및 인증,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인을 위한 스포츠친화 문화 조성을 지원하는 스포츠친화기업 선정·지원(보조)은 2020년 100백만 원에서 85백만 원으로 감소함

생활체육시설 지원에는 국립체육센터 건립지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대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구성됨

- 수영장·체육관 등 국민이 선호하는 기초 생활체육시설인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근거리에 설치하고 학교 및 산업단지 부지에 실내체육관인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지원하여 학생·근로자·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는 것을 지원하는 국립체육센터 건립지원(보조)은 2019년 207,479백만 원에서 2023년 168,523백만 원으로 감소함
- 주민들의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해 체육·문화 복합시설 등을 건립하는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보조)은 2019년 16,773백만 원에서 2023년 25,730백만 원으로 증가함
- 공공체육시설 내 노후시설 개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체육시설을 긴급하게 개보수하는 것을 지원하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보조)은 2019년 69,195백만 원에서 2023년 63,961백만 원으로 감소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끄
생활체육시설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207,479	255,314	269,382	204,218	168,523	체육국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16,773	28,580	15,040	6,055	25,730	체육국
	원자수보다일사위사장	69,195	81,385	64,187	65,568	63,961	체육정책과
	계	293,447	365,279	348,609	275,841	258,214	

<표 3-34> 생활체육시설 지원 세부사업 지출추이

학교체육 육성으로는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지원,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구성됨

< <u> </u>	5> 학교체육	·육성 사	세부사업	지줄주이
<± 3-3	b> 약교세육	·육성 시	해무사업	시술수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13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ᅶ
±1.7.+11.0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지원	11,817	11,586	11,662	11,682	10,451	체육국
학교체육 육성	방과후 <u>스포ᄎ프로그</u> 램 운영지원	24,598	22,598	20,751	19,467	19,967	체육국
	계	36,415	34,184	32,413	31,149	30,418	

-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여 내실 있는 체육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보조)은 2019년 11,817백만 원에서 2023년 10,451백만 원으로 감소하였음
- 토요 휴업일에 학생들의 스포츠 및 레저 활동 수요를 충족시키고,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를 지원하는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지원(보조)은 2019년 24,598백만 원에서 2023년 19,967백만 원으로 감소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문체육프로그램

전문체육 육성 프로그램은 전문체육 육성,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체육인 복지사업으로 단위 사업이 구성됨

- 전문체육 육성은 2019년 294,526백만 원에서 2023년 385,413백만 원으로 증가함
-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은 2019년 31,727백만 원에서 2023년 30,151백만 원으로 정체됨
- 체육인 복지사업의 경우 2019년 22,753백만 원에서 2023년 23,771백만 원으로 증가함

▮ 전문체육프로그램의 세부사업

전문체육 육성은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청사이전, 우수선수 양성지원,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체육인재 육성, 주최단체 지원, 스포츠윤 리센터 운영으로 구성됨

-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 육성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대한체육회 운영지원(보조)은 2019년 16,663백만 원에서 2023년 36,489백만 원으로 증가함
-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운영, 체육정보망 구축, 은퇴선수 진로 지원, 학생선수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 스포츠 ICT 통합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보조)은 2019년 33,102백만 원에서 2023년 42,396백만 원으로 증가함
- 조선왕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원형복원계획에 따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토지 소유권 자인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청사이전 요구로 인한 과학원 신청사 이전을 지원하는 한국스포츠정책 과학원 청사이전(보조)의 경우 2019년 150백만 원에서 2023년 6,474백만 원으로 증가함
- 국가대표 훈련 지원, 선수촌 운영, 체계적인 우수선수 육성시스템 구축, 한국동계스포츠 육성을 지원하는 우수선수 양성지원(보조)은 2019년 99,191백만 원에서 2023년 124,696백만 원으로 증가함
- 대한민국 체육역사·유물의 체계적 수집·조사연구를 통한 다양한 전시와 정보제공 등 체육문화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체육박물관 건립(보조)은 2019년 5,655백만 원에서 2023년 11,481백만 원으로 증가함

- 체육지도자 및 체육 분야 현장전문가의 전문역량 강화, 다양한 잠재인력 유입 기회 제공을 통한 체육 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체육인재 육성(보조)의 경우, 2019년 1,372 백만 원에서 2023년 1,094백만 원으로 감소함
- 프로스포츠 활성화, 유소년·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비발행대상종목 지원, 프로스포츠 정책 및 공통 사업을 지원하는 주최단체 지원(보조)은 2019년 138,393백만 원에서 2023년 155,515백만 원으로 증가함
- 체육계 비리 및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상담·신고 및 조사를 전담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운영(보조)은 2020년 2,291백만 원에서 2023년 7,268백 만 원으로 증가함

	<u>구분</u>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2020 [-	2021	2022	2023 [-	2175
	대한체육회 운영지원	16,663	18,692	23,273	35,185	36,489	체육국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회 지원	33,102	36,742	39,489	39,105	42,396	체육국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청사이전	150	300	285	-	6,474	체육국
전문체육	우수선수 양성지원	99,191	113,120	110,595	113,015	124,696	체육국
육성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5,655	4,603	4,289	5,888	11,481	체육정책과
	체육인재육성	1,372	1,372	1,303	1,222	1,094	체육정책과
	주최단체 지원	138,393	156,772	151,026	146,446	155,515	체육국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	2,291	5,312	6,185	7,268	체육국
	계	294,526	333,892	335,572	347,046	385,413	

<표 3-36> 전문체육 육성 세부사업 지출추이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단위사업은 전국(소년)체전 지원으로 구성됨

-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지원, 전국체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전국체전 지원(보조)은 2019년 31,727백만 원에서 2023년 30,151백만 원으로 정체됨

<표 3-37>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세부사업 지출추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 1년	2022년	2023년	미끄
전문체육육성 기반구축	전국(소년)체전 지원	31,727	32,595	36,500	31,950	30,151	체육국

체육인 복지사업은 체육인 복지사업과 장애체육인 복지사업으로 구성됨

-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및 장학지원, 체육요원 복무관리, 체육인 복지전담기관 운영 등을 지원하는 체육인 복지사업(직접 및 보조)은 2019년 18,766백만 원에서 2023년 17,919백만 원으로 감소 함
- 장애인 체육인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복지후생금 지원, 장학지원 등 재정적 복지를 지원하는 장애체 육인복지사업(보조)의 경우, 2019년 3,987백만 원에서 2023년 5,852백만 원으로 증가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끄
체육인 복지사업	체육인복지사업	18,766	17,012	17,440	17,512	17,919	체육국
	장애체육인복지사업	3,987	4,607	4,377	5,407	5,852	체육협력관
	계	22,753	21,619	21,817	22,919	23,771	

<표 3-38> 체육인복지사업 세부사업 지출추이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스포츠 산업 육성 프로그램

스포츠산업 육성 프로그램에는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스포츠산업 활성화로 구성됨

-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의 경우 2019년 9,439백만 원에서 2023년 25,588백만 원으로 증가함
-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은 2019년 50,353백만 원에서 2023년 154,939백만 원으로 증가함
- 스포츠산업 활성화는 79,019백만 원에서 2023년 162,257백만 원으로 증가함

▮ 스포츠산업 육성 프로그램의 세부사업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은 스포츠과학 지원,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 스포츠창업 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으로 구성됨

- 스포츠 과학지원을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스포츠 과학적 훈련기반 전국 구축, 한국스포츠 정책과학원 시설확충, 진천선수촌 스포츠과학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스포츠과학지원(직접 및 보조) 은 2019년 4,535백만 원에서 2023년 6,666백만 원으로 증가함
-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은 2019년 2,955백만 원에서 증감하다가 2023년 폐지됨
- 스포츠창업 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은 2019년 1,949백만 원에서 증감하다가 2022년에 폐지됨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애인의 재활운동 지원을 통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 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출연)은 2021년 3,950백만 원에서 2023년 5,000백만 원으로 증가함

- 대면 중심인 스포츠 활동(관람/참여)을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출연)은 2021년 7,733백만 원에서 2023년 11,922백만 원으로 증가함
- 국가대표를 비롯한 스포츠선수, 일반 국민 등 개인의 운동역량 및 신체능력을 개발하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출연)은 2023년 2,000백 만 원로 신설됨

	구분		202013	202113	202214	202214	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스포츠과학지원	4,535	5,091	4,393	5,719	6,666	체육국
	스포츠서비스 사업화지원(R&D)	2,955	4,100	4,291	3,007	_	체육국
스포츠산업	스포츠창업 선도기업육성 핵심기술 개발(R&D)	1,949	3,782	1,701	-	-	체육국
연구 및 기술개발(R& D)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	-	-	3,950	4,000	5,000	체육국
	스포츠산업 혁신기반조성(R&D)	-	-	7,733	13,672	11,922	체육정책과
	종목별 경기력 향상 지원(R&D)			-		2,000	체육정책과
	계	9,439	12,973	22,068	26,398	25,588	

<표 3-39>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세부사업 지출추이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올림픽 스포츠콤플렉스 조성, 경륜·경 정 융자로 구성됨

-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서울올림픽 레거시 및 체육시설 운영·관리, 스포츠센터 및 유스호스텔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보조)은 2019년 28,981백만 원에서 2023년 72,313백만 원으로 증가함
- 올림픽회관과 파크텔을 중심 건축물로 삼아 스포츠업무·문화·관광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학교의 체험학습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체험학습 및 연수공간인 스포츠 가치센터 건립, 노후된 올림픽공원 벨로드롬의 개보수, 원주스포츠 가치센터 건립 연구용역, 국민체육진흥공단 청사 이전, 서울올림픽기념관 전시공간 복구, 올림픽테 니스경기장 리모델링 등을 지원하는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조성(보조)은 2019년 21,372백만 원에서 2023년 82,626백만 원으로 증가함
- 경륜·경정 융자는 2022년 65,000백만 원으로 단일성 집행함

<표 3-40>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세부사업 지출추이

구분		2019년	202013	2021년	202213	202214	НЭ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운영지원	28,981	67,343	65,034	59,367	72,313	체육국
기금조성 기반시설 지원	올림픽스포츠콤플 렉스조성	21,372	4,000	44,878	54,741	82,626	체육정책과
	경륜·경정 융자	-	-	-	65,000	-	체육국
	계	50,353	71,343	109,912	179,108	154,939	

스포츠산업 활성화 단위사업은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구성됨

- 국내 체육관련업체의 생산, 연구 및 사업운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은 2019년 41,220백만 원에서 2022년 184,000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80,000백만 원으로 감소함
-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조성을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출자)은 2022년 24,320백만 원에서 2023년 10,101백만 원으로 감소함
- 국내 유망중소스포츠기업의 성장지원, 스포츠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스포츠산업 초기 스타트업육성, 유망기업 성장촉진 지원, 지역스포츠산업 지원, 4차 산업 핵심기술을 활용한 스포츠산업 프로젝트 지원, 비대면 스포츠 신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직접 및 보조)은 2019년 37,799백만 원에서 2023년 72,156백만 원으로 증가함

<표 3-41> 스포츠산업 활성화 세부사업 지출추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길
스포츠산업 활성화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	41,220	76,220	119,220	184,000	80,000	체육국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	-	-	24,320	10,101	체육국
	스포츠산업활성화 지원	37,799	55,558	60,386	66,564	72,156	체육국
	계	79,019	131,778	179,606	274,884	162,257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제스포츠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하위 사업

국제스포츠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국제스포츠 교류활성화로 구성되고 여기에는 국제체육교류 지원, 도핑방지활동 지원,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 태권도 진흥, 태권도진흥재단 운영 지원,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이 있음

- 한중일 스포츠 교류확대,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체육협력 역량 강화, 국제대회 참가 선수단에 대한 체계적 지원, 국제경기대회 홍보 및 문화행사 등을 지원하는 국제체육교류 지원(보조)은 2019년 24,473백만 원에서 2023년 15,135백만 원으로 감소함
- 도핑방지위원회(KADA)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지원,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검사, 도핑방지교육 및 홍보 지원, 세계도핑방지기구 공인실험실 유지 및 도핑분석기기 보강 지원 등을 위한 도핑방지활동 지원(보조)은 2019년 6,408백만 원에서 2023년 10,071백만 원으로 증가함
- 지자체 및 종목별 국제대회 개최 지원, 국제대회 유치개최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국제대회 국내 개최 지원(보조)은 2019년 32,673백만 원에서 2020년 10,690백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7,146백만 원으로 증가함
- 태권도 봉사단 해외파견, 태권도 시범단 해외공연, 태권도 교육 및 연구, 관람형 태권도 대회육성 지원 등 태권도 산업화 지원, 태권도 문화컨텐츠 육성을 지원하는 태권도 진흥(보조)은 2019년 15,000백만 원에서 2023년 16,397백만 원으로 소폭 증가함
- 태권도진흥재단 인건비 및 기관 경비 지원, 태권도 진흥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지원(보조)은 21,147백만 원에서 19,116백만 원으로 감소함
- 개도국선수 합동훈련 과정 지원,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지원,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지원 등을 수행하는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보조)은 2019년 6,193백만 원에서 2023년 7,377백만 원으로 증가함

<표 3-42> 국제스포츠 교류활성화 세부사업 지출주	-0
-------------------------------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미끄
	국제체육교류 지원	24,473	17,652	15,517	18,429	15,135	체육협력관
	도핑방지활동 지원	6,408	7,676	9,076	9,251	10,071	체육협력관
	국제대회국내개최 지원	32,673	10,690	18,200	18,500	37,146	체육협력관
국제스포츠교	태권도 진흥	15,000	18,731	18,407	16,441	16,397	체육협력관
류활성화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보조) 지원	21,147	23,443	20,589	18,636	19,116	체육협력관
	개도국스포츠발전 지원	6,193	7,243	7,193	7,444	7,377	체육협력관
	계	105,894	85,435	88,982	88,701	105,242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장애인체육 육성 프로그램 및 하위 사업

장애인체육육성 단위사업은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으로 구성됨

-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이천선수촌 운영지원, 장애인체육 가맹단체 지원, 장애인체육 시도지부 지원, 장애인체육 법인단체 지원,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보조)은 2019년 18,610백만 원에서 2023년 30,255백만 원으로 증가함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환경 조성 및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생활체육지원 (보조)은 2019년 20,494백만 원에서 2023년 28,058백만 원으로 증가함
- 장애인 선수 훈련 지원 점진적 확대 및 안정적 훈련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수단 경기력 향상 제고 및 체계적인 우수선수 육성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보조)은 2019년 26,178백만 원에서 2023년 37,777백만 원으로 증가함

구분		2019년	202014	202113	202213	202213	шэ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18,610	34,167	30,124	27,473	30,255	체육협력관
장애인체육육	장애인생활체육지원	20,494	25,669	26,894	27,521	28,058	체육협력관
성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26,178	31,571	33,893	34,930	37,777	체육협력관
	계	65,282	91,407	90,911	89,924	96,090	

<표 3-43>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지출추이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기금운영비/기금간거래/여유자금 운용

기금운영비는 인건비, 기타경비, 투자사업운영,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운영, 생활체육인프라운영으로 구성되며, 2019년 29,244백만 원에서 2023년 31,763백만 원으로 규모 면에서는 증가했으나 지출합계 대비 비중으로는 감소하였음

- 기금 사업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는 2019년 12,660백만 원에서 2023년 15,052백만 원으로 증가함
- 관서운영비, 여비 등 기타경비는 2019년 1,013백만 원에서 2023년 962백만 원으로 증가함
- 기금의 직접투자로 건립된 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 운영은 2019년 4,213백만 원에서 2023년 4,369백만 원으로 증가함
- 스포츠과학에 기초한 국민체육진흥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운영은 2019년 3,941백만 원에서 2023년 2,690백만 원으로 감소함

- 저렴한 골프생활을 위한 대중골프장 조성을 지원하는 생활체육인프라 운영은 2019년 7,417백만 원에서 2023년 7,690백만 원으로 증가함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n 17;
	인건비	12,660	13,091	13,392	14,122	15,052	체육국
	기타경비	1,013	1,039	1,044	1,058	962	체육국
국민체육진흥 기금운영비	투자사업운영	4,213	3,792	3,998	4,872	4,369	체육국
	한국스포츠정책 과학원 운영	3,941	3,883	3,822	3,649	3,690	체육국
	생활체육인프라운 영	7,417	7,310	7,384	7,400	7,690	체육국
	계	29,244	29,115	29,640	31,101	31,763	

<표 3-44>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비 세부사업 지출추이

기금 간 거래의 경우 2019년, 2020년, 2021년 공자기금에 520,000백만 원, 2022년 560,000백만 원, 2023년 600,000백만 원을 예탁하며 꾸준히 예탁을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매년 100,000백만 원 전출하고 있고, 2021년부터 복권기금으로 반환금을 전출하고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은 2019년 520,000백만 원에서 2023년 600,000백만 원으로 증가함
- 기초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부족재원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출은 2019년 100,000백만 원에서 2023년 100,000백만 원으로 동일함
- 복권기금전입금 집행 잔액 반납을 의미하는 복권기금으로의 반환금은 2021년 4,571백만 원에서 2023년 14,600백만 원으로 증가함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2019년 435,840백만 원, 2020년 471,491백만 원, 2021년 427,018백만 원으로 정체하고 있다가 2022년 337,629백만 원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23년 805,812백만 원으로 대폭 증가함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비교분석

1. 수입·지출 비교분석

1) 수입 비교분석

▮ 기금의 수입구성

기금의 수입은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융자원금 회수, 여유자금회수로 구분됨

-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자산매각대금, 이월금 및 세계잉여금 등으로 구성됨
- 여기서 자산매각대금의 경우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자체수입이라고 판단키 어려움
- 정부내부수입은 전입금, 예탁원금 회수, 예수금, 예탁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됨
- 예탁원금 회수는 자산회수의 성격, 예수금의 경우 차입금의 성격이기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감 사연구원, p.65)
- 융자원금회수는 기금에서 운용하는 융자사업의 원금을 회수한 것이며, 여유자금 회수는 여유자금 중 만기가 도래한 예치금을 회수한 것임

자체수입의 경우 규모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고 영화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증가하였으며 지역신문발전 기금은 정체되는 한편,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측면에서는 영화발전기금만이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고 나머지 기금들을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감소하였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절대액과 비중 모두 감소함
-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절대액과 비중 모두 증가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절대액은 유지되지만 비중은 감소함
-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비중은 감소함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절대액과 비중 모두 감소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절대액은 증가하지만 비중은 감소함

<표 3-45> 최근 5년간 기금별 자체수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문화예술진흥기금	63,631 (13.58%)	66,079 (12.15%)	66,213 (12.64%)	56,419 (10.77%)	61,555 (11.41%)	
	영화발전기금	55,992 (21.13%)	58,996 (21.89%)	61,088 (20.01%)	48,660 (24.28%)	60,625 (26.36%)	
자체수입 (자체수	지역신문발전기금	160 (1.85%)	160 (1.53%)	160 (1.61%)	160 (1.68%)	160 (1.63%)	
입/총수 입)	언론진흥기금	25,378 (94.07%)	25,378 (81.10%)	25,546 (75.03%)	25,329 (66.33%)	28,329 (62.68%)	
	관광진흥개발기금	711,007 (57.48%)	714,308 (47.03%)	558,910 (33.62%)	461,607 (24.64%)	622,983 (36.03%)	
	국민체육진흥기금	1,634,959 (71.32%)	1,727,929 (67.85%)	1,664,182 (60.07%)	1,678,684 (60.85%)	1,993,346 (62.98%)	

<표 3-46> 최근 5년간 기금별 정부내부수입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문화예술진흥기금	305,561 (65.22%)	293,324 (53.93%)	267,464 (51.05%)	300,868 (57.42%)	373,896 (69.29%)	
	영화발전기금	23,674 (8.94%)	97,403 (36.14%)	76,178 (24.96%)	80,000 (39.91%)	80,000 (34.78%)	
정부 내부	지역신문발전기금	8,000 (92.50%)	8,000 (76.57%)	8,700 (87.35%)	8,300 (87.14%)	8,500 (86.45%)	
수입	언론진흥기금	-	-	-	-	-	
	관광진흥개발기금	30,441 (2.46%)	30,441 (2.00%)	337,750 (20.32%)	810,950 (43.29%)	317,376 (18.35%)	
	국민체육진흥기금	492,303 (21.48%)	362,694 (14.24%)	515,995 (19.69%)	734,964 (26.65%)	733,536 (23.18%)	

정부내부수입의 경우 규모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모두 증가했지만, 총 수입 대비 정부내부수입 비중을 보았을 때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증가했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감소함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절대액과 비중 모두 증가함

-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절대액과 비중 모두 증가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절대액은 증가했지만 비중은 감소함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절대액과 비중 모두 증가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절대액과 비중 모두 증가함

융자원금 회수의 경우 규모 측면과 총 수입 대비 비중 측면 모두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모두 증가함

<표 3-47> 최근 5년간 기금별 융자원금 회수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문화예술진흥기금	-	-	-	4,640 (0.89%)	17,888 (3.31%)	
	영화발전기금	-	1	-	-	-	
융자원금	지역신문발전기금	-	-	-	-	-	
회수	언론진흥기금	-	-	-	-	-	
	관광진흥개발기금	310,605 (25.11%)	600,344 (39.53%)	482,300 (29.01%)	590,800 (31.54%)	652,497 (37.73%)	
	국민체육진흥기금	13,180 (0.57%)	20,226 (0.79%)	10,343 (0.39%	44,656 (1.62%)	68,289 (2.16%)	

여유자금 회수의 경우 규모 측면과 총수입 대비 비중 측면 모두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 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감소했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 금의 경우 증가했음

<표 3-48> 최근 5년간 기금별 여유자금 회수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문화예술진흥기금	99,341 (21.20%)	184,507 (33.92%)	190,225 (36.31%)	162,060 (30.93%)	86,298 (15.99%)	
	영화발전기금	185,284 (69.93%)	113,115 (41.97%)	167,979 (55.03%)	71,787 (35.81%)	89,391 (38.86%)	
여유자금	지역신문발전기금	489 (5.65%)	2,288 (21.90%)	1,100 (11.04%)	1,065 (11.18%)	1,172 (11.92%)	
회수	언론진흥기금	1,600 (5.93%)	5,915 (18.90%)	8,502 (24.97%)	12,855 (33.67%)	16,864 (37.32%)	
	관광진흥개발기금	184,958 (14.95%)	173,427 (11.42%)	283,503 (17.05%)	10,000 (0.53%)	136,406 (7.89%)	
	국민체육진흥기금	152,000 (6.63%)	435,840 (17.11%)	430,739 (16.43%)	300,000 (10.88%)	370,000 (11.69%)	

2) 지출비교분석

▮ 기금의 지출구성

기금의 지출은 경상사업비, 융자사업비, 기금운영비, 기금 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으로 구성됨

- 경상사업비는 소비성 지출인 반면, 융자사업비는 신용위험은 있지만 회수가 가능한 지출임
- 기금운영비는 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됨
- 기금 간 거래는 공자기금 예탁금, 예수금 원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 전출금 등으로 구성됨
- 여유자금 운용은 금융기관 혹은 비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 또는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구성됨

경상사업비의 경우, 규모 측면에서 언론진흥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이 2019년에 비해 2023년 증가함

지출총액 대비 경상사업비 지출 비중 측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 기금은 증가하였지만,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감소함

<표 3-49> 최근 5년간 기금별 경상사업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문화예술진흥기금	242,577 (51.77%)	248,795 (45.74%)	277,494 (52.97%)	341,694 (65.21%)	365,498 (67.73%)	
	영화발전기금	66,000 (24.91%)	89,948 (33.37%)	105,266 (34.49%)	97,840 (48.81%)	72,944 (31.71%)	
경상	지역신문발전기금	7,150 (82.67%)	8,650 (82.79%)	8,699 (87.34%)	8,264 (86.76%)	8,251 (83.92%)	
사업비 지출	언론진흥기금 22,454 (83.23%)		22,562 (72.10%)	20,977 (61.61%)	21,107 (55.28%)	20,223 (44.75%)	
	관광진흥개발기금	501,697 (40.56%)	618,076 (40.70%)	725,372 (43.63%)	706,294 (37.70%)	598,268 (34.60%)	
	국민체육진흥기금	1,166,138 (50.87%)	1,349,863 (53.00%)	1,423,810 (54.32%)	1,535,438 (55.67%)	1,532,996 (48.43%)	

융자사업비 지출의 경우, 규모 측면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1년,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22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임

지출총액 대비 융자사업비 지출의 비중 관점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1년, 국민체육진 흥기금은 2022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표 3-50> 최근 5년간 기금별 융자사업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문화예술진흥기금	8,500 (1.81%)	19,000 (3.49%)	24,000 (4.58%)	23,000 (4.39%)	18,000 (3.34%)	
	영화발전기금	-	-	-	-	ı	
융자	지역신문발전기금		-	-	1		
사업비 지출	언론진흥기금	-	-	-	-	-	
	관광진흥개발기금	495,000 (40.02%)	550,000 (36.22%)	599,000 (36.03%)	659,000 (35.18%)	459,100 (26.55%)	
	국민체육진흥기금	41,220 (1.80%)	76,220 (2.99%)	119,220 (4.55%)	184,000 (6.67%)	80,000 (2.53%)	

기금운영비의 경우, 규모 측면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증

가세이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은 감소세이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체됨

지출총액 대비 비중 측면에서는 영화발전기금만이 증가세이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감소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020년 저점을 찍고 다시 증가하고 있음

<표 3-51> 최근 5년간 기금별 기금운영비 지출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문화예술진흥기금	20,654 (4.41%)	21,487 (3.95%)	21,565 (4.12%)	22,374 (4.27%)	23,282 (4.31%)	
	영화발전기금	10,835 (4.09%)	11,587 (4.30%)	11,741 (3.85%)	12,176 (6.07%)	12,142 (5.28%)	
기금 운영비	지역신문발전기금	593 (6.86%)	602 (5.76%)	592 (5.94%)	575 (6.04%)	562 (5.72%)	
지출	언론진흥기금	235 (0.87%)	229 (0.73%)	216 (0.63%)	213 (0.56%)	191 (0.42%)	
	관광진흥개발기금	625 (0.05%)	635 (0.04%)	635 (0.04%)	641 (0.03%)	628 (0.03%)	
	국민체육진흥기금	29,244 (1.28%)	29,115 (1.14%)	29,640 (1.13%)	31,101 (1.13%)	31,763 (1.00%)	

기금 간 거래의 경우, 규모 측면과 지출총액 대비 비중 측면에서 모든 기금에서 변동이 크게 발생함

<표 3-52> 최근 5년간 기금별 기금 간 거래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기금간 거래	문화예술진흥기금	5,000 (1.07)	5,000 (0.92)	7,800 (1.49)	3,000 (0.57)	17,895 (3.32)	
	영화발전기금	75,000 (28.31%)	-	-	1,040 (0.52%)	80,984 (35.21%)	
	지역신문발전기금	-	-	-	-	-	
	언론진흥기금	· 		-	-	6,000 (13.28%)	
	관광진흥개발기금	66,262 (5.36%)	66,306 (4.37%)	23,155 (1.39%)	371,016 (19.80%)	497,053 (28.74%)	
	국민체육진흥기금	620,000 (27.05%)	620,000 (24.35%)	621,571 (23.71%)	670,136 (24.30%)	714,600 (22.58%)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규모 측면에서 언론진흥기금의 여유자금 운용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22년 잠시 감소했다가 2023년 크게 상승했으며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경우 감소세에 있는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지출총액 대비 여유자금 운용의 비중 관점에서는 모든 기금들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표 3-53> 최근 5년간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문화예술진흥기금	191,802 (40.94%)	249,628 (45.90%)	193,043 (36.85%)	133,019 (25.39%)	113,875 (21.10%)	
	영화발전기금	113,115 (42.69%)	167,979 (62.33%)	188,238 (61.67%)	89,391 (44.60%)	63,946 (27.80%)	
여유자금	지역신문발전기금	906 (10.48%)	1,196 (11.45%)	669 (6.72%)	686 (7.20%)	1,019 (10.36%)	
운용	언론진흥기금	4,289 (15.90%)	8,502 (27.17%)	12,855 (37.76%)	16,864 (44.17%)	18,779 (41.55%)	
	관광진흥개발기금	173,427 (14.02%)	283,503 (18.67%)	314,301 (18.91%)	136,406 (7.28%)	174,213 (10.07%)	
	국민체육진흥기금	435,840 (19.01%)	471,491 (18.51%)	427,018 (16.29%)	337,629 (12.24%)	805,812 (25.46%)	

2. 안정성 분석

1) 수입·지출의 재구성

독립적인 회계실체로서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행 수입·지출 분류 대신 새로운 수입·지출 구분 기준을 정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수입·지출 분류체계는 기금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지 않음
- 현금 유입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revenue)인지 부채의 증가인지 등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정부내부수입은 전입금, 예탁원금 회수, 예수금, 예탁이자 수입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정부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것 말고는 그 거래의 성격이 모두 달라 기금의 재정구조를 파악하는데 혼란을 야기함(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

참고자료

IMF의 국가재정통계편람 2001(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 독립된 회계실체로서 개별 기금의 재정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IMF의 국가재정통계편람 2001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
- IMF의 국가재정통계편람 2001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일체인 수익(revenue)과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일체인 비용(expense)의 차액인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로 정부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냄

감사원 감사연구원의 신기금수지(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

- 감사원 감사연구원(2015)의 「사업성 기금의 수입·지출 분석과 재정위험」 보고서에서는 IMF의 국가재정통 계편람 2001을 참조하여 신기금수지를 도입함
- 해당 연구에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 순수하게 순자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과 비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금수지를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감사원 감사연구원의 신기금수지를 2019년부터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예산에 대입하여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하려고 함

- 수입은 자체수입, 자산회수, 차입금, 전입금으로 구분하며, 지출은 경상사업비, 융자사업비, 기금운 영비, 차입금 이자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자산운용, 전출금으로 구분함

수입의 기존분류의 경우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 기타(융자원금 회수)로 구분되지 만 신규분류에 따르면 정부내부수입에서 예탁원금회수는 자산회수로 분류되며, 예수금은 차 입금, 예탁이자수입은 자체수입으로 분류됨

- 예탁원금 회수는 순자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동이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자산회수로 구분
- 예수금의 경우, 부채의 증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차입금으로 구분함
- 예탁이자 수입의 경우, 순자산의 증가를 의미하기에 자체수입으로 구분함

<표 3-54> 수입 재구성

	기존 구분	신규 구분			
	기타민간이자수입	자체수입			
	융자사업 이자수입	자체수입			
	토지 및 건물대여료	자체수입			
	기타재산수입	자체수입			
	민간출연금	자체수입			
자체수입	법정부담금	자체수입			
	입장료수입	자체수입			
	경상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자체수입			
	기타잡수입	자체수입			
	기타영업외잡수입	자체수입			
	전입금	전입금			
정부내부	예탁원금회수	자산회수			
수입	예수금	차입금			
	예탁이자 수입	자체수입			
	여유자금 회수	자산회수			
	융자원금 회수	자산회수			

지출의 경우, 경상사업비, 융자사업비, 기금운영비는 동일하지만 기금 간 거래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수원금상환을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예수이자상환을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구분 하였고 공자기금 예탁금과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자산운용으로 구분함

<표 3-55> 지출 재구성

	기존	구분	U2 2H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신규 구분
	- 경상시	사업비	경상사업비
	용자사	사업비	융자사업비
	기금은	<u> </u> 온영비	기금운영비
	공공자금 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_1	예수원리금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차입금 원금상환
기금간거래		전출금	전출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자산운용
	여유자	금 운용	자산운용

(문화예술진흥기금) 재구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지출의 내역은 <표 3-56>과 같음

- 수입총액에서 자체수입에 대한 비중은 2019년 13.58%에서 2023년 11.41%로 서서히 감소함
- 자산회수의 경우 2021년 190,225백만 원(36.31%)으로 고점을 찍고 2023년 104,186백만 원(19.31%)로 감소함
- 수입총액에서 전입금의 비중이 2019년 65.22%에서 2021년 51.05%로 줄어들다가 2023년 69.29%로 크게 상승하였음
- 지출 총액에서 경상사업비의 규모와 비중은 2019년 242,577백만 원(51.77%)에서 2023년 366,585백만 원(67.93%)으로 증가추세임
- 융자사업비의 경우 2021년 24,000백만 원(4.58%)으로 고점을 찍고 2023년 18,000백만 원으로 감소세임
- 기금운영비의 경우 2019년 20,654백만 원(4.41%)에서 2023년 23,282백만 원(4.31%)로 규모 면에서 증가했으나 비중 면에서는 감소함
- 자산운용은 2020년 249,628백만 원(45.90%)으로 고점을 찍고 2023년 113,875백만 원 (21.10%)로 감소함
- 전출금의 경우 2021년 7,800백만 원에서 2022년 3,000백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17,895백만 원으로 크게 증가함

<표 3-56> 재구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수입·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자체	수입	63,631 (13.58%)	66,079 (12.15%)	66,213 (12.64%)	56,419 (10.77%)	61,555 (11.41%)	
		합계	99,341 (21.20%)	184,507 (33.92%)	190,225 (36.31%)	166,700 (31.81%)	104,186 (19.31%)	
	자산	융자회수	ı	ı	-	4,640 (0.89%)	17,888 (3.31%)	
수입	회수	여유자금 회수	99,341 (21.20%)	184,507 (33.92%)	190,225 (36.31%)	162,060 (30.93%)	86,298 (15.99)	
		예탁원금 회수	-	-	-	-	-	
	차입	입금	-	-	-	-	-	
	전입	입금	305,561 (65.22%)	293,324 (53.93%)	267,464 (51.05%)	300,868 (57.42%)	373,896 (69.29%)	
	합계		468,533 (100.00%)	543,910 (100.00%)	523,902 (100.00%)	523,987 (100.00%)	539,637 (100.00%)	
	경상시	사업비	242,577 (51.77%)	248,795 (45.74%)	277,494 (52.97%)	342,594 (65.38%)	366,585 (67.93%)	
	융자사업비		8,500 (1.81%)	19,000 (3.49%)	24,000 (4.58%)	23,000 (4.39%)	18,000 (3.34%)	
	기금은	운영비	20,654 (4.41%)	21,487 (3.95%)	21,565 (4.12%)	22,374 (4.27%)	23,282 (4.31%)	
	차입금 (이자상환	ı	ı	-	-	-	
	차입금 :	원금상환	-	-	_	-	-	
지출		합계	191,802 (40.94%)	249,628 (45.90%)	193,043 (36.85%)	133,019 (25.39%)	113,875 (21.10%)	
	자산 운용	예탁금	-	-	-	-	-	
		여유자금 운용	191,802 (40.94%)	249,628 (45.90%)	193,043 (36.85%)	133,019 (25.39%)	113,875 (21.10%)	
	전출	불금	5,000 (1.07%)	5,000 (0.92%)	7,800 (1.49%)	3,000 (0.57%)	17,895 (3.32%)	
	합	계	468,533 (100.00%)	543,910 (100.00%)	523,902 (100.00%)	523,987 (100.00%)	539,637 (100.00%)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영화발전기금) 재구성된 영화발전기금의 수입·지출의 내역은 <표 3-57>과 같음 <표 3-57> 재구성된 영화발전기금의 수입·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자체	수입	59,666 (22.52%)	62,399 (23.15%)	62,266 (20.40%)	48,660 (24.28%)	60,625 (26.36%)	
		합계	205,284 (77.48%)	207,115 (76.85%)	242,979 (79.60%)	71.787 (35.81%)	89,391 (38.86%)	
		융자회수	-	-	-	-	-	
٨٥١	자산 회수	여유자금 회수	185,284 (69.93 %)	113,115 (41.97%)	167,979 (55.03%)	71.787 (35.81%)	89,391 (38.86%)	
수입		예탁원금 회수	20,000 (7.55%)	94,000 (34.88%)	75,000 (24.57%)	-	-	
	차입	입금	-	-	-	80,000 (39.91%)	-	
	전입	입금	-	-	-	-	80,000 (34.78%)	
	합계		264,950 (100.00%)	269,514 (100.00%)	305,245 (100.00%)	200,447 (100.00%)	230,016 (100.00%)	
	경상사업비		66,000 (24.91%)	89,948 (33.37%)	105,266 (34.49%)	97,840 (48.81%)	72,944 (31.71%)	
	융자사업비		_	-	_	-	-	
	기금운영비		10,835 (4.09%)	11,587 (4.30%)	11,741 (3.85%)	12,176 (6.07%)	12,142 (5.28%)	
	차입금 (차입금 이자상환		-	-	1,040 (0.52%)	984 (0.43%)	
지출	차입금 1	원금상환	-	-	-	-	80,000 (34.78%)	
시크		합계	188,115 (71.00%)	167,979 (62.33%)	188,238 (61.67%)	89,391 (44.60%)	63,946 (27.80%)	
	자산 운용	예탁금	75,000 (28.31%)	-	-	-	-	
		여유자금 운용	113,115 (42.69%)	167,979 (62.33%)	188,238 (61.67%)	89,391 (44.60%)	63,946 (27.80%)	
	전결	音	-	-	-	-	-	
	합	계	264,950 (100.00%)	269,514 (100.00%)	305,245 (100.00%)	200,447 (100.00%)	230,016 (100.00%)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 수입총액에서 자체수입에 대한 비중은 2019년 22.52%에서 증가와 하락을 반복하다 2023년 26.36%로 증가함
- 자산회수의 경우 2021년 242,979백만 원(79.60%)으로 고점을 찍고 2023년 89,391백만 원 (38.86%)로 크게 감소함
- 여유자금 회수 자체도 감소했지만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예탁원금을 회수하였기 때문
- 차입금은 2022년 80,000백만 원(39.91%), 전입금은 2023년 80,000백만 원(34.78%)으로 단일성으로 유입됨
- 지출 총액에서 경상사업비의 규모와 비중은 2019년 66,000백만 원(24.91%)에서 2021년 105,266백만 원(34.49%)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72,944백만 원(31.71%)로 감소함
- 기금운영비의 경우 2019년 10,835백만 원(4.09%)에서 2023년 12,142백만 원(5.28%)으로 규모 면에서 증가했으나 비중 면에서는 감소
- 차입금 이자상환의 경우 2022년 1,040백만 원, 2023년 984백만 원으로 두 차례 상환함
- 차입금 원금상환의 경우 2023년 80,000백만 원(34,78%) 상환함
- 자산운용의 경우 2019년 188,115백만 원(71.00%)에서 2023년 63,946백만 원(27.80%)로 크게 감소함

(지역신문발전기금) 재구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수입·지출의 내역은 <표 3-58>과 같음

- 수입총액에서 자체수입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0백만 원으로 동일함
- 자산회수의 경우 2020년 2,288백만 원(21.90%)으로 고점을 찍고 2021년부터 수입총액 대비 11%로 정체됨
- 전입금은 2019년 8,000백만 원에서 2021년 8,700백만 원, 2022년 8,300백만 원, 2023년 8,500백만 원으로 변동됨
- 지출총액 대비 경상사업비의 비중은 80%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출 대부분이 사업에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금운영비의 경우 대체적으로 5~6%대로 정체되어 있음
- 자산운용의 경우 2019년 906백만 원(10.48%)에서 2021년 669백만 원(6.72%)로 감소했다가 2023년 10,19백만 원(10.36%)로 증가함

<표 3-58> 재구성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수입·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자체	수입	160 (1.85%)	160 (1.53%)	160 (1.61%)	160 (1.68%)	160 (1.63%)	
		합계	489 (5.65%)	2,288 (21.90%)	1,100 (11.04%)	1,065 (11.18%)	1172 (11.92%)	
	자산	융자회수	-	-	-	-	-	
ᄉᅁ	회수	여유자금 회수	489 (5.65%)	2,288 (21.90%)	1,100 (11.04%)	1,065 (11.18%)	1172 (11.92%)	
수입		예탁원금 회수	-	-	-	-	-	
	차입	입금	_	_	-	-	-	
	전입	입금	8,000 (92.50%)	8,000 (76.57%)	8,700 (87.35%)	8,300 (87.14%)	8,500 (86.45%)	
	합계		8,649 (100.00%)	10,448 (100.00%)	9,960 (100.00%)	9,525 (100.00%)	9,832 (100.00%)	
	경상사업비		7,150 (82.67%)	8,650 (82.79%)	8,699 (87.34%)	8,264 (86.76%)	8,251 (83.92%)	
	융자사업비		-	-	-	-	-	
	기금운영비		593 (6.86%)	602 (5.76%)	592 (5.94%)	575 (6.04%)	562 (5.72%)	
	차입금 (이자상환	-	_	-	-	-	
	차입금 -	원금상환	-	-	-	-	-	
지출		합계	906 (10.48%)	1,196 (11.45%)	669 (6.72%)	686 (7.20%)	1,019 (10.36%)	
	자산 운용	예탁금	-	-	-	-	-	
		여유자금 운용	906 (10.48%)	1,196 (11.45%)	669 (6.72%)	686 (7.20%)	1,019 (10.36%)	
	전출	출금	_	_	_	_	-	
	합	계	8,649 (100.00%)	10,448 (100.00%)	9,960 (100.00%)	9,525 (100.00%)	9,832 (100.00%)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언론진흥기금) 재구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수입·지출의 내역은 <표 3-59>와 같음

- 수입총액에서 자체수입 비중은 2019년 94.07%에서 2023년 62.68%까지 하락하였음
- 반면에 자산회수 비중은 5.93%에서 37.32%로 증가하였음

<표 3-59> 재구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수입·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자체	수입	25,378 (94.07%)	25,378 (81.10%)	25,546 (75.03%)	25,329 (66.33%)	28,329 (62.68%)		
	T111	합계	1,600 (5.93%)	5,915 (18.90%)	8,502 (24.97%)	12,855 (33.67%)	16,864 (37.32%)		
		융자회수	-	-	-	-	-		
수입	자산 회수	여유자금 회수	1,600 (5.93%)	5,915 (18.90%)	8,502 (24.97%)	12,855 (33.67%)	16,864 (37.32%)		
		예탁원금 회수	-	-	-	-	-		
	차입	입금	-	-	-	-	-		
	전입	입금	-	-	-	-	-		
	합계		26,978 (100.00%)	31,293 (100.00%)	34,048 (100.00%)	38,184 (100.00%)	45,193 (100.00%)		
	경상사업비		22,454 (83.23%)	22,562 (72.10%)	20,977 (61.61%)	21,107 (55.28%)	20,223 (44.75%)		
	융자사업비		-	-	-	-	-		
	기금운영비		235 (0.87%)	229 (0.73%)	216 (0.63%)	213 (0.56%)	191 (0.42%)		
	차입금	이자상환	-	-	-	-	-		
	차입금	원금상환	-	_	-	_	_		
지출		합계	4,289 (15.90%)	8,502 (27.17%)	12,855 (37.76%)	16,864 (44.17%)	18,779 (41.55%)		
	자산 운용	예탁금	-	-	-	-	-		
	20	여유자금 운용	4,289 (15.90%)	8,502 (27.17%)	12,855 (37.76%)	16,864 (44.17%)	18,779 (41.55%)		
	전출	불금	-	-	-	-	6,000 (13.28%)		
	합	계	26,978 (100.00%)	31,293 (100.00%)	34,048 (100.00%)	38,184 (100.00%)	45,193 (100.00%)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 지출총액에서 경상사업비 규모는 2019년 22,452백만 원에서 2023년 20,223백만 원으로 약간 감소하였음
- 기금운영비의 경우 1% 미만으로 정체되어 있음
- 자산운용의 경우 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90%에서 41.55%까지 증가함
- 2023년에 6,000백만 원의 전출금이 발생함

(관광진흥개발기금) 재구성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지출의 내역은 <표 3-60>과 같음

<표 3-60> 재구성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수입·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자체	 수입	711,007 (57.48%)	714,308 (47.03%)	558,910 (33.62%)	461,607 (24.64%)	622,983 (36.03%)	
		합계	495,563 (40.06%)	773,771 (50.96%)	765,803 (46.06%)	600,800 (32.07%)	788,903 (45.62%)	
	자산	융자회수	310,605 (25.11%)	600,344 (39.53%)	482,300 (29.01%)	590,800 (31.54%)	652,497 (37.73%)	
수입	회수	여유자금 회수	184,958 (14.95%)	173,427 (11.42%)	283,503 (17.05%)	10,000 (0.53%)	136,406 (7.89%)	
		예탁원금 회수	-	-	-	-	-	
	차입	입금	-	-	300,000 (18.05%)	800,000 (42.70%)	300,000 (17.35%)	
	전입	입금	30,441 (2.46%)	30,441 (2.00%)	37,750 (2.27%)	10,950 (0.58%)	17,376 (1.00%)	
	합계		1,237,011 (100.00%)	1,518,520 (100.00%)	1,662,463 (100.00%)	1,873,357 (100.00%)	1,729,262 (100.00%)	
	경상사업비		501,697 (40.56%)	618,076 (40.70%)	725,372 (43.63%)	706,294 (37.70%)	598,268 (34.60%)	
	융자사업비		495,000 (40.02%)	550,000 (36.22%)	599,000 (36.03%)	659,000 (35.18%)	459,100 (26.55%)	
	기금운영비		625 (0.05%)	635 (0.04%)	635 (0.04%)	641 (0.03%)	628 (0.03%)	
	차입금 이자상환		16,262 (1.31%)	16,306 (1.07%)	23,155 (1.39%)	52,655 (2.81%)	53,793 (3.11%)	
지출	차입금 :	원금상환	-	-	-	318,361 (16.99%)	443,260 (25.63%)	
		합계	173,427 (14.02%)	283,503 (18.67%)	314,301 (18.91%)	136,406 (7.28%)	174,213 (10.07%)	
	자산 운용	예탁금	-	-	-	-	-	
		여유자금 운용	173,427 (14.02%)	283,503 (18.67%)	314,301 (18.91%)	136,406 (7.28%)	174,213 (10.07%)	
	전칅	불금	50,000 (4.04%)	50,000 (3.29%)	-	-	-	
	합	 계	1,237,011 (100.00%)	1,518,520 (100.00%)	1,662,463 (100.00%)	1,873,357 (100.00%)	1,729,262 (100.00%)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 수입총액에서 자체수입 비중은 2019년 57.58%에서 2022년 24.64%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36.03%로 다소 증가함
- 자산회수의 경우 2019년 49.06%에서 2020년 50.96%로 증가하였다가 2022년 32.07%로 하락하고 그 후 2023년 45.62%로 회복됨
- 이를 분해해보면 융자원금 회수의 경우 2019년 310,605백만 원(25.11%)에서 2023년 652,497백만 원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여유자금의 회수의 경우 2021년 283,503백만 원(17.05%)을 찍고 2022년 10,000백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2023년 136,406백만 원으로 증가함
- 차입금의 경우 2021년 300,000백만 원(18.05%), 2022년 800,000백만 원(42,70%), 2023년 300,000백만 원(17.35%) 발생함
- 전입금의 경우 2019년 30,441백만 원(2.46%)에서 2023년 17,376백만 원(1.00%)으로 감소함
- 지출총액에서 경상사업비의 규모와 비중은 2019년 501,697백만 원(40.56%)에서 2021년 725,372백만 원(43.63%)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598,268백만 원(34.60%)으로 감소함
- 융자사업비의 경우 2019년 495,000백만 원(40.02%)에서 2022년 659,000백만 원(35.18%) 으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459,100백만 원(26.55%)로 감소함
- 기금운영비의 경우 600백만 원대로 정체됨
- 차입금 이자상환은 2019년 16,262백만 원(1.31%)에서 2023년 53,793백만 원(3.11%)으로 크게 증가함
- 차입금 원금 상환의 경우 2022년 318,361백만 원(16.99%), 2023년 443,260백만 원 (25.63%) 두 차례 상환함
- 자산운용은 2021년 314,301백만 원(18.91%)로 고점을 찍고 2022년 136,406백만 원 (7.28%)로 감소했다가 2023년 174,213백만 원으로 증가함
- 전출금은 2019년 50,000백만 원, 2020년 50,000백만 원 두 차례 전출됨

(국민체육진흥기금) 재구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지출의 내역은 <표 3-61>과 같음

- 수입총액에서 자체수입 비중은 2019년 72.06%에서 2022년 61.63%로 감소했다가 2023년 63.68%로 다소 증가함
- 자산회수의 경우 2019년 565,180백만 원(24.65%)에서 2023년 1,058,289백만 원(33.44%) 로 크게 증가함
- 이를 분해해보면 융자회수의 경우 2019년 0.57%에서 2.16%로 증가하였고, 여유자금의 회수의 경우 6.63%에서 2020년 17.11%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3년 11.69%로 감소했으며 예탁원금 회수의 경우 2020년 10.60%로 감소했다가 2023년 19.59%로 증가함
- 전입금은 2019년 75,423백만 원(3.29%)에서 2023년 91,450백만 원(2.89%)으로 규모 면에

서는 증가하였으나 수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 지출총액에서 경상사업비는 2019년 1,166,138백만 원(50.87%)에서 2023년 1,532,996백만 원(48.43%)으로 규모 면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표 3-61> 재구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자체	수입	1,651,839 (72.06%)	1,742,707 (68.43%)	1,684,592 (64.49%)	1,699,834 (61.63%)	2,015,432 (63.68%)		
		합계	565,180 (24.65%)	726,066 (28.51%)	848,102 (32.35%)	964,656 (34.97%)	1,058,289 (33.44%)		
	자산	융자회수	13,180 (0.57%)	20,226 (0.79%)	10,343 (0.39%)	44,656 (1.62%)	68,289 (2.16%)		
수입	회수	여유자금 회수	152,000 (6.63%)	435,840 (17.11%)	430,739 (16.43%)	300,000 (10.88%)	370,000 (11.69%)		
		예탁원금 회수	400,000 (17.45%)	270,000 (10.60%)	407,020 (15.53%)	620,000 (22.48%)	620,000 (19.59%)		
	차입	입금	-	-	-	-	-		
	전입	입금	75,423 (3.29%)	77,916 (3.06%)	88,565 (3.38%)	93,814 (3.40%)	91,450 (2.89%)		
	합계		2,292,442 (100.00%)	2,546,689 (100.00%)	2,621,259 (100.00%)	2,758,304 (100.00%)	3,165,171 (100.00%)		
	경상사업비		1,166,138 (50.87%)	1,349,863 (53.00%)	1,423,810 (54.32%)	1,535,438 (55.67%)	1,532,996 (48.43%)		
	융자사업비		41,220 (1.80%)	76,220 (2.99%)	119,220 (4.55%)	184,000 (6.67%)	80,000 (2.53%)		
	기금운영비		29,244 (1.28%)	29,115 (1.14%)	29,640 (1.13%)	31,101 (1.13%)	31,763 (1.00%)		
	차입금 (기자상환	-	-	-	-	-		
	차입금 4	원금상환	-	-	-	-	-		
지출		합계	955,840 (41.70%)	991,491 (38.93%)	947,018 (36.13%)	897,629 (32.54%)	1,405,812 (44.42%)		
	자산 운용	예탁금	520,000 (22.68%)	520,000 (20.42%)	520,000 (19.84%)	560,000 (20.30%)	600,000 (18.96%)		
		여유자금 운용	435,840 (19.01%)	471,491 (18.51%)	427,018 (16.29%)	337,629 (12.24%)	805,812 (25.46%)		
	전결	 탈금	100,000 (4.36%)	100,000 (3.93%)	101,571 (3.87%)	110,136 (3.99%)	114,600 (3.62%)		
	합	 계	2,292,442 (100.00%)	2,546,689 (100.00%)	2,621,259 (100.00%)	2,758,304 (100.00%)	3,165,171 (100.00%)		

주: 당초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설명자료」

- 융자사업비의 경우 2019년 41,220백만 원(1.80%)에서 2022년 184,000백만 원(6.67%)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23년에는 80,000백만 원(2.53%)으로 크게 감소함
- 기금 운영비의 경우 2019년 29.244백만 원에서 2023년 31.763백만 원으로 규모 면에서는 증가했으나 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내외로 정체함
- 자산운용은 2019년 955,840백만 원(41.70%)에서 2022년 897,629백만 원(32.54%)로 감소 하다가 2023년 1,405,812백만 원(44.42%)로 증가함
- 이를 분해하면 예탁금은 지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22.68%에서 2023년 18.96% 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유자금 운용의 경우 2019년 19.01%에서 2022년 12.24%로 감소하다 가 2023년 25.46%로 크게 증가함
- 전출금의 경우 2019년 100,000백만 원(4.36%)에서 2023년 114,600백만 원(3.62%)로 규모 상으로는 증가했으나 비중 상으로는 감소함

2) 기금수지와 기금수지 분해를 통한 재정위험 분석

▮ 기금수지

기금수지는 실질적인 자체수입(revenue)과 실질적인 비용(expense)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 함(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

-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실질적인 비용에는 경상사업비, 기금운영비, 차입금 이자상환이 속함

<표 3-62> 기금수지의 정의 기금수지 자체수입 - (경상사업비 + 기금운영비 + 차입금 이자상환)

출처 : 감사원 감사연구원(2015)

해당 기금수지로 분석한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발전기금은 5년 간 계속 적인 적자 상태이며, 언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5년 간 계속적인 흑자상태이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흑자이다가 2021년부터 적자로 접어들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2019년 -199,600백만 원에서 2023년 -328, 312백만 원으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으며 비용 대비 자체수입 비중도 24.17%에서 15.79%로 감소하였음
-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2019년 -17.169백만 원에서 2022년 -62.396백만 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 되다가 2023년 -25,445백만 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2019년 -7,583백만 원에서 2021년 -9,131백만 원으로 적자 폭이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적자 폭이 조금 줄어들었으며, 비용 대비 자체수입이 2% 남짓으로 매우

작음

- 언론진흥기금은 2019년 2,689백만 원에서 2023년 7,915백만 원으로 흑자 폭이 확대되었으며, 비용 대비 자체수입 비중 역시 2019년 111.85%에서 2023년 138.77%로 27% 가량 증가함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2019년 192,423백만 원에서 2020년 79,291백만 원으로 흑자폭이 감소하더니 2021년 -190,252백만 원으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 -297,989백만 원으로 적자폭이 커지다 2023년 -29.706백만 원으로 적자폭이 줄어듬
- 비용 대비 자체수입의 비중으로 보았을 때, 2019년 137.11%로 비용 대비 37.11%가 컸지만, 2022년에는 60.77%로 비용 대비 40%가 모자라게 되었으며 2023년에는 95.45%로 자체수입과 비용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함
- 국민체육기금의 경우 2019년 456,457백만 원에서 2022년 133,295백만 원으로 흑자폭이 감소 하다가 2023년 450,673백만 원으로 흑자폭이 증가함
- 비용 대비 자체수입 비중 관점에서는 2019년 138.19%로 비용 대비 38.19% 컸지만 2022년 108.51%로 비용과 자체수입이 거의 동일해지다가 2023년 128.80%로 자체수입이 비용보다 29% 커졌음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199,600 -204,203 (24.17%) (24.45%)		-232,846 (22.14%)	-308,549 (15.46%)	-328,312 (15.79%)
	영화발전기금	-17,169 -39,136 (77.65%) (61.46%)		-54,030 (53.82%)	-62,396 (43.82%)	-25,445 (70.44%)
기금수지	지역신문발전기금	-7,583 (2.07%)	-9,092 (1.73%)	-9,131 (1.72%)	-8,679 (1.81%)	-8,653 (1.82%)
(자체수 입/비용)	언론진흥기금	2,689 (111.85%)	2,587 (111.35%)	4,353 (120.54%)	4,009 (118.80%)	7,915 (138.77%)
	관광진흥개발기금	192,423 (137.11%)	79,291 (112.49%)	-190,252 (74.60%)	-297,983 (60.77%)	-29,706 (95.45%)
	국민체육진흥기금	456,457 (138.19%)	363,729 (126.38%)	231,142 (115.90%)	133,295 (108.51%)	450,673 (128.80%)

<표 3-63> 기금수지 결과

▮ 기금수지 분해를 통한 재정위험 분석

기금수지를 순전입금, 순융자원금, 순예수금, 순예탁원금 회수, 순차입금, 순여유자금 회수로 분해하여 기금수지의 흑자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적자금액이 어떻게 조달되는지 분석함(감 사원 감사연구원, 2015)

- 수입과 지출은 같다는 항등식에서 기금수지를 좌변으로, 나머지 자금을 우변으로 이동시키면 기금 수지의 적자폭은 순전입금, 순융자원금 회수, 순예수금, 순예탁원금 회수, 순차입금, 순여유자금 회수로 분해될 수 있음 기금수지를 분해함으로써 경상사업비 중심의 기금수지를 통한 분석과는 다른, 융자사업을 포함한 전체 재정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함

- 순융자원금 회수(융자원금 회수 융자사업비) 항목을 통해 융자원금 회수가 적자인지 흑자인지를 알 수 있음
- 융자원금 회수 적자가 계속되면 융자사업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신용리스크가 증대될 우려가 있음(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
- 특히 기금수지가 적자인데 순융자금 회수도 적자이면 기금 외부로부터 재정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표 3-64> 기금수지 분해

수입	=	지출
자체수입 + 자산회수 + 차입금+ 전입금	=	경상사업비 + 융자사업비 + 기금운영비 + 차입금 이자상환 + 차입금 원금 상환 + 자산운용 + 전출금
	좌변 우변 이동	
자체수입 - 경상사업비 - 기금운영비 - 차입금 이자상환	=	융자사업비 + 차입금 원금 상환 + 자산운용(예탁금 + 여유자금 운용) + 전출금 - 자산회수(예탁원금 회수 + 융자원금 회수 + 여유자금 회수) - 차입금 - 전입금
기금수지	=	(융자사업비-융자원금 회수) + (예탁금 - 예탁원금 회수) + (전출금 - 전입금) + (여유자금 운용 - 여유자금 회수) + (차입금 원금상환 - 차입금)
	× (-)	
- 기금수지	=	(융자원금 회수 - 융자사업비) + (예탁원금 회수 - 예탁금) + (전입금 - 전출금) + (여유자금 회수 - 여유자금 운용) + (차입금 - 차입금 원금상환)
- 기금수지	=	자금조달 합계 (순융자금 회수 + 순예탁원금 회수 + 순전입금 + 순여유자금 회수 + 순차입금)

출처: 감사원 감사연구원(2015)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수지 적자폭이 커질수록 순전입금이 증가하고, 순여유자금 운용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음

- 순전입금은 2019년 300,561백만 원에서 2021년 259,664백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356,001백만 원으로 증가함
- 순융자금 회수의 경우 2021년 -24,000백만 원으로 가장 크게 융자금 지출이 증가했다가 2023년 -112백만 원으로 융자사업 지출액과 융자원금 상환액이 거의 동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음

- 순여유자금 회수의 경우, 2019년 -94,461백만 원에서 2022년 29,041백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상태에서 기금수지 적자폭 확대로 여유자금을 회수하여 사용하는 상태로 전환됨을 알 수 있음

2021년 구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비고 기금수지 -199,600 -204,203 -232,846 -308,549 -328,312 순전입금 300,561 288,324 259,664 297,868 356,001 순융자금회수 -8,500 -19.000 -24,000 -18,360 -112 문화예술 순예탁원금회수 0 0 0 0 0 진흥기금 순차입금 0 0 0 0 0 -65,121 순여유자금회수 -92,461 -2.818 29.041 -27,577 204,203 232,846 308,549 자금조달합계 199,600 328,312

<표 3-65> 문화예술진흥기금 기금수지 분해

(영화발전기금) 기금수지 적자폭이 커질수록 예탁원금을 회수하거나 차입금을 회수하거나 순여유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순전입금은 2023년 80,000백만 원 전입됨
- 순예탁원금 회수는 2019년에는 -55,000백만 원으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을 했다면 2020 년과 2021년에는 각각 94,000백만 원, 75,000백만 원 관리기금에서 예탁금을 회수하였음
- 순차입금의 경우 2022년 80,000백만 원을 차입했다가 2023년 80,000백만 원의 차입금을 상환함
- 순여유자금 회수의 경우, 2019년 72,169백만 원의 여유자금을 회수하였다 2020년 54,864백만 원, 20,259백만 원, 17,604백만 원의 여유자금 운용으로 돌아섰지만 2023년 다시 25,445백만 원의 여유자금을 회수함

<표 3-66> 영화발전기금 기금수지 분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기금수지	-17,169	-39,136	-54,030	-62,396	-25,445	
	순전입금	0	0	0	0	80,000	
	순융자금회수	0	0	0	0	0	
영화발전 기금	순예탁원금회수	-55,000	94,000	75,000	0	0	
	순차입금	0	0	0	80,000	-80,000	
	순여유자금회수	72,169	-54,864	-20,259	-17,604	25,445	
	자금조달합계	17,169	39,136	54,741	62,396	25,445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수지 적자를 순전입금 전입과 여유자금 회수로 대응하는 것을 볼수 있음

- 순전입금은 2019년 8,000백만 원에서 2023년 8,500백만 원으로 꾸준히 전입됨
- 순여유자금 회수의 경우, 2019년 417백만 원의 여유자금을 운용하였다 2020년 1,092백만 원, 2021면 431백만 원, 2022년 379백만 원, 2023년 153백만 원의 여유자금 회수로 돌아섬

<표 3-67> 지역신문발전기금 기금수지 분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기금수지	-7,583	-9,092	-9,131	-8,679	-8,653	
	순전입금	8,000	8,000	8,700	8,300	8,500	
	순융자금회수	0	0	0	0	0	
지역신문 발전기금	순예탁원금회수	0	0	0	0	0	
	순차입금	0	0	0	0	0	
	순여유자금회수	-417	1,092	431	379	153	
	자금조달합계	7,583	9,092	9,131	8,679	8,653	

(언론진흥기금) 기금수지 흑자를 전출금과 여유자금 운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순전입금은 2023년 -6,000백만 원으로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전출한 것을 볼 수 있음
- 순여유자금 회수의 경우, 2019년 -2,689백만 원에서 2021년 -4,353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가

2023년 -1,915백만 원으로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3-68> 언론진흥기금 기금수지 분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기금수지	2,689	2,587	4,353	4,009	7,915	
	순전입금	0	0	0	0	-6,000	지역신문 발전기금
언론	순융자금회수	0	0	0	0	0	
진흥 기금	순예탁원금회수	0	0	0	0	0	
<u> </u>	순차입금	0	0	0	0	0	
	순여유자금회수	-2,689	-2,587	-4,353	-4,009	-1,915	
	자금조달합계	-2,689	-2,587	-4,353	-4,009	-7,915	

(관광진흥개발기금) 2019년 기금수지 흑자를 전출금, 융자사업, 여유자금 회수에 사용하였다 가 2021년 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자 전입금, 차입금으로 보전한 것을 볼 수 있음

- 2019년 기금수지가 192,423백만 원의 흑자를 보았고 이를 전출금 19,559백만 원, 융자사업 184,395백만 원으로 사용하였으며 여유자금은 11,531백만 원 회수함
- 2020년 79,291백만 원의 기금수지 흑자를 보았고 19,559백만 원 전출, 여유자금 운용에 110,076백만 원을 사용하고 50,344백만 원 융자원금을 회수함
- 2021년 기금수지가 190,252백만 원 적자로 전환되었는데, 순차입금 300,000백만 원과 순전입금 37,750백만 원으로 대응하는 한편 융자사업으로 116,700백만 원 지출하고 여유자금으로 30,798백만 원 운용하였음
- 2022년 기금수지는 297,983백만 원 적자로 적자폭이 심화되었는데, 이에 순차입금 481,639백만 원, 전입금 10,950백만 원으로 대응하는 한편, 융자사업에 68,200백만 원 지출했으며, 여유자금 운용에 126,406백만 원 지출되었음
- 2023년 기금수지는 29,706백만 원 적자로 적자폭이 개선되었는데, 이는 융자원금이 193,397백 만 원 회수된 것이 주원인임
- 이에 차입금을 143,260백만 원 상환하였으며, 여유자금 운용에 37,807백만 원 사용함

<표 3-69>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수지 분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기금수지	192,423	79,291	-190,252	-297,983	-29,706	
	순전입금	-19,559	-19,559	37,750	10,950	17,376	
관광	순융자금회수	-184,395	50,344	-116,700	-68,200	193,397	
진흥 개발	순예탁원금회수	0	0	0	0	0	
기금	순차입금	0	0	300,000	481,639	-143,260	
	순여유자금회수	11,531	-110,076	-30,798	-126,406	-37,807	
	자금조달합계	-192,423	-79,291	190,252	297,983	29,706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수지 흑자를 전출금, 융자사업, 공자기금 예탁, 여유자금 운용에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2019년 기금수지 흑자 456,457백만 원을 전출금 24,557백만 원, 융자사업 28,040백만 원, 공자기금 예탁에 120,000백만 원, 여유자금 운용에 283,840백만 원 사용함
- 2020년 기금수지 흑자 363,729백만 원을 전출금 22,084백만 원, 융자사업 55,994백만 원, 공자기금 예탁에 250,000백만 원, 여유자금 운용에 35,651백만 원 사용함
- 2021년 기금수지 흑자 231,142백만 원을 전출금 13,006백만 원, 융자사업 108,877백만 원, 예탁금 112,980백만 원에 사용하는 한편, 여유자금은 3,721백만 원 회수함
- 2022년 기금수지 흑자 133,295백만 원을 전출금 16,322백만 원, 융자사업 139,344백만 원, 여유자금 운용에 37,629백만 원 사용하는 한편, 60,000백만 원의 예탁금을 회수함
- 2023년 기금수지 흑자 450,673백만 원을 전출금 23,150백만 원, 융자사업 11,711백만 원, 여유자금 운용에 435,812백만 원 사용하는 한편, 20,000백만 원의 예탁금을 회수함

<표 3-70>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수지 분해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기금수지	456,457	363,729	231,142	133,295	450,673	
	순전입금	-24,577	-22,084	-13,006	-16,322	-23,150	
국민	순융자금회수	-28,040	-55,994	-108,877	-139,344	-11,711	
체육 진흥	순예탁원금회수	-120,000	-250,000	-112,980	60,000	20,000	
기금	순차입금	0	0	0	0	0	
	순여유자금회수	-283,840	-35,651	3,721	-37,629	-435,812	
	자금조달합계	-456,457	-363,729	-231,142	-133,295	-450,673	

제3절

소결

▶ 수입·지출의 재구성 및 분석

독립적인 회계실체로서 기금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연구원의 보고서(2015)에 따라 현행 수입 및 지출 분류를 새롭게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수입·지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3년 기준 자체수입은 총수입 대비 11.41%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인 한편, 지출의 경우 경상사업비가 총지출 대비 67.93%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고 있음

영화발전기금은 2023년 기준 자체수입은 총수입 대비 26.36%이며 시간에 지남에 따라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부담금이 폐지될 경우 5% 미만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며, 경상사 업비는 총지출 대비 31.71%로 코로나 19 팬데믹 시절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2023년 기준 자체수입은 총수입 대비 1.63%이며 경상사업비 비중은 총 지출 대비 83.92%임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2023년 기준 자체수입은 총수입 대비 62.68%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자산회수의 증가에 기인한 것인 한편, 지출 역시 경상사업비가 총지출 대비 44.75%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는 자산운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23년 기준 자체수입이 총수입 대비 36.03%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한편, 지출의 경우도 경상사업비가 총지출 대비 34.60%, 융자사업비가 26.55%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양상인데 이는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기인한 것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23년 기준 자체수입은 총수입 대비 63.68%로 소폭 감소했지만 이는 자산회수의 증가로 기인한 것이며 지출의 경우, 경상사업비의 경우 총지출 대비 48.43%로 비중은 소폭 감소했으나 절대액수는 증가하였으며 이는 역시 자산운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간 재정격차

감사원 감사연구원의 보고서(2015)는 자체수입과 실질적인 비용(경상사업비, 기금운영비, 차입금 이자상환의 합)을 차감한 값을 통해 기금수지를 분석함

- 기금수지를 통해 각 기금의 자체수입으로 실질비용을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기금의 재정자립도와 안정성을 추정할 수 있는 동시에 이를 비교함에 따라서 기금 간 재정격차를 파악할 수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수지가 2019년 -199,600백만 원에서 2023년 -328.312백 만 원으로 악화됨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기금수지가 2019년 -17,160백만 원에서 2022년 -62,396백만 원으로 악화되었다가 2023년 -25,445백만 원으로 개선됨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2019년 -7,583백만 원에서 2023년 -8,653백만 원으로 기금수지 가 소폭 악화됨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2019년 2,689백만 원에서 2023년 7,915백만 원으로 기금수지가 크게 개선됨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2019년 192,423백만 원에서 2022년 -297,983백만 원으로 대목 악화되었다가 2023년 -29,706백만 원으로 개선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2019년 456,457백만 원에서 2022년 133,295백만 원으로 악화 되었다가 2023년 450,673백만 원으로 개선됨

이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기금의 재정자립도와 안정성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그리고 부담금 폐지로 인해 자체재원이 거의 사라지 게 되는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재원의 안정성만을 놓고 봤을 때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할수 있음

반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은 지속가능성이 높고 재무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됨

자체수입/실질비용의 관점(2023년 기준)에서 보았을 때 지역신문발전기금(1.82%), 문화예술진흥기금(15.79%), 영화발전기금(70.44%), 관광진흥개발기금(95.45%), 국민체육진흥기금(128.80%), 언론진흥기금(138.77%) 순으로 기금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금 간 재정격차를 파악할 수 있음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실질비용을 약 15% 정도만을 대응할 수 있는 반면, 국민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실질비용을 대응하고도 28.8%의 자체수입이 남는다고 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기금수지 분해를 통한 안정성 분석

기금수지를 순전입금, 순융자원금, 순예수금, 순예탁원금 회수, 순차입금, 순여유자금 회수로 분해함을 통해 전체 재정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기금수지의 적자 혹은 흑자금액이 어떻게 조달 혹은 사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감사원 감사연구원, 2015)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수지의 적자폭이 커질수록 순전입금이 증가하고 순여유자금 회수가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기금의 적자를 여유자금와 전입금을 통해 보전하고 있음을 나타냄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기금수지 적자폭이 증가할수록 여유자금 회수, 예탁원금 회수, 차입금, 전입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적자에 대응해 왔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곧 기금이 고갈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기금수지 적자를 순전입금과 여유자금 회수를 통해 대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역시 기금의 지속불가능성을 나타냄

언론진흥기금은 기금수지 흑자를 전출금과 여유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은 2019년 기금수지 흑자와 여유자금 회수를 통해 전출금, 융자사업에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2021년 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자 전입금과 차입금으로 보전하고 2023년에는 융자금 회수를 통해 차입금 상환과 기금 적자를 보전한 것을 알 수 있음

- 기금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2022년에는 적자를 차입금으로 대응하고 여유자금의 운용이 오히려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차입금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운용수 익률과 차입금 이자율의 차이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기금수지 흑자를 전출금, 융자금, 여유자금 운용에 사용하였음

- 특히 2023년 기금수지 흑자 450,773백만 원 중 435,812백만 원을 여유자금 운용에 사용함에 따라 흑자 분을 거의 여유자금 운용에 사용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관련 이슈 분석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관련 논의 사항 제2절.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을 위한 의견 수렴 제3절. 관련 기금 사례 분석: 타 부처 기금 사례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관련 논의사항

1. 기금 관련 지적사항 및 논의사항

1) 기금 존치평가 보고서 지적사항

확대할 것을 권고 받음

■ 2023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개발진흥기금의 경우, 최근 글로벌 관광트렌드를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중기 가용자산이 과소해졌기 때문에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중기 가용자산이 과다하기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 규모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경상지출 대비 자체수입이 과소하기에 수익 다변화를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뿐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입과 타 부처 및 국회와의 혐의와 설득이 필요함

■ 2022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안정적인 자체수입조성이 아주 미흡하고 이로 인해 일반회계로 재원을 조달받기 때문에 수입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도 낮음

또한 중기 가용자산도 적정규모에 미달됨. 이러한 자체재원 부족상황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사업을 이관하여 사업을 수행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자체 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추후 평가에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폐지하는 조건부 존치를 결정함

■ 2020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개발진흥기금의 경우, 총자산의 70% 이상이 융자사업을 통한 대여금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차보전 등의 간접지원형태로 사업을 전환할 것을 권고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중기가용자산이 적정량의 10배 이상 초과하기에 공자기금에 예탁을 권고함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뉴서울CC 골프장으로 인해 중기 가용자산규모가 과다하기에 이에 대한 매각을 권고함

▮ 2019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설치목적이 유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동일한 운영관리자에 의해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또한 기금의 근거법 역시 한시적인 지원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및 성과관리의 체계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를 위해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할 것을 권고함

2)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관련 논의

■ 기획재정부(2023),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사업성 기금의 경우, 재정사업자율평가, 기금존치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토대로 유사, 중복사업통폐합 등 사업의 구조조정 추진할 것

또한 기금별 자체수입의 확충을 노력하고 회계·기금 간 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할 것

- 기획재정부(2023),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기금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여력을 확충할 것
 각 기금 회계별 재정상황을 점검하여 타 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활성화
 일반회계 전입금이 높은 기금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 추진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2023),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의 복잡한 재정구조와 기금 간 재정격차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사업을 전략적으로 편성하는 데 어려움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2018),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고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재정격차가
 있는 기금들이 하나로 통합될 경우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수 있음

기금 간 통합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각 기금이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에 부합하는가를 우선 검토해야 함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분야 재정구조 개선 및 신규과제 마련 방안 연구
 재정칸막이와 기금 간 재정형편 격차는 기금의 가용예산에 따라 재정이 배분되도록 유도되기
 에 재정집행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함

2.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1) 기금 간 전입 전출의 법적 근거 마련

▮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한 논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고갈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타 기금으로부터 전입 받고 있는 재원에 대한 법정화 논의가 진행되었음

1973년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1년 이후 정부의 출연금이 중단되고, 2004년 모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적립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로 현재는 타 기금 전입금에 매년 의존하고 있어 정치적 영향에 취약한 상태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 주요 수입원 폐지 이후 현재까지 주요 수입원이 부재한 실정으로 정부 전입금에 의해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예기금 자체적인 전략사업 추진과 중기적인 재정전망에 한계가 있는 상황
- 문화예술진흥기금 내 복권기금 전입 구성비는 2010년 4.72%(237억 원)에서 2019년 22.53%(1,056억 원), 2023년 45.20%(2,439억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지만 복권기금은 복지증 진사업 즉 소외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로 지출 목적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본래 목적인 예술인 창작지원과 괴리가 생기게 됨

타 정부출연금과 부처 내 타 기금의 전입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배분되는 법정배분이 아닌 매년 정부 내 재량적 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불안정한 재원임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재원확보를 위해 관광기금과 체육기금 전입('16년~) 및 일반회계 전입('18년~), 그리고 복권기금(복권법 제23조 제3항 제4호에 근거) 전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전입·전출을 위한 법적인 근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 ▮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관련한 논의

관광의 목적이 해당 지역의 문화적 경험을 체험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동시에 문화의 활성화가 결국 관광의 증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인 관광사업활성화를 위해 부담하는 출국납부금을 다양한 문화활동과 연계한 사업 발굴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관광과 문화의 중복되는 성격에 근거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정비율을 문화예술진흥기금 으로 출연하는 방안이 제시됨

그러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 중 대부분은 법적 부담금이기에 「헌법」, 「국가재정법」, 「부담금 관리 기본법」의 제약을 받게 되고, 이 경우 관광 분야를 위해 걷어진 부담금을 별개의 분야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은 응익성 원리로 인한 위헌의 성격과 부담금의 타 기금 전출 금지에 의한 법률위반 소지가 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한 논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항 제3호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비율에 따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에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비율) 제1항 제3호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체육·문화예술사업에 100분의 5까지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예산 기준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 기준 5%인 906억 원(100.0%)까지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여 현재 715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관련 예산은 사실상 215억 원(23.7%)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만이 문화예술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

2018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체육기금 출연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국민체육진흥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체육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 비율 5%에서 1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체육-문화예술 비율을 7:3에서 3:7로 변경하는 등 체육기금을 문예기금으로 출연하자는 내용임.

이에 대해 법제처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금 출연은 불가하고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과 체육분야 전문가들은 법 개정은 어렵다는

의견을 다양하게 표현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또한 복권기금에서 체육기금으로 전출되는 법정배분율 10.37%를 유지한 채, 이를 문예기금이나 융합계정의 신규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이 검토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복권기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비율을 상향 조정 방안 논의

복권기금은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복권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약 60%)를 제외한 수익금으로 조성되는데, 복권기금의 35%는 법에서 배분비율을 정하는 법정배분사업에 사용되며나머지 65%는 공익사업에 사용됨

공익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기타 대통령령 사업 등 5가지로 구분되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포함됨

문화예술정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복권기금의 배분비율을 총액 대비 10% 이상 수준으로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영국과 호주는 복권기금 수익금을 문화예술분야에 25% 이상을 배분하고 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복권법의 법정배분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수혜기관의 반발이 우려된다 는 의견도 제시됨

▮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과거 입법 노력

그동안 법정전입을 위한 개정안(김영주 의원, '18년 11월 발의, 임기만료 폐기)이나 체육기금 출연 법적 근거 마련(국가재정전략회의, '18.05.31) 등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제기되었으나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반발의 우려로 인해 추진되지 못함

법정전입을 위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근거하여 복권기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복권수익금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익금의 35%에서 40%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광진흥법상의 카지노사업자가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관광기금 외에 문예기금에도 납부하자는 것임.

그러나 소관 상임위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복권법의 법정배분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수혜기관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은 기금 설치 목적 및 사용 범위, 수혜자 등이 상이하고 부담금 원칙(납부자의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통합

▮ 기금 통합 필요성에 대한 선행연구

칸막이 재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2004년 KDI 보고서(조성일, 2004)에 따르면 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잘 활용될 경우 효과적인 수단이나, 현재와 같이 많은 주머니로 나눠질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에 따른 국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음

-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인한 비효율성, 준조세 부담을 늘리는 방만한 기금 운용, 예산사업과의 유사 중복, 정부회계의 다중구조화로 인한 불투명성, 지출에 대한 통제장치 결여, 국가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제공 등(조성일, 2004)

특히 범정부 차원의 우선순위가 아닌 부처 혹은 부처 내 국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이 배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이에 따라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올릴 필요가 제기됨

■ 6개 기금 통합 관련 논의

'기금·특별회계 등 국가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의 주제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2018.04)와 국가재정전략회의(2018.05)에서 문체부 소관 6개 기금을 하나로 통합 (가칭 문화체육관광 통합기금)하고, 기존 6개 기금을 통합 기금의 하위 계정으로 편성하는 안에 대해 논의함(기획재정부, 2021)

칸막이 재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타개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의 전체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각 기금의 사용목적 및 범위 등이 유사·중복되지 않고,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타 분야 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운 점, 기금 통합을 통한 융복합사업 실시는 기금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3) 융합계정 설치를 통한 융합사업 추진

▮ 융합 계정, 기금 간 융합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

기금 간 여유자금의 격차로 인해 기금 간 내부거래가 복잡하고, 기금 간 사업범위가 중첩되며,

정책의 우선순위보다는 기금의 재무구조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정해지는 등 칸막이 재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융합계정'이 제시됨(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특정 기금 안에 융합계정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확충하여 국민 여가생활을 위한 용도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기금통합에 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는 소극적인 대안일 수 있음
- 그러나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와 관련 있는 국민 여가 중심의 융합사업을 추진하여 기금 간 사업범위 중첩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기금의 설치의도와 기금용도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음
- 국가재정법 제13조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통합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한다.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부담금관리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금 통합 시에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간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

국민들의 현실적인 정책수요가 문화, 관광, 체육의 융합사업으로 확대됨으로 고려할 때 광의의 문화사업(문화, 체육, 관광의 연계) 추진이 필요함

▮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융합 계정의 가능성 고조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재정건전성과 지출 재구조화에 집중된 현 시점에서, 문화분야의 재정 건전성과 지출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융합계정에 대한 논의가 새로이시작됨(기획재정부, 2022)

이는 그동안 기금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재원의 전출입과 관련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던 것과는 달리 문화 분야 사업의 융합적 성격과 재정관리체계의 혁신을 위한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함

즉 문화재정의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예산과목 개편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며,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재정 프로그램 체계를 향유, 창작, 산업, 기반, 교류 등으로 구분 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기획재정부, 2022)

또한 기금 간 여유자금의 격차가 심하여 내부거래가 복잡한 점, 기금 간 사업범위가 중첩되는 점 등 재정칸막이로 인한 기금운용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관리체계 방안으로 융합계정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제안됨

그러나 융합계정의 설계와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융합계정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운영기관 선정 등 운용상의 어려움에 대한 대안 검토도 필요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2014년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각 각에서 문화, 여행, 스포츠 분야에 대한 3개 바우처 사업이 통합된 사업으로 대표적인 융합사 업의 사례임

특정 기금에서 타 기금 영역을 포함하거나 분야를 통할하는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기금의 사용용도가 추상적이고 개방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임(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제2절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을 위한 의견 수렴

1. 조사 개요

1) 재정정책 전문가 및 기금 운용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FGI 실시

▮ 조사목적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안정성 및 연계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정정책 전문가 및 기금운용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함

■ 조사대상

기금 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재정쟁책 전문가 및 각 기금별 이해관계자를 인터뷰 대상자 선별, 총 29명이 참여함

- 재정정책 전문가: 기금을 비롯한 국가재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거나 기금존치평가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계의 전문가들로,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에 대해 이해가 깊다고 알려진 전문가 등
- 이해관계자 : 문화체육관광부 기금담당자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금관리주체 혹은 위탁관리기관의 담당자들

<표 4-1> 조사대상자 특징(전문가)

순번	소속	직급	전공	주요 경력	
1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경제학	기금존치평가 반장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문화인류학	기금존치평가 팀원	
3	가 톨 릭대	교수	행정학	기금존치평가 팀원	
4	동국대	교수	행정학	우리나라 부담금 관리제도의 효과성 분석 연구	
5	서울시립대	교수	경제학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조성방안 연구	
6	서울여대	교수	법학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영학	중기재정작업반 문화체육관광분야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학	기획재정부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위원	
9	가톨릭관동대	교수	행정학	문예진흥기금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10	가톨릭관동대	연구교수	행정학	한국정책학회 문화정책위원회 이사	
11	전북대	교수	행정학	한국정책학회 문화정책위원회 간사	
12	문화예술위원회	책임연구원	행정학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13	제주대	교수	관광학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14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한국재정법학회장	

<표 4-2> 조사대상자 특징(이해관계자)

순번	소관 기금	직급	기금운용기간	비고
1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계정	서기관	3개월	
2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계정	팀장	2년	
3	문화예술진흥기금	본부장	2년	
4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과장	3년 6개월	
5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계정	팀장	3년	
6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계정	팀장	3년	
7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진흥계정	팀장	6년	
8	영화발전기금	팀장	2년	
9	관광진흥개발기금	팀장	7년	
10	문화예술진흥기금	사무관	3개월	
11	국민체육진흥기금	사무관	2년	
12	지역신문발전기금	주무관	6개월	
13	영화발전기금	주무관	1년	
14	언론진흥기금	사무관	3개월	
15	언론진흥기금	주무관	1년	

▮ 조사내용

8개 그룹으로 평균 3명 내외의 참여자를 대상을 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각각 공통질문 가이드를 준비하되 각 그룹 참여자의 반응, 논의흐름, 상호작용 등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거나 수정함

<표 4-3> 재정정책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조사 주요 질의내용

구분	질의내용				
재정정책 전문가	- 기금간 전출입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의견은 무엇인가? - 기금의 신규재원 발굴에 대한 의견과 제안할만한 방안이 있는가? -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에 대해 참고할만한 국내외 사례가 있는가? - 기금 통합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융합계정에 대한 의견과 융합계정을 운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가? - 융합계정을 신설하고 융합사업을 추진할 시 가장 연계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무엇인가? - 기금 운용에 있어 기타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기금운용 이해관계자	- 해당 기금의 현재 주요이슈는 무엇인가? - 기금의 신규재원 발굴에 대한 의견과 제안할만한 방안이 있는가? - 기금 통합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융합계정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 - 융합계정을 신설하고 융합사업을 추진할 시 가장 연계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무엇인가?				

2. 이해관계자 의견 분석

1) 해당 기금의 주요 현안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주요 현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주요 현안은 계속된 기금의 재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재원 발굴과 관련됨

매년 타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는 불안정한 자금흐름이라 중기적 인 사업전망을 할 수 없음

현재 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전부가 사실상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전입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의 법적근거 마련, 복권기금 전입의 법적 근거 마련, 담배세, 위헌소지 제거를 통한 모금제도 부활 등의 신규 재원 마련방안들을 고려하 고 있음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계자 A) 기금의 주요현안은 곧 닥칠 기금의 고갈에 대비해 안정적인 새로운 재원의 발굴에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청년컬처패스와 같은 신규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고 있음. 여기에 조직 내부의 불만(조직의 고유사업이나 역할과의 연관성 문제)이 있음. 사실상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핵심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전입된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됨. 지금 신규재원 발굴을 위해 고려하는 안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의 법적 근거 마련, 복권기금 전입의 법적 근거 마련, 담배세, 위헌소지 제거를 통한 모금제도 부활 등이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계자 B) 기금의 현재 당면한 문제는 기금 고갈임. 현재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읍소 전략 뿐임.

▮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현안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현안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수입은 줄어드는 반면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지출을 늘리다보니 기금이 고갈되었다는 것임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에는 기금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비대면 OTT 산업으로 영화 수요가 이전되면서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함 2024년 정부가 부담금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영화 관람료에 대한 법정부담금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자체 재원이 사라지게 됨

그러나 영화발전기금 관계자는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 약속과 재정당국이 영화발전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회계 혹은 타 기금에서의 전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영화발전기금 관계자 A) 기금의 주요현안은 기금 고갈 문제임. 원래는 재원 여력이 높은 기금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수입은 줄어드는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출을 많아지니 당연히 기금이 고갈됨. 현재 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과 공자기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 일반회계 전입, 그리고 2024년 체육기금에서 300억 원, 복권기금에서 54억 원을 전입받으며 어렵게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영화발전기금 관계자 B) 기금의 현재 당면한 문제는 기금 고갈임. 현재 정부에서 영화 부담금 폐지를 발표한 상태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새로운 재원보다는 일반회계 전입이나 타 기금 전입금을 고려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에서도 영화진흥기금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음. 영화계에서는 영화발전기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신문기금처럼 자체수입이 없어도 계속 운용되는 기금 사례는 많음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주요 현안

기금의 수입은 충분하나 재정당국에 의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함

특히 돔구장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음에도 우리나라에 돔구장의 공급은 충분치 못하여 돔구장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 중임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지방세수가 부족해지자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타 기금으로의 계속된 전출로 내부에 반발이 있음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 A) 기획재정부에 의해 지출 통제를 받고 있어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지원이 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는 단체들이 많음. 현재 주요 재원인 스포츠 토토는 연간 발행회차를 1,000회에서 1,200회로 늘리면서 물리적인 한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매출이 성장세에 이르기 힘들 것으로 예측됨. 또한 국민체육기금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창올림픽과 같은 메가 이벤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금의 성격이 강함.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 B) 작년 국회에서 문체위 의원 중 한 분이 영화발전기금으로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은 일회성으로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두 기금에 전출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다시 돌려받는 조건으로 800억 원 전출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계속해 전입받기보다 각 기금이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우선일 것임. 계속된 전출에 내부의 반발이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 C)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측에서 스포츠 토토에 레저세 16%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음. 레저세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함.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 D) 현재 돔구장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양질의 돔구장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예상 사업규모는 5천억 원 정도임.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현안

법정부담금인 출국납부금이 현 정부의 부담금 폐지 및 축소 기조에 따라 기존 일인당 10,000 원에서 7,000원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기금의 고갈 문제가 대두됨

따라서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가장 큰 사업인 관광산업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융자사업과 달리 이차보전사업은 결국 기금을 소진시키는 효과를 일으킴

그동안 부족한 재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하였지만 이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더이상의 차입은 힘들다는 입장이기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구조조정밖에 없다고 생각함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계자 A) 가장 큰 이슈는 출국납부금의 축소임. 예상으로는 1,300억 원의 부담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사업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융자사업은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될 것이 분명함.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임에 불구하고 계속된 환경변화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해왔는데, 지금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더 차입해주기는 어렵고 상환유예도 힘들다는 입장임.

■ 언론진흥기금의 주요 현안

기금의 수입은 충분하나 재정당국에 의해 사업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지 못함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현재 목표는 네이버가 독점하고 있고 앞으로는 Chat GPT에 의해 독점될 뉴스유통구조를 재단의 Big Kinds 플랫폼과 AI를 통해 뉴스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함

재정당국의 사업비 증액 제한으로 생긴 여유재원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전출하라는 결정에 대해 내부적 반발이 많음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언론진흥기금 관계자 A) 기금의 수입은 충분하나 재정당국에 의해서 사업비 증액 추진을 못하고 있음. 오히려 이로 인해 남은 여유재원을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전출하라고 기획재정부가 통보함. 지역신문발전 기금에 출연하는 만큼 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과거에는 누구도 언론사가 네이버와 같은 검색포털에 종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나 현재 모든 언론사는 네이버에 종속되어 있음. 미래에는 Chat GPT와 같은 플랫폼에 종속될 것. 그렇기에 더 이상 거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사업비 증액을 통해 Big Kinds 플랫폼을 성장시켜 이에 대응해야 함

(언론진흥기금 관계자 B) 기금존치평가에서 매년 여유자금이 많다는 지적이 발생함.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 부의 반대로 인해 사업비 증액을 할 수 없기에 생기는 문제임. 오히려 여유재원이 남는다는 이유로 지역신 문발전기금에 전출하라고 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주요 현안

언론진흥기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재정당국에 의해 지출계획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지역신문발전기금 관계자 A)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시작했으나 언론진흥기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재정당국에 의해 지출계획이 점점 깎이고 있음. 지역 언론이 중요하다는 것에 비해서 사업규모가 너무 적음.

2) 기금 간 전출입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의견

■ 기금 안정화와 연계활용 방안

고갈 우려가 있는 기금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의 전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금의 자산을 교환할 의지도 있음

체계적이지 않고 근거가 없는 기금 간 전출입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문화예술위원회 관계자A)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위원회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복권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의 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매년 주먹구구식으로 전입을 받다보니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임.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자산인 골프장을 체육진흥기금에 이전하는 대신 전입 제도화를 하는 제안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했지만 수용되지 않음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계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정부담금이었던 출국납부금이 축소되면서 융자사업이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결국 기금을 소진하게 될 것임. 사업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추가적인 정책 수요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이 문제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에서 지원받아 해결해야 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계정 관계자A) 기금 간 전출입은 법적 근거를 두고 하는 게 올바른 방법임

▮ 기금 간 재정격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움

현재도 기금 간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한다고 해서 기금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규재원 발굴을 통해 각 기금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음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주요재원의 성장세가 정체되어 있어 계속하여 타 기금에 전출 하다가는 국민체육진흥기금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현재 체육문화예술사업에 대한 법정배분율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기금 간 전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와는 성격이 다름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D) 계속하여 타 기금에 전출하고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주요재원인 스포 츠토토의 성장세가 정체기에 있어 무리해서 기금을 전출하다가는 국민체육진흥기금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음. 체육문화예술사업의 경우 법정배분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적시되어있는데, 이에 대한 비율을 늘리고 이 사업을 예술 쪽에서 원하는 걸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계정 관계자B) 각 기금의 재정자립도가 신규재원 발굴을 통해 어느 정도 살아나야 함

▮ 전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시 유의사항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논의의 장에서 타 부처가 논의에 들어올 여지가 있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계자B)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순간, 다른 부처에서도 요구할 수 있기에 오히려 문제가될 수 있음. 그렇기에 법적 근거 마련에 있어서는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음.

▼민체육진흥기금의 이해관계자들의 경우 기금 간 전출입 제도화에 대한 반발이 예상됨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타 기금으로의 전출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반감의 기저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재원확보를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타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도움 덕분에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있음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 A) 체육진흥공단은 재원 확보를 위해 경륜경정, 스포츠토토 사업을 통해 노력하는데, 타 기금들은 그러한 신규재원의 확보 노력이 보이지 않음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 D) 공단에서 기금을 자신들의 재원이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실제 공단이 투표권 업무, 경륜경정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민원의 강도도 강하고 경륜경정 선수 노조와의 갈등도 있어 매우 힘들고 어려움. 또한 공단도 재원이 부족할 때 기금에서 차입을 하는데, 타 기금들은 그냥 전입받고 있음

3) 기금 통합에 관한 의견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계자B) 특정목적을 위해 걷힌 기금인데, 합친다고 합쳐질지 의문임. 문예기금의 본연의 업무는 창작 지원인데, 통합 시 창작 지원이 지금처럼 수행될 수 있을지 의문임.

(언론진흥기금 관계자A) 언론진흥기금의 주요재원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얻은 수익을 통한 출연금임. 언론 사들은 이를 '통행세'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의 재원을 자신들을 위한 재원으로 생각함. 그렇기에 통합이나 융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국회의원들은 언론진흥기금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에 관심이 더 큼. 만약 언론진흥재단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하려 하면 오히려 정치 권에서 반대할 것으로 예측됨. 만약 통합을 하더라도 지역신문을 위한 할당률을 두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통합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D) 이해관계자 문제가 가장 힘들 것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계정 관계자A) 기금을 완전 통합하는 것은 옳지 않음. 사업자들이 돈을 냈는데 다른 분야의 사업자들이 이익을 보면 사업자들이 반발할 것이기 때문임.

▮ 기금의 통합이 오히려 일반회계의 구축을 유발할 수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되어 문화예술 창작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기금을 통합시켜 기금의 재원이 확보되면 일반회계 사업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음

통합에 따른 정치적 비용에 비해 문화예술 전체 재원의 입장에서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음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계자B)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되어 일반회계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생하여 기금통합을 시켜놨더니 일반회계 사업이 줄어들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득은 하나도 없어지는 꼴이 될 수도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계자A) 기금이 많은 쪽과 통합하는 것을 찬성하지만, 부족한 기금과 통합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통합에 대한 위헌 소지

각 기금들을 둘러싸고 사업주체(기금관리주체 등)와 정책대상 집단, 그리고 그들과 연계된 정치인들이 존재하고, 통합 추진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우려됨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언론진흥기금 관계자A) 과거 정부광고수수료에 대한 위헌 시비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 합헌이었음. 왜냐하면 언론에게 부담금을 내지만, 언론을 위해 쓰인다는 것임. 그러나 통합을 하게 된다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흔들리기에 위헌소지가 있을 것임.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D) 각 기금은 목적과 용도가 관련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음. 목적과 용도 외에 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함.

4) 융합계정에 관한 의견

임

● 융합계정을 통한 융합사업으로 실·국 간 장벽을 허물 수 있다는 의견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실·국 간 소통의 부재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

그러나 융합계정을 통한 융합사업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실·국 간 정보가 활발히 교환되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함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 B) 현재 타 실국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임. 막상 국회 가서야 사업 성격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음. 융합계정과 융합사업을 통해 실국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좋을 것임.

▮ 신규사업 개발 가능성의 기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여유재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에 의해 신규사업 혹은 사업비 증액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 상황에서 융합계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타 기금들의 분야들과 융합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신규사업의 개발을 위한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 B)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융합계정 논의가 나왔었음. 대규모 시설 건립 사업을 위해서는 체육만을 위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고, 문화, 콘텐츠, 관광 분야가 모두 융합된 형태여야 한다는 것임. 그렇기에 특별펀드를 조성하여 융합 사업을 하자는 논의가 나왔었으나 흐지부지됨.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막혀있는 돔구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건립사업의 기금운용계획 편성이 융합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임. 현재 지자체에서 파크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요구하지만 보조금법에 의한 지방이양사업으로 묶여 있어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다른 트랙을 모색해야 하는데, 이 역시 융합계정을 통해 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행정안전부의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한 레저세 부과에 대응하는 역할

현재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해 레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융합계정을 통해 이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의견이 있음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 A) 행정안전부에서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려고 함.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융합계정이 운용된다면 좋을 듯. 대신 융합계정의 주요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기금 하에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 융합계정 개념의 불명확성과 이로 인한 갈등의 여지 존재

융합계정과 융합계정을 통해 진행될 융합사업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존재함 융합의 개념이 확실해야 재원의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기금 제도에서의 전출·입의 문제가 없을 것임

또한 융합 사업이란 탑다운 방식, 연역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닌 바텀업 방식, 경험적으로 정책고객들의 수요에 의해, 환경변화에 의해 사업들이 융합되어 가는 것에 가깝다는 의견이 있음

개념의 불명확성을 타개하기 위해 융합사업을 설계할 시에 사용목적을 명확히 결정해야 하지만 이 때 기금관리주체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영화발전기금 관계자 A) 융합계정의 의미가 불명확함. 콘텐츠 융합은 일반회계로 콘텐츠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음. 또한 기금 별 용도가 있기에 용도 외에 쓰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계자 A) 이미 융합계정이 없어도 융합사업은 많이 하고 있음. 사업이 다른 기금으로 이관되는 경우도 있음. 하다보면 융합이 되는 것이지, 애초에 융합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계정 관계자 A)융합계정은 좋을 것 같음. 각 기금이 갹출하여 중독자 등 개별고객대상에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융합계정 역시 사용목적으로구분되어야 함. 이 때 기금관리주체 간 분쟁의 가능성이 존재. 사실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금 사업역시 온전히 따져보면 특수목적이 아니기 때문.

▮ 기금별 융합사업에 대한 의견

(문화예술진흥기금) 융합사업의 예로 예술의 관광자원화, 예술 치유사업, 체육과의 대규모 페스티벌 등이 제시됨

(영화발전기금) 돔구장 내에서의 영화 촬영, 영화관 내에서의 스포츠 중계사업 등이 제시됨 (언론진흥기금) 문화예술과 체육이 함께하는 미디어 교육, AI를 중심으로 한 융합사업이 제시 됨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시설과 극장 그리고 공연장이 결합된 시설건립사업이 제시됨.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계정의 경우, 도박으로 일상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 대한 상담서비스에서 무용을 이용한 치유, 스포츠 관련 치유 사업 등이 제안됨

이해관계자 의견 내용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계자A) 예술의 관광자원화, 예술치유, 체육과의 대규모 페스티벌 등의 사업이 융합사업으로 적합함

(영화발전기금 관계자B) 돔구장에서의 촬영, 영화관에서의 스포츠 중계 사업 등이 융합사업으로 적합함 (언론진흥기금 관계자B) 문화예술, 체육과 함께하는 미디어 교육, AI를 중심으로 한 융합사업이 제안됨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계자D) 체육시설, 극장, 공연장이 결합되는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시설사업 등이 제안됨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계정 관계자B) 도박으로 일상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에서 무용을 이용한 치유, 스포츠 관련 치유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음.

3. 전문가 의견 분석

1) 기금 간 전출입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의견

▮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들 내에서 전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높으면서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문화, 체육, 관광 등 각 정책분야의 생태계가 달라서 사업 간의 조정기능을 제고시키기가 쉽지 않기에 융합계정과 같은 방안보다는 현재 전출입의 구조가 가장 현실적임

▮ 칸막이 재정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됨

해당 연구의 핵심문제 중 하나는 필요한 사업에 재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있는 기금에 속한 사업에 재원이 가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구조라고 봄

그러나 단기적으로 몇몇 기금의 안정화만을 위해 기금 간 전출입을 법적으로 명문화한다면 오히려 부처 전체의 기금운용이 경직화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음

▮ 기금의 전출입 구조로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움

대부분의 분야들이 서로 융합되어 시너지가 발생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각 기금이 분산되어 각 분야의 사업이 집행된다면 정책과 현장이 괴리될 우려가 큼

전문가 의견 내용

(전문가12) 법정 전입이 가장 실현가능할 것임. 그리고 복권기금 같은 타 기금에서 전입 받으면 문체부 내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게 될 것임.

(전문가2) 현재 기금 구조를 그대로 두면 칸막이 재정의 문제는 그대로 유지됨. 비효율은 비효율대로 두더라도, 현재처럼 기금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융합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 글로벌시대의 K-컬처에 정책도 발맞춰 따라가지 않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울 것임.

2) 기금 통합에 관한 의견

■ 문화, 체육, 관광의 무차별성 혹은 밀접한 연계성을 갖기에 통합해야 함국민 입장에서 문화, 체육, 관광은 국민의 여가활동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진

다는 의견이 많음

- 국민들의 일상생활 자체가 문화인데, 그 안에는 체육활동도 포함되며 이러한 문화는 관광의 콘텐츠 가 되기에 이 셋은 불가분의 관계임
- 현재 시대에는 문화, 체육, 관광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자주 발견됨

특히 문화와 관광은 문화예술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차이점이 없어졌으며 문화의 사회경제적 결과가 관광이라는 의견이 존재함

따라서 문화의 광의적 성격과 빅블러 현상, 국민여가의 관점 등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광개발진흥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이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개발진흥기금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체육진흥기금까지 통합하는 방안이 제안됨

전문가 의견 내용

(전문가5) 손흥민 사례를 생각해 봄. 손흥민의 팬덤이 단순히 체육만의 현상인가? 손흥민을 보러 한국에 놀러오는 외국인들은 어떤 분야로 분류해야 하는가? 이제는 문화, 체육, 관광이 다 얽혀 있음. 문화 때문에 관광을 가고, 체육종목과 체육인 그 자체가 문화가 되고, 다른 지역에서 체육활동하면 그것이 관광인 것임

(전문가1) 국민의 여가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일을 하는 시간 이외에 여가시간에는 문화, 체육, 관광 활동이모두 포함됨. 이것이 별개로 행해지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음. 놀러가는 일상 그 자체가 문화인가하면, 특정지역을 여행 가는 이유가 그 지역의 문화 때문이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많은 활동들이 체육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기금 통합은 각 기금의 고유 목적을 이룰 수 없게 함

예술의 경우, 팔길이 원칙에 따라 정부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원하는 중립성의 가치가 중요한데 기금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예산 배분의 정치성이 강해지게 되어 부작용의 우려가 있음

문화, 체육, 관광의 사업의 성격과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울 수 있음

전문가 의견 내용

(전문가11)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된 재원 안에서 분배의 문제가 발생함. 이는 정치적인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문화를 지원하는 대원칙인 팔길이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전문가12)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문화·체육·관광이 다 같을 수 있겠지만, 실제 정책현장에서 일하다보면 각각의 생태계가 정말 다름. 이러한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임.

■ 각 기금별 수익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함

예를 들어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움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문화체육관광 사업의 목표와 의의를 따질 때, 그 기금간 칸막이는 제거될 필요가 있음

전문가 의견 내용

(전문가2) 체육진흥투표권은 2002년 월드컵이라는 사건으로 탄생되었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체육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맥락에 놓여지게 됐는데, 사실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이 재원이 체육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특히 국민들이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는 이유가 삶이 어려워서인데, 그렇다면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사용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 사업에 대한 원점(zero-base)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을 분석했을 때, 기금 자체가 이익단체들의 성역(聖域)이 되어 비효율적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국민의 입장에서 기금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세금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들인지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야 함

이를 통해 재원이 필요한 기금과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통합해야 함

전문가 의견 내용

(전문가5) 기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구조가 정책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철의 삼각(iron-triangle)과 비슷한 형태임. 문화체육관광부 실·국, 국회 상임위, 정책고객들이 얽혀서 한 발짝의 진보도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로 보임. 개혁의 이익은 분산되어 있는데 비용은 집중되어 있기에 개혁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그로인해 기금 자체가 이익단체들의 성역(聖域)이 되어버림

(전문가1)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세금을 투입할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원점(zero-base)에서 따져서, 그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기금을 정비해야 함. 그렇게 되면 재원은 알아서 들어옴. 사업의 정책효과가 높고 적은 예산 지원만으로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해당 사업의 경쟁력이 갖춰지고이를 통해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임

▮ 통합 시 전제조건으로 신규재원 발굴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모두 제고하기 위해선 기금을 통폐합하는 동시에 신규재원이 발굴되어야 함

통합 시 벌어질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금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설득을 위해서도 신규재원 발굴이 필요함

신규재원으로는 숙박세, 관광복권, 문화복권, 스포츠토토의 신종목 발굴(e-스포츠) 등이 제안됨

전문가 의견 내용

(전문가6) 기금을 통합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자들의 설득이 필수인데, 제로섬 상황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따라서 신규재원 발굴을 통해 파지티브 섬(positive sum)인 것을 보여줘야 함.

(전문가7) 해외에서는 문화와 관광 분야에 숙박세가 많이 검토됨. 또한 제주도에서는 과거에 관광복권을 검토한 바 있음.

(전문가7) 스포츠토토의 종목 중 e-스포츠를 추가해야 함. 이미 음지에서 e-스포츠가 많이 성행하고 있음. 이를 빨리 양성화함으로써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e-스포츠 콘테스트의 이니셔티브를 확실히 가져가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임

▮ 통합의 실현가능성을 우려함

James. Q. Wilson은 규제를 둘러싼 정치행태에 대한 예측을 비용과 편익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측했음

현재 기금구조는 소수에게는 이익이 집중되어 있지만, 칸막이 재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란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의 상황임

이러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수의 수혜자와 소수의 비용부담자가 발생되는데, 소수의 비용부담자의 적극적 방해공세로 인해 Muddling Through(머들링 스루: 시간끌기)와 같은 어려운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임

이로 인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해도 어차피 안 될 것'이라는 적응적 기대를 낳고 이것이 다시 본 정책을 지속시키는 정책단속효과(policy ratchat effects)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봄

전문가 의견 내용

(전문가3) 대다수의 국민들은 관심이 없으나 이익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사항이라 기금통합주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임

(전문가4) 정책에 대한 이익은 분산되어 있는데 정책에 대한 비용은 집중되었기에 기금정비를 통해 이익을 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고 기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은 강한 반발을 할 것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

3) 융합계정에 관한 의견

▮ 융합 개념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

융합 개념이 통합이나 연계로 오해될 수 있는 애매한(ambiguous) 성격을 가짐

- 통합은 기금과 사업 그리고 기관까지 모두 합쳐 관리하는 것인 반면, 융합은 문화, 체육, 관광의 성격을 모두 가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기금에서 갹출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구분할 필요있음

융합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 되어야 융합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호한(vagueness) 성격을 가짐

- 융합의 정도를 '느슨한 융합', '중간 정도의 융합', '강한 융합' 등의 스펙트럼 개념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의견 내용

(전문가5) 융합과 통합은 다르지 않은가. 융합을 극대화했다고 통합되는 건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둘을 별개로 놓고 생각해야 함

(전문가4) 통합은 기금, 사업, 기관 모두가 합쳐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한편, 융합은 각 분야 별로 돈을 조금 모아서 분야가 연계되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임

(전문가3) 융합에는 정도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음. 돈만 갹출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융합이 있을 것이고, 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는 융합이 있을 것이고, 탄탄한 융합사업을 통해 정책효과성을 획기적 으로 높이는 융합이 있을 것임

■ 융합 계정은 각 기금에서 일정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고유 사업을 위한 재원도 필요함 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각 기금에서 일정 정도의 재원을 융합계정으로 전출해야 하는데, 여유재원이 없는 기금의 경우 융합계정에 전출하고 나면 고유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 이 부족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융합계정으로의 전출로 인해 각 기금 간 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으며, 각 기금의 고유사업과 융합사업에 대한 재원 배분의 문제가 존재함

전문가 의견 내용

(전문가11) 융합사업을 위해서 융합계정에 돈을 전출하고 나서 재원이 부족한 기금들의 경우 원래 고유의 사업을 못할 수도 있을 것임.

(전문가10) 기금 본래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게 설계해야 함.

▮ 기금관리주체

융합계정의 관리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에서 직접 운용하여,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사업을 개발하여 융합계정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함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관광국)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단을 조직해야 함

전문가 의견 내용

(전문가3)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차원에서 융합계정을 운용해야 하기에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실에서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전문가2) 각 기금의 담당자와 기금관리주체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나서야 함.

(전문가4)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에서 기금을 관리하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기금운용단을 만들어 운용하면 부처 내에서 조율이 가능할 것임

제3절

기금 효율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통합 사례

1. 기금제도의 정비 : 효율성과 민주성을 중심으로

1) 기금 제도의 정책흐름

■ 예산회계법 제정(1961년 제정, 1962년 시행)

1961년 일반회계와는 별도의 예산제도로서 기금제도가 도입됨

- 1961년 예산회계법 제정으로 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음(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 목적)
- 1973년 예산회계법 개정을 통해 각 부처의 기금운용계획의 작성 의무, 대통령의 승인제도, 재정당 국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함

하지만 현재와 같은 기금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음

- 특히 기금 신설에 대한 통제가 미약하였고, 그로 인해 정부의 각 부처에서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를 확대하여 그 수가 100개 이상 증가함
- 기금의 사업운영과 자산관리에 있어서도 통일성과 전문성이 낮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함(감사연구원, 2015)
- ▮ 기금관리기본법 제정(1991년 제정, 1992년 시행)

기존의 기금 사업운영과 자산운용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기금을 예산에 준하여 통제·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질의, 답변을 의무화하는 등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함(감사연구원, 2015)
- 또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함(감사연구원)
-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서 각종 문제를 예방하려 함
- 그러나 동법의 적용대상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인해 공공성이 높은 민간관리기금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됨(문광빈, 정연백, 탁현우, 2012)

그러나 기금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예산운용과 기금운용과의 연계성 제고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로 인식되었음(강주영, 현대호, 김도승, 2010)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1994년 개정)

기금 통폐합을 통해 재정제도 단순화를 시도한 사례임

- 조달회계와 조달기금을 통합하는 등 동일한 분야에 특별회계와 기금이 양립되어 있던 체계를 특별회계로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통합함(문광빈, 정연백, 탁현우, 2012)
- 조달회계와 조달기금을 조달특별회계로 통합함
- 양곡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양곡 수매 방출 업무를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일원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을 특별회계로 일원화함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1999년 개정)

문민정부의 4대 부문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에 해당하는 재정개혁의 한 축으로 기금 통폐합 등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함

-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75개의 기금을 55개로 통폐합함으로써 칸막이 재정으로 인한 비효율 성을 완화하고자 함
- 설치목적을 달성한 4개 기금(재형저축장려기금 등)을 폐지하고, 과학교육기금 등 7개 기금을 일반 회계 또는 특수회계로 흡수하여 11개 기금을 폐지함
- 방송문화진흥기금, 새마을국민기금, 국립대병원기금 등 3개 기금은 재원의 대부분을 민간에 의해 조성되었기에 민간기금으로 전환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문화진흥기금, 한국과학재단기 금 등 10개 유사기금은 4개로 통합함
- 38개의 기타기금¹⁾은 16개로 감소하였는데, 9개는 폐지, 3개의 기타기금을 통폐합하여 공공기금으로 전환, 사업내용 상 공공성이 큰 10개 기금은 공공기금으로 전환함

기금운용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정책심의회' 설치

- 기금정책심의회에서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용함으로써 2000년도부터 30여 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 의해서 기금에 대한 평가가 매년 이루어짐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01년 개정)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이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됨

- 당해 개정 전에는 기금관리주체가 공공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 결산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규정만이 존재하여 기금에 대한 국회의 체계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기타 기금의 경우 국회보고가 면제되는 기금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

¹⁾ 기타 기금의 운용계획은 공공기금과 달리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으로 확정됨. 따라서 기타기금에 대한 통제는 공공기금에 대한 통제보다 약했지만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을 구분하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음(황성현, 2003)ㄴ

- 당해 개정을 통해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대해 국회의 심사를 제도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과 제고하고자 함(문광빈, 정연백, 탁현우, 2012)
- 이로 인해 예산과 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던 국회의 심사 여부가 사라지면서 모든 재정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되었음

또한 기타 기금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함

- 기금 구분이 자의적으로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으로 구분되어 민주적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기타 기금을 폐지함
- 따라서 기타기금이었던 기금들도 국회 보고 및 심사 등 공공기금과 동일한 재정규율이 적용됨

기획예산처는 1국 1심의관 5과의 기금정책국을 신설함으로써 기금 및 부담금의 관리, 기금운 용계획의 혐의 및 조정 등의 업무를 관장함

기금운용계획 변경한도를 축소함

- 당해 개정 전에는 기금운용 지출계획의 주요 항목(장, 관, 항)에 대해서는 지출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존 1/2의 기금운용계획 자율변경범위를 3/10으로 축소함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 보완

- 개정 전에는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주무부처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수립할 수 있었으며 기타 기금의 경우는 주무부처 승인만으로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변경함
- 당해 개정 후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대통령의 승인, 국회심의 등의 통제제도를 강화함
- 또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제출 등의 업무담당 책임을 주무부처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으로 변경함
- 기금운용계획 자율변경 범위 내 세부 지출항목의 세항 신설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기금폐지 및 통합

-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통합·폐지 대상기금의 유형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 정비를 법적으로 지원하였음
- 존치필요성, 목적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7개 기금을 폐지하고, 유사·중복되는 6개 기금을 3개로 통폐합함(문광빈, 정연백, 탁현우, 2012)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03년 개정)

기금 신설의 경우 기획예산처의 심사를 제도화하였음

금융성 기금의 경우 역시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기금존치평가 권한을 부여함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05년 개정)

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원칙적 금지조항을 삭제하는 등 기금 자산운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함(감사연구원, 2015)

기금의 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함

▮ 국가재정법(2006년 제정, 2007년 시행)

국가재정체계 내의 기금 제도를 편입함

-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폐합하여 기금도 국가재정체계 내에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의 여유재원을 상호 전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정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변경범위도 30%에서 20%로 축소하였음(문광빈, 정연백, 탁현우, 2012)

「국가재정법」제5조는 기금을 법률로서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기금의 재원이나 목적 등 기금의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기금의 설치 법률을 따름

- 기금설치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들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운용, 용도 등이 명시됨

2)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62조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 및 운용해야 함(국회 예산정책처, 2014)
- 공익이 법률 상에 규정된 바, 이는 기금이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이익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국회 예산정책처, 2014)
- 동법 제63조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금관리주체가 설치한 자산운용위원회나 기금관리주체 자신이 사전에 작성한 자산운용지침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함

「국가재정법」과 개별 기금의 설치 운용의 근거로서의 법률 외에도 「부담금관리기본법」, 「국고 금관리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가회계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관리 및 통제되고

있음(감사연구원, 2015)

- 「부담금관리기본법」의 경우 기금의 주요 세입인 부담금을 통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금 운용을 통제함
- 「국고금관리법」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모든 국고금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일원화하여 관리함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경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고 이를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대해 관리함
- 「국가회계법」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대해 통제함

2. 기금의 통합 : 농림축산식품부 사례를 중심으로

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의 통합

1994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을 특별회계로 일원화하였음

- 범정부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동일한 분야에 특별회계와 기금이 양립되어 있던 체제를 단순화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회계로의 일원화를 추진함(문광빈, 정연백, 탁현우, 2012)
-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발전기금은 그 지원대상사업과 조성재원이 서로 중복되어 있었기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특별회계로 통합함(법령정보, 개정이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시행 1994. 1. 1.] [법률 제4690호, 1993. 12. 31., 전부개정]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농어촌발전기금은 폐지하고, 그 기금의 권리의무 및 재산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승계하도록 함
- 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하고, 투자계정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 및 보조 사업을, 융자계정에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융자사업을 각각 지원하도록 함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특별회계의 통합

1994년 농어촌특별세특별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법정전입이 이루어짐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추진될 대상 사업 중 농림수산부 및 그 외청 소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집행함
- 기존의 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안에 농어촌특별전입금사업계정을 신설하여 구분·계리함
- 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과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농어촌구조개선사 업계정에서는 기존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에서는 농어

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별표에 명시된 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사업을 지원함

2006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특별회계를 통합함

-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운용체계를 단순·명료화하고,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효율 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사업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통합함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흡수·통합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목적을 변경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목적을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변경 함.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변경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특 별세사업계정의 세입·세출 항목을 조정함

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타 기금으로의 전출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2011년 FTA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

-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국회 위원회 검토보고서), 정부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 향후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국회 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있었으나, 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의 출연금에만 의존하고 있고 기금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 업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시도가 있음(국회 위원회 검토보고서)
- 2011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용도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을 포함하고,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 사업 항목에 상수도 정비를 추가함(법령정보, 개정이유)

2017년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으로의 전출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용도 중 농작물재해 관련 지원, 농업인의 소득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

는 사업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각 기금에 대한 전출 근거는 세출항목에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법령 정보, 개정이유)

- 이에 특별회계의 세출 항목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금 및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함(법령정보, 개정이유)

2018년 무분별한 농지전용 방지와 함께 농지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회계를 당초 설치 목적대로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함

- '08. 6.22.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농지관리기금 및 농어촌구 조개선 특별회계에 수입(세입)항목으로 중복 지정되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 회계를 두고 부처 간 분쟁 및 혼란이 발생함(국회 위원회 검토보고서)
- 이러한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삭제하고 농지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함

4) 농작물 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의 통합

■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등 관련재해보험법 통합

2008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탄생하였음. 이에 따라 같은 해 국회 임시회의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에 대한 개정안들이 발의됨

- 황영철 의원의 안은 재해보험 대상을 늘리자는 것이고, 정부안은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을 통합하자는 것이었음
- 법안소위에서 정부안과 황영철 의원의 안, 그리고 상임위에서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하여 황영철 의원이 새롭게 발의함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통합되면서 농작물재해보험기금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기금이 통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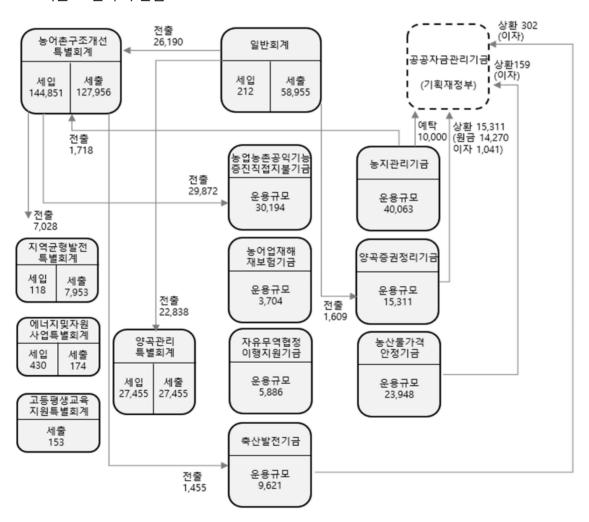
- 2013년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분리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리하고 해양 수산부 장관에 협의하는 구조가 됨
- 수협 등 이익단체에서는 반발하는 입장도 있었음

5) 통합 사례의 시사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시사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의 환경이 농업이라는 동일한 분야인 것에 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들은 문화, 관광, 체육, 언론, 영화 등 고유의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 통합 추진 시 정치적 파장이 더 클 것이라 예상됨

위 사례들의 경우 기존에 있던 특별회계에 타 기금과 타 특별회계를 흡수통합하는 것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들의 통합은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기금 관련 법조항들을 삭제해야 하는 조건이 수반됨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2023), 단위 : 억 원

[그림 4-1]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기금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정비의 기본방향

제2절.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 방안

제3절.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정비의 기본방향

1. 기금 정비의 방향성

1) 기금 정비의 필요성

▮ 기금간 격차 해소와 재정건전성 확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은 회복세 속 불확실성 하에 있으며, 이에 윤석열 행정부의 재정기 조는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재정을 강조함

-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요국별 경기 상황과 물가 둔화속도는 차별화되는 양상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24)
- 대한민국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환율의 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 크의 지속 등으로 인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24)
- 향후 물가경로에는 국제 유가 및 환율 움직임, 농산물 가격 추이, 성장세 개선의 파급영향 등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expectation) 변화에 따른 변동이 심하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및 엔화 등 주변국의 통화 흐름과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을 받으며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음(한국은행 금융 통화 위원회, 2024)
-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와 관련된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음
- 이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민생안정과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기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한 재정혁신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함(기획재정부, 2024)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당국은 기금 간 칸막이 재정을 타파함으로써 기금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건전재정을 요구함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의 의미를 '정부가 할 일은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 조정할 것을 주문함(대통령실, 2024)

-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서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중 하나를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통해 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로 설정함(기획재정부, 2024)
- 부담금 정비 등 국민부담 완화와 함께 핵심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 부정수급 방지 등 강도 높은 지출관리를 통해 재투자 여력 확보, 기금·회계 재원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재원 활용을 촉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극대화하고자 함(기획재정부, 2024)
- 기금 건정성 제고방안으로는 우선순위가 낮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삭감 폐지 및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및 민간재원과 자체수입 확충방안 강구가 있음(기획재정부, 2024)
-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 촉진으로 기금 여유재원의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예탁 활성화 및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은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을 축소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 및 상환을 적극 유도하여 국채 발행부담 최소화하고자 함(기획재정부, 202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들의 재정 격차는 극심한 상황이기에 각 기금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선 칸막이 재정 해결이 요구됨

-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법정부담금 폐지 예정),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자체 재원이 부재한 상황으로 타 기금의 전입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 반면,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안정성 있는 자체 재원의 확보로 여유재원을 보유 한 상황임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2024년 부담금 정비방안에 의해 법정부담금인 출입국 납부금이 축소됨에 따라 자체 재원이 축소되지만,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 해외 여행객들의 수가 증가하고 카지노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 재원의 감소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이렇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들의 재정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재정당국은 기금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통합적인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극대화할 것을 주문함

▮ 환경변화 대응과 정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금 운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들 중 여유 있는 기금의 경우, 현재 재정당국에 의해 신규사업 혹은 사업비 증액이 제함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윤석열 행정부의 건전재정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기조에 의한 것임

-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 출범부터 건전재정을 강조해왔으며,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적 운용은 매해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기재되어 있음(기획재정부, 2024; 기획재정부, 2023; 기획재정부; 2022)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 중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의 경우 여유재원이 충분함에 따라 신규사업(돔구장 건립)과 사업비 증액(AI 기반 뉴스검색포털 구축)을 추진했으나 재정당국은 현 행정부의 재정기조에 따라 신규사업과 사업비 증액을 제한함

사회환경의 변화와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정책의 새로운 영역 개발과 정책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의 건전재정 기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방향성이 결합된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기금의 구체적 운용계획(action plan)이 요구됨

- 대한민국 문화가 'K-pop'을 필두로 지구화(globalization)되고 있는 상황, 문화·체육·관광 등 여러 분야의 경계가 흐려지는 빅블러(big blur)의 상황, 국민들이 높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위한 여가생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에 발맞춰가기 위해서는 각 기금 간 파편화되고 분절적인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현재 재정당국의 기조에 발맞춰 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며 사업을 융합함을 시도해야 함
- 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책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정책 이니셔티브를 가질 필요가 있음

정책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할 신규 사업 예산확보의 결정요인으로는 정책적 타당성(경쟁력), 근거기반정책(이론과 데이터), 대외적 지지도, 장관 리더십, 예산확보에의 적극성, 재정환경 등이 있음(유승원·김수희, 2020)

- 신규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 이외에도 정책적 타당성이라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때 정책적 타당성이란 정책효과가 높고 효율성이 좋아야 함
- 또한 증거기반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한편(김병조, 2022) 재정당국과의 논리적 다툼에 대비하여 신규 사업의 유사사례와 데이터 등 근거가 필요함(유승원·김수희, 2020)과 동시에 신규 사업에 대한 탄탄한 이론적 기반 역시 필요함(금현섭, 2020)
- 한편, 국민, 대통령, 국회 등으로부터 대외적인 지지를 강하게 받는 부처 또는 사업의 예산 확보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대외적인 지지가 강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 혹은 기관이 해당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경우 예산확보가 가능함. 예산의 정치적 특성에 의해 예산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관은 예산이 삭감되고 예산확보에 공격적인 기관은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음(유승원·김수희, 2020; LeLoup&Moreland, 1978)
-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장관의 리더쉽(등용배경, 예산에 대한 태도, 대통령과의 관계, 외부 지지도)도 중요한데, 사회문화 분야의 장관들의 경우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에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탑다운 예산방식에서 대통령이 분야별 자원배분을 할 때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타 부처 장관들과 논리싸움에서 이길수 있어야 함(강혜진·김병섭, 2022)
- 계속사업과 달리 신규사업은 재정정책 기조 등 외부 재정환경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기에 위의 요건들이 갖춰졌더라도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면 사업으로 인정이 안 될 수 있으며 재정여건이 좋거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려 할 때에는 정식사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수월해짐 (유승원·김수희, 2020)

재정당국의 2025년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의 경우 타 회계·기금 등으로부터 전입축소를 권고하는 내용(기획재정부, 2024)에 대응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전입 받고 있는 복권기금을 융합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 요구됨

- 2023년 당초 예산 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91,450백만 원 상당의 전입을 받고 있음
- 2019년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복권기금에서 국민체육기금으로의 전출금이 754억원인데, 국민체육기금은 순자산 2조 5,000억원의 우량기금이고 스포츠토토, 경륜 같은 수익사업을자체 사업으로 두고 있음. 복권기금에서 체육기금으로의 전출금이 과다하므로, 복권제도의 개선이필요함"이라는 지적을 이미 받은 바 있음
- 특히 2024년 현재 재정당국의 여유 있는 기금에 대한 전입을 축소하라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전입받고 있는 복권기금의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요구됨
-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사업은 타 사업에 비해 부처 내 장벽을 걷어내고 소통을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한 시설에 문화, 체육, 관광, 영화 분야의 요소들을 접목시켜 높은 효율성을 담보할 것으로 예상됨
- 사업이 융합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여가시간 제약으로 인해 한정된 분야의 정책만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융합사업의 경우 한정된 시간에 다양한 분야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을 누릴 수 있기에 대외적 지지도 높을 것이라 예상됨

일선 부서 차원에서 소관 기금들의 여유재원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다면 재정당국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는 정책수단을 이용하여 범부처 차원 기금 여유재원의 통합운용을 이끌고 나갈 것으로 예측됨

- 현재 재정당국은 기금 여유재원의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예탁 활성화 방침을 천명하고 있음(기 획재정부, 2024)
-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의 기금 여유재원의 체계적인 통합운용 시도가 부재할 시, 재정당국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탁액수를 높여가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여유재원 을 통합운용할 것

2) 기금 정비의 원칙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금의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한 기금 정비를 위해서는 목적달성도, 안 정성, 효율성, 대응성, 실현가능성 등 5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혁신이 가능함

▮ 기금의 목적 달성도

국가재정법 제5조는 각 기금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기금이라는 자금은 당해 기금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해야 함(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 이해와 실제, 2014)

국가재정법 제13조에서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유재원을 타회계·기금에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시에도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입 및 전출이 가능할 것을 규정함

현재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자의적인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 전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3조 제2항을 통하여 여유재원의 전출이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도록 하였음(국회 예산정책처, 2014)

또한 국가재정법 제62조는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들을 정비함에 있어 기금의 정비방안이 각 기금의 목적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의 안정성

기금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렇기에 국가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매 3년마다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의 기준 중 하나에서 재원구조의 적정성을 고려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자체수입비중, 차입금 및 정부출연 비중, 수입·지출에 대한 응익성 원리의 부합성, 중기가용자산규모의적정성이 포함됨

또한 국가재정법 제63조는 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자산운용에의 안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운영에서의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조화되어야 할 부분임

- 기금의 관리는 크게 사업운영과 자산운용 두 분야로 구분되는데(국회 예산정책처, 2014), 사업운 영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비 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산운용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금 자금을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에 따라 증대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하지만 현재 기금운용에 있어 수입·자산운용·지출에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됨
- 기금의 안정성이라는 가치에는 재원의 안정적 조달, 안정적 자산운용, 효율적 지출이 모두 연계가된 개념이며, 때때로 자산운용의 수익성,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는 맥락을 달리 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들을 정비할 시, 기금의 정비방안이 각 기금의 안정성(수입 측면, 자산관리 측면, 지출 측면에서의 연계적 관점에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금의 파편화와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에 따른 국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해칠 우려가 존재함(조성일, 2004)

- 칸막이식 재정운용으로 인한 비효율성, 준조세 부담을 늘리는 방만한 기금 운용, 예산사업과의 유사 중복, 정부회계의 다중구조화로 인한 불투명성, 지출에 대한 통제장치 결여, 국가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제공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임
- 특히 범정부 차원의 우선순위가 아닌 부처 혹은 부처 내 국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이 배분되도 록 유도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림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간 연계활용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환경대응성

국제사회에서나 국내에서 문화의 힘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상 생활 속에서 누리는 국민들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강화됨

-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2022년 7월 발표)에 따르면, (56)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57)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58)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59)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60)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61)여행으로 행복한 국민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62)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 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등의 국정과제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겠 습니다."는 약속이 제시됨

점차 문화예술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문화, 체육, 관광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도 발생하고, 국민 삶의 질(Quality of life) 제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분야마다 파편화된 정책보다는 국민여가의 관점에서의 융합사업이 필요해짐

▮ 실현가능성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기금을 분석했을 때, 기금 자체가 이익단체들의 성역(聖域)이 되어 개혁에 대한 반발이 매우 강할 것임

대다수의 국민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에 대한 관심이 없으나 이익단체와 정치권에서 는 민감한 사항이라 기금통합주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임

- James. Q. Wilson은 규제를 둘러싼 정치행태에 대한 예측을 비용과 편익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측했음(J.Q.Wilson, 1984)
- 현재 기금구조는 소수에게는 이익이 집중되어 있지만, 칸막이 재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란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는 '고객정치(client politics)'의 상황임

정책에 대한 이익은 분산되어 있는데 정책에 대한 비용은 집중되었을 때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이러한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수의 수혜자와 소수의 비용부담자가 발생되는데, 소수의 비용부담자의 적극적 방해공세로 인해 Lindblom이 말한 Muddling Through(머들링 스루: 시간끌기)와 같은 어려운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될 것(Lindblom, 1959)

따라서 기금 정비방안은 기금을 둘러싼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용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게 설계되어 그들을 설득하여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기금정비의 원칙

구분	내용
기금의 목적달성도	기금이라는 자금은 당해 기금이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기에 기금이 얼마나 당해 기금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
기금의 안정성	기금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원의 안정적 조달, 안정적 자산 운용, 효율적 지출이 모두 연계가 된 기준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금의 파편화와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에 따른 국가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환경대응성	문화, 체육, 관광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과 삶의 질 (Quality of life)이 중요해지는 환경 변화에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실현가능성	기금정비방안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시켜 실제 기금정비가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에 대한 정비 방안

1) 기금 간 전·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법정배분율 설정을 통해 문화체 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안정성 확보

법정부담금의 재원을 목적이 다른 기금으로 전입·전출이 어려우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성격은 법정 부담금이 아니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임

- 국가재정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전·출입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은 사행산업을 통한 수익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 금에 출연하는 것이기에 법정부담금이 아니어서 전·출입에 법적 문제가 없음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기 금으로의 전출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법적 근거가 없는 불안정한 전입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태임

2) 융합계정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중 한 곳에 융합계정을 설치하여 융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금 간 연계활용 증진

기존 각 기금을 유지하는 한편 융합계정을 설치하여 기금별로 일정 수준의 재원을 융합계정으로 전출하여 융합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임

기금별로 유사성격의 사업을 통합하거나, 각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융합계정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실국간의 '사일로 효과(Organizational Silos Effect)'를 완화하여 협업 증진, 소통 증진, 시스템 사고를 통한 학습조직으로 도약할 수 있음(P. Senge, 2014)

관리주체는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으로 설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적으로 운용하도록

함

- 융합계정을 실국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재정담 당관로 설정하되,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같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단을 통해 전문적인 기금 관리를 하는 한편, 융합계정 사업운영과 융합계정으로의 전입금 설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각 기금 관리주체들과 담당자들이 모이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3) 기금 통합

▼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을 통합하고(통합 1),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하여(통합2)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

사업 성격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두 기금 각각에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을 배치함으로써 안정성을 제고함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을 통합하고, 각각 하위계정으로 구분함

- 통합1의 경우, 특별회계법 혹은 통합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기금1에 대한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고 하위에 각 목적과 부담금에 따른 하위계정을 설치함
- 통합2의 경우, 기금을 통합하고 언론진흥계정, 지역신문발전계정을 설치함

또한 목적이 다른 계정 간의 원활한 전출입을 위해 전·출입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 때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운용·관리할 것으로 규정하고 기획조정실이 업무를 맡는 것이 제안됨

1안	2안	3안
기금 간 전·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융합계정	기금 통합 통합1(문화, 관광, 체육, 영화) 통합2(언론, 지역신문)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 로의 전입 배분율 설정	기존 각 기금별 세입원 유지 하고, 기금별로 일정 금액을 모으는 방식	사업 성격의 유사성에 근 거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 리 측면 강조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논쟁을 불식시키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타 기금 전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필요 관련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안, 국가재정전략회의(2018.05)	기금별로 추진하는 사업 중 유사 성격의 사업의 통합 추 진과 분야 간 융합으로 시너 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융합계정을 통한 사업 추진 예를 들어 융합사업의 영역 을 향유, 기반시설, 산업(융 자), 전문가 양성, 국제교류 등으로 추진	유사중복성이 지적된 언론 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 기금 통합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 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 기금, 영화발전기금을 문 화체육관광기금 또는 특별 회계로 통합하여 각 목적 별, 부담금 별로 하위계정 을 설치
	관리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관리주체 :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기획조정실)
		관련근거 : 기획재정부, 2022~2026 국가재정운용 계획(문화체육관광분야)

제2절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 방안

1. 기금 간 전·출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1) 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8.11)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우려로 인해 재원확충 방안으로 복권수익금과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 했으나 임기만료 폐기됨

-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제1항 재원 조성 규정에 카지노사업자 납부금과 복권수익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임
- 그러나 소관 상임위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복권법의 법정배분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수혜기관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을 제시(기획재정부, 2021)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은 기금 설치 목적 및 사용범위, 수혜자 등이 상이하고 부담금 원칙인 응익성 원리에 위배된다는 점을 근거로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하였음(기획재정부, 2021)

■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2018.05)

2018년 5월 31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옴(기획재정부, 202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체육문화예술지원 사업 할당비율을 5%에서 10% 수준으로 상향하고 체육문화예술비율을 7:3에서 3:7로 변경하여 증가된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자는 내용(기획재정부, 2021)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공약검토(2017.7)

2017년 7월 새 정부 출범 후 공약검토를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갈 위기의 문화예술 진흥기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4%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 되는 법 개정을 검토(기획재정부, 2018)

-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은 일종의 사행사업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수익금 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안의 근거 한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기금수입의 4%를 문화예술진 흥기금으로 전입하는 안 검토(기획재정부, 2018)

- 문화예술을 통한 관광자원 개발, 지역 재생 등 문화예술이 관광에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술창작 지원을 통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문화예술기금 으로의 전입이 필요하다는 논거

▮ 관련 연구

김우철·신영효의 연구(2022)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민체육진 흥기금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출연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비교적 실현가 능한 방안이라고 주장(김우철·신영효, 2022)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재원 규모와 사행성 산업의 부정적 외부효과 보정, 국민들의 체육문화예술 향유권 강화를 고려했을 때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재원활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
- 그렇기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2항을 개정함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일부를 출연하 도록 하는 방안 제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의 보고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관광진흥개발 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에서의 전입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함(한국문화관광연구 원, 2018)

-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전체를 검토할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합당한 사업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이관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것
- 국민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를 체육·문화예술사업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민체육진흥기금 내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으로 직접 출연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

2) 개념과 설계

체육진흥투표권의 성격은 법정 부담금이 아니기에 목적이 다른 타 기금으로의 전입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기 금으로의 전출 규정을 마련할 필요 있음

- 법적 근거가 없는 불안정한 전입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정운용이 어려운 상태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전입하는 방안이 제안됨

-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4%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2023년 당초 예산 기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1,812,108백만 원)의 4%는 72,484백만 원이지 만,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입하는 실 금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검 토안보다 높은 수준인 100,000백만 원임.

■ 법정배분율 설정 방안

(1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했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4%와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에 대한 배분율 5%를 합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9%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이 제안됨

-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2항 제3호는 체육·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5%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 법 개정을 통해 생활체육문화사업과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분리하고 문화예술사업 지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전입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제안됨
- 2023년 당초 예산 기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9%는 163,090백만 원임

(2안) 체육문화예술지원 사업 할당 비율 상향과 복권기금 전입금의 일정 비율을 전출하는 방안이 제안됨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검토되었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체육문화예술지원사업 할당비율 (5%)을 10% 수준으로 상향하고 체육문화예술비율을 7:3에서 3:7로 변경하여 증가된 재원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자는 것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의 복권기금 전입금의 일정비율 (50%)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특히 후자의 복권기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에 대해서는 2025년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서 '여유 있는 기금의 타 기금에서의 전입 금지 원칙'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전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에 대비해서 일정 비율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이 제안됨

■ 법정배분율 설정을 위한 법 개정 필요

앞서 제시한 방안을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필요함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의 각목에서 라목, 마목을 삭제하고 라목으로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을 규정한 후, 동법 시행령 개정을통해 배분율을 100분의 10으로 올리는 동시에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대한 배분율을 100분의 7로 규정할 수 있음
- 동법 제22조 제3항 제4항을 제4항 제5항으로 이동시키고 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음
- 2023년 예산 기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7%는 126,848백만 원이며 복권기금 전입금 91,450백만 원 중 50%인 45,725백만 원으로 합계 172,573백만 원임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현재)

제22조(기금의 사용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 라. 체육·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 바.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100분의 5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 라.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
- 마. 그 밖에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시행령 제23조의2(국민체육진흥계정의 배분 비율 등) ① 법 제2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하며, 지원 대상별 구체적 배분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체육·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100분의 10(단, 법 제22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대한 배분율이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3호 배분비율 중 100분의 70이 배분되어야 한다.)

3) 방안에 대한 평가

▮ 기금의 목적달성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특정목적을 수행하고도 남는 수준의 여유재원이 있으나 문화체육관 광부 소관 타 기금들은 재원이 고갈되어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임

이러한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특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적정 수준이란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국민체육진흥계정의 목적을 해치지 않을 정도를 의미하고 이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재원 내에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함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사업 중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일반회계로 전환함으로써 체육 정책이 기금으로만 수행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타파하는 동시에 여유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

▮ 기금의 안정성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통해 재원이 안정적으로 배분되면서, 수입 측면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그러나 자산운용에서의 안정성,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 지출을 담보해주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의 성과관리와 지출 구조조정,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자원배분의 효율성

특정재원과 기금의 문제는 세입이 지출보다 커지면 여유재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유사사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임(국회 예산정책처, 2022)

이러한 자원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지출 재원으로 일부분을 특정 재원(부담금, 목적세, 정부독점사업수익금 등), 일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약한 연계형 재원구조를 생각할 수 있음(국회 예산정책처, 2022)

현재 체육 분야의 재원구조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서만 확보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거의 투입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임.

이러한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고 일반회계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일반회계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타 기금으로 전출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 환경대응성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배분이 문화체육관광부이 담당하는 여러 정책분야 간의 융합이 요구되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못함

그렇기에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융합행정을 이끌어내는 수단을 통해 환경대응성과 정책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함

■ 실현가능성

법을 개정 혹은 제정하는 데 체육계의 반발이 예상되어 정책책임자의 설득과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함

- 설득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논의를 통해 체육 분야에 대한 일반회계 투입이 있음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가 개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이 위축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함

2. 융합계정

1) 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

■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 분야

이용자 중심의 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문화사업(문화, 체육, 관광, 영화 등이 연계)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화된 계정을 통해 기금 간 중복과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부의 복잡한 재정구조로 인한 재정경직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윤석열 행정 부의 재정정책 기조인 재정건전성 제고와 지출 구조화에 대응하고자 통합적 재정운용에 대한 논의가 나옴

- 이는 그동안 기금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재원의 논의로부터 시작된 것과는 다르게 문화분야 사업의 융합적 성격과 재정관리체계의 혁신을 위한 차원으로 논의된 것(기획재정부, 2021)

시민들의 선택권 보장과 여가를 중심으로 한 사업융합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의 이용자 중심 재정(Demand Side Financing)으로의 전환을 제안

-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여가 시간에서 자신이 가장 원하는 분야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이용자 중심 재정(Demand Side Financing)
- 이용자 중심 재정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재정과 달리 시민의 선택권과 선호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델에 기반을 둔 상향식(bottom-up) 접근의 재정체계(정광호·안상열, 2018)
- 이를 위해 문화, 체육, 관광 등의 정책사업을 융합하고 총괄하는 정책 인식이 요구되기에 이용자 중심의 융합적 여가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생활SOC 복합화, 공예관광산업 육성은 이러한 이용자 중심의 융합적 여가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임(기획재정부, 2021)

▮ 관련 연구

한국재정학회(2020)의 연구는 재정의 경직성 심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현가능한 대안으로서 각 기금에서 마련된 재원을 통해 융합사업을 추진하는 융합기금을 제안함

- 재정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기금의 통합운영안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각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를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하여 기금들을 통폐합하는 것임
- 그러나 이는 개혁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장기적 개혁과제로 실현가능성이 낮음
- 이에 따라 각 기금에서 마련된 재원을 융합기금으로 전출하여 융합기금 안에서 기금 간의 연계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이 실현가능성이 높음

- 유사한 사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의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 통합체제의 핵심은 여가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융합사업 수요에 대응하는 것임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의 보고서는 기금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실적인 대 안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내 융합계정을 설치하고 사용목적을 여가사업으로 용도를 포괄하고 각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여유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현실 수요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 융합 및 연계사업을 특정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닌 관련 기금의 재원이 통합된 별도의 계정을 통해 지출하는 방안임
- 예산총칙에 융합계정제도를 명시하고 유사 목적 사업을 융합계정 예산으로 편성, 국회심의를 받은 후 예산집행 시 이체·이용 등 신축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2) 개념과 설계

■ 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전입 받을 신규 계정 설치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의 일정부분을
 융합계정으로 전출하여 문화, 영화, 관광, 체육 분야의 융합사업을 추진함

현재 부문별로 각각 사업이 이루어지다보니 사업들이 소액다건화되어 사업관리가 어려워지고 유사 중복의 문제로 사업 효과성도 저조함

기금별로 유사성격의 사업을 통합하는 한편, 각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융합계정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 실국간의 '사일로 효과(Organizational Silos Effect)'를 완화하여 협업 증진, 소통 증진, 시스템 사고를 통한 학습조직으로의 도약을 꾀함(P. Senge, 2014)

■ 융합사업의 성격과 재원부담의 측면을 고려하여 융합계정이 설치될 기금 결정융합사업의 성격이 광의의 문화사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융합계정을 '문화예술진흥기금' 내하위 계정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다른 한편, 재원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 기금 하에 설치하여 기금의 응익성 원리와 기금운용의 책임성을 살리는 측면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하위 계정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수 있음

■ 융합사업 규모, 여유재원 규모, 재정정책 기조, 관리주체 행태 등을 고려한 재원부담구조 결정

일차적으로 각 기금 별로 수행하는 사업 중 융합적 성격을 가진 사업과 그 사업에 대한 재원을 융합계정으로 이관하여 융합계정의 사업과 재원을 구성할 수 있음

재정정책 기조가 여유 있는 기금에 대해 타 회계·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축소를 권고하고 있고 기금 여유재원의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예탁 활성화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에(기획재정부, 2024), 이에 대응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전입 받고 있는 복권기금의 재원을 융합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음

각 기금관리주체들의 기금의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게끔 재원부담구조를 설계해야 함

■ 융합사업의 사례: 생활형 SOC 복합화 사례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문화여가시설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모델을 적극지원하고 있고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사업 역시 문화복 합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있음

- 공공도서관 등 지역기반시설과 연계한 복합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체육공간과 보육 및 문화교육 공간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기초생활체육 저변 확산 지원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을 대상으로 문화체육 콤플렉스, 다목적 체육관을 비롯하여 실내 빙상장, 복싱센터,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 츠가치센터 등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음(기획재정부, 2021)
- 융합계정 기금관리주체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 광부 기획조정실로 설정하고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단을 구성해야 함

관리주체의 경우 융합계정을 실국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전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로 설정해야 함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같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단을 통해 전문적인 기금 관리를 하는 한편, 융합계정 사업운영과 융합계정으로의 전입금 설정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각 기금 관리주체들과 담당자들이 모이는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3) 융합계정에 대한 예상안

▮ 융합적 성격의 기존 사업

융합적 성격의 사업은 단순히 문화예술, 관광, 체육이라는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광의의 문화라는 성격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시설사업의 경우 복합화를 통해 체육, 관광 뿐 아니라 문화적 요소도 포함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의 콘텐츠로서의 문화와 체육을 정책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 등이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예술의 관광자원화 사업과 문화예술향유지원(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융합적 성격을 가지며, 사업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 기준 255,876백만 원 수준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전통문화체험지원 사업, 한국형생태녹색관광육성 사업, 문화관광축 제지원,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이 융합적 성격을 가지고 그 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 기준 137,925백만 원 수준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체육·문화예술사업의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기초생활체육 저변확산 지원,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이 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 기준 363,883백만 원 수준임

▮ 예상되는 신규 사업

전문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FGI) 결과와 환경변화를 고려한 신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원하는 돔구장과 골프장 건립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원하는 건축·문화 공간 향유 지원을 결합한 문화예술, 영화, 관광적 요소를 섞은 사업을 검토할 수 있음

- 영화관, 미술관, 도서관, 박물관 등 여러 기능을 종합한 거대 복합문화시설로서의 돔구장 사업 추진
- 청소년 교육시설, 웰니스(wellness) 관광, 레저, 숙박, 미술관 등 여러 기능을 종합한 문화시설로서의 대중 골프장 사업 추진
- 이들이 건축유산의 가치가 있을 수 있도록 건축설계와 시공에 재원을 충분히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단지 한 가지 기능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으로 다양하게

쓰임으로써 시민들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과 더불어 일 년 내내 공간이 활발히 사용되게 함 문화체육관광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 사업, 문화 관련 핵심기술 R&D 사업 등 문화 혁신성장 지원 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관광벤처사업의 사업규모를 키우고 대상 분야 등을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영화 등으로 확대하여 시장에서 광의의 문화 분야를 창의적으로 융합사업화하려는 시도들을 지원해야 함
- 광의의 문화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선도적인 R&D 투자가 필요함

문화, 관광, 체육이 연계된 융합ODA 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따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을 융합계정을 통해 재원과 지원방식, 사업의 성격과 대상을 모두 융합함으로써 ODA 사업의 정책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음

▮ 예상되는 전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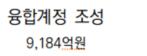
우선 기존 융합적 성격의 사업 지출규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255,876백만 원, 관광진흥 개발기금 137,925백만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63,883백만 원 등 총 757,684백만 원의 재원을 융합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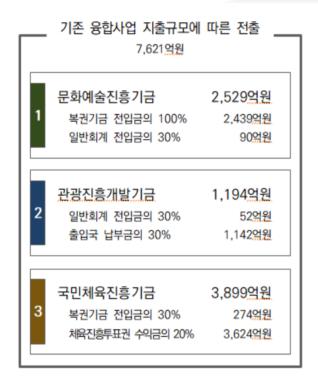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경우, 기존 융합적 성격의 사업지출 규모에 상응하는 융합계정으로의 전출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권기금 전입금(243,896백만 원) 전체와 일반회계 전입금(30,000백만원)의 30%에 대하여 융합계정으로 전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17,396백만 원)의 30%와 출입국 납부금(380,561백만 원)의 30%를 전출함으로써 기존 사업지출 규모에 상응하는 전출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 때 출국납부금의 경우 법정부담금이기에 전출에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기존 사업지출 규모를 전출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복권기금 전입금 (91,450백만 원)의 30%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1,812,108백만 원)의 20%를 검토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 2529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194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3899 억 원으로 총 7622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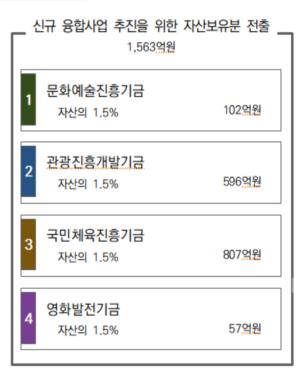
또한 신규 융합사업 추진을 위해 각 기금의 자산보유분에 대한 일정비율을 융합계정으로 전출하는 방안 역시 검토해야 함

- 각 기금이 보유한 자산의 일정비율을 융합계정으로 전출하는 것을 통해 각 기금들은 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갖출 인센티브가 부여됨
- 이는 여유재원이 많은 기금이 많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불리한 구조이기에 융합계정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내 하위계정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23년도 말(추정) 기준 문화예술진흥기금 6832억 원, 영화발전기금 3797억 원, 관광진흥개발기금 3조 9744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 5조 3818억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총자산 규모는 10조 4191억 원임
- 자산보유분에 대한 전출비율에 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총자산에 대한 1.5%를 융합계정으로 전출했을 시 1,563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됨
- 자산보유분에 대한 전출비율이 과도할 경우 기금의 자산침식 우려와 더불어 자산운용 시 과도한 수익률 추구로 기금 자산운용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는 한편, 전출비율이 과소할 경우 재원부족 으로 인해 신규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동시에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각 기금주체 들의 행태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임
- 이러한 전출방식은 각 기금들이 자신들의 자산보유분을 과소측정할 유인을 주기에 융합계정을 운용하는 주체가 외부 회계기관과 함께 각 기금들의 자산보유분을 정확히 측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그림 5-1] 융합계정 흐름도

4) 방안에 대한 평가

■ 기금의 목적달성도

융합계정의 경우 사업과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기금 목적달성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

- 융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기금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각 기금에서 원하는 방식의 사업이 한 사업의 틀 내에서 적절하게 융합된다면 각 기금의 목적달성도를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한편, 부처 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떤 한 분야에 치우쳐져 사업이 진행된다면 기금 간 목적달성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기금의 안정성

융합계정에 기존 기금들의 재원을 전출하기에 각 기금 수입 차원의 안정성을 제고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음

그러나 융합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출 측면에서의 안정성은 증진할 수 있음

■ 자원배분의 효율성

융합계정을 통한 융합사업으로 기금 간 연계활용을 제고함으로써 기금 간 재정격차로 인한 재정운용경직성을 해소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

▮ 환경대응성

분야 간 융합이 이루어지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융합계정은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민간은 이미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모든 산업이 종합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분야는 조직·재원·이해관계자 등 제도적 칸막이들로 인해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융합계정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융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효 과성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함

▮ 실현가능성

융합사업의 필요성과 기금 간 연계활용의 필요성을 근거로 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이 요구됨

특히 많은 재원을 부담하게 될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설득을 위해 융합계정을 국민체육진 흥기금 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의 통합

1) 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

■ 기획재정부 주관 열린 관계부처 회의(2018.04)

'기금·특별회계 등 국가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의 주제로 기획재정부가 개최하여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을 하나로 통합하고(가칭 문화체육관광 통합기금), 기존 6개 기금을 통합기금의 하위 계정으로 편성하는 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기획재정부, 2021)

- 이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각 기금의 사용목적 및 범위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으며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타 분야 사업에 활용하기 어려운 점, 기금 통합을 통한 융복합사업 실시는 기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관련 연구

김우철·신영효(2022)의 연구는 분절적 기금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각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를 혁신하여 통폐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기금 간 재정격차는 자체 재원이 풍부하거나 재정수요가 줄어든 기금에서는 여유자금이 발생하는데 재원구조가 취약한 기금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
- 이런 현상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금들을 운용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두드러지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 예산의 1% 초반으로 작은 재정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구조가 복잡하고 분절적이어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연계사업 추진이 어려움
- 기금의 기본적인 성격이 재정수요의 변동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에 기금담당부서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적립금으로 비축해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법적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받기에 기금 간 연계활용에 제약이 많음
- 국가재정법의 여유재원 통합운영 조항을 이용하여 기금 간 전입전출을 하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과 결정에 따라 임의적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어 안정적인 통합운영 방식을 탐색해야 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방안은 기금의 통폐합
-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 개혁안은 기금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여러 수준의 법 개정이 요구됨
-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조치는 장기적 과제로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자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요구됨

2) 개념과 설계

▮ 기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2가지 안으로 설정 가능함

문화예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을 통합(통합1)하는 안과, 언론진흥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합(통합2)하는 안으로 검토됨

사업 성격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두 기금 각각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언론진흥기금)을 배치함으로써 안정성 역시 제고함

- 통합1의 경우 특별회계법 혹은 통합기금법을 제정함으로써,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설치하고 하위에 각 목적과 부담금에 따른 하위 계정을 설치함
- 통합2의 경우 기금을 통합하고 언론진흥계정과 지역신문발전계정을 설치함
- ▮ 통합 1의 경우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검토 가능

통합1의 경우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방안(1)과 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안(2)이 있음

특별회계로 통합하는 경우(방안 1) 기금에 비해 사업운영에 있어 특정목적이라는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한편, 기금으로 통합하는 경우(방안 2) 특별회계에 비해 주요항목 지출이용이하여 자금의 신축적 운용이 가능

- 국가재정법 제14조는 특별회계의 신설에 관한 심사기준에 대해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 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 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세입 또는 특정한 사업 둘 중 하나의 요건만 갖추어져도 특별회계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
- 기금의 신설에 관한 기준은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국가재정법 제14조)으로 재원과 목적의 연계성, 신축적 사업추진의 필요성, 안정적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이라는 세 요건이 더 필요함

기금의 특정 목적에 대해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을 할 것인지(특별회계, 방안 1) 혹은 기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인지(기금, 방안2)에 대해 양자택일이 가능함

■ 목적이 다른 계정 간의 원활한 전출입을 위한 전·출입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기금의 통합이 특별회계로 이루어질 경우(방안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사례를 참고하면 됨

- 각 계정을 구분하고 계정별 세입항목에는 기금의 기존 세입원과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규정하고 계정별 세출 항목에 기금의 주요사업과 타 기금으로의 전출금을 규정하면 됨

기금의 통합이 기금으로 이루어질 경우(방안2), 각 계정을 구분하고 각 계정의 사용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들과 기금 내 타 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규정하는 한편, 기금의 조성에 관해서도 타 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을 규정하면 됨

주요 재원인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각 계정의 재원으로 활용도 가능함

- 각 계정의 재원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명시하여 계정 간 전출입 없이도 각 계정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3조(계정의 구분) 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①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지법」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2. 제6조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轉入金)
- 3. 다른 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 4.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元利金)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예수금
- 6. 그 밖의 수입금
-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
-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3. 법률 제4228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7조에 따라 발행된 농어촌발전채권의 원리금 상환
- 4. 제1호에 따른 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 반계정으로의 전출금
-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 6. 그 밖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방안에 대한 평가

▮ 기금의 목적달성도

기금들을 통합회계로 통합할 경우 개별 기금법에 의해 규정된 기금의 목적과 용도로 인해 연계사업 추진이 제한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음

■ 기금의 안정성

통합을 통해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됨 그러나 자산운용에서의 안정성,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효율적 지출을 담보해주는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의 성과관리와 지출 구조조정, 자산운용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자원배분의 효율성

통합을 통해 여유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재정칸막이로 인해 경직된 재정운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음

▮ 환경대응성

기금의 통합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이 담당하는 여러 정책분야 간의 융합이 가능해질 수 있음

이를 통해 부처 내 의사소통이 제고되고 이를 통해 융합사업의 설계와 수행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 실현가능성

법을 개정 혹은 제정하는 데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어 정책책임자의 설득이 필요함

제3절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1. 기금 간 전·출입과 관련한 현행의 법태도

기금 간 전·출입 허용

특별회계와 기금은 모두 특정한 사업과 특정한 정책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재원과 자산을 법률이 정한 지출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특별회계·기금 내의 자금은 모두 이른바 칸막이가 있는 것으로서 회계와 기금 간 경직된 재정운용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이는 특정회계 또는 기금에는 여유자금이 있는 반면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상호융통되지 못하는 성격에 기인하는 것임

따라서 경직된 재정운용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출입을 제도상 허용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13조(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그러나 특별회계와 기금은 모두 특정한 사업과 특정한 정책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입과 전출은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계리되는 자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회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용이 핵심적 내용을 이루게 됨
- 따라서 회계·기금 간 전·출입으로 인해 회계와 기금의 고유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됨.

회계·기금 간 전·출입의 대상이 되는 재원은 '여유재원'에 한정됨

- 여유재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통상 회계 및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고도 남는 재원으로 이해될 수 있음.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 및 전출과 관련하여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제2조 상의 부담금이 주된 재원이 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은 회계·기금 간 전입과 전출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현재 시행령 규정이 부존재하므로 재원이 차입금 또는 부담금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회계· 기금 간 전출입이 금지되는 특별회계, 기금은 없음

▮ 부담금과 기금 간 연계활용에 대한 검토

부담금은 해당 공익사업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납부의무자에게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그에 따라 각 기금의 지출용도도 부담금 부과 공익사업에 부합하게 규정되어 있음

부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기금 간 재원을 전입 및 전출하는 것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소>

-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부과되는 금전납부의무로서 조세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짐.
- · 따라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조세적 수단을 통하지 않고 부담금의 신설을 통한 재정수입을 늘이기 위해 무분별하게 부담금이 남설되는 것을 막고자 아래의 네가지 정당화 요소를 요구하고 있음.
- · 집단동질성(Gruppenhomogenität): 부담금납부의무자들은 일반국민 또는 다른 집단과는 명확하게 구별되어 동질성을 지니는 특정집단이어야 함.
- · 객관적 근접성(evidente Sachnähe):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들은 특별부담금의 부과목적에 대해 일반 국민 또는 다른 집단보다 실체적으로 명백한 관련성을 가져야 함.
- · 집단책임성(Gruppenverantwortung): 부과목적과의 실체적 연관성으로 인해 동질집단에 대하여 특정 정책 또는 과제의 수행에 관한 조세외적 금전납부를 부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인정되어야 함.
- · 집단효용성(Gruppennützigkeit): 집단효용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부담금에 의해 형성된 자금은 납부 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
- 부담금은 위와 같은 헌법적 정당화 요소를 충족시킨 경우에만 납부의무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바, 핵 심적 요소는 특정의 공익사업과 객관적으로 근접한 사람에게 부과되어야 함.
- · 따라서 특정 기금의 재원이 되는 부담금이 존재하는 경우, 특정 기금의 용도 즉, 기금 목적 사업과 재원인 부담금의 목적 사업이 동일해야 함.

「국가재정법은 회계 및 기금 간 전입 및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9개의 특별회계와 기금을

열거하고 있음(제13조 제1항)

- 따라서 당해 9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여유재원이 존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하더라도 전입 혹은 전출이 허용되지 않음
- 제13조 제1항 제10호에서도 차입금이나 부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면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전입 및 전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까지 대통령령이 존재하지 않아 이 규정에 의해 전입 및 전출이 허용되지 않는 회계 혹은 기금은 없었음.

그러나 부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 전입 혹은 전출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부담금이 가지는 본원적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부담금은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 상의 규정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의 근거 법률이 규정한 특정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지출되어야 함.

- 따라서 성격이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전입 혹은 전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상 전입 및 전출 규정에 따라 법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내용상의 문제를 야기함
- 그렇기에 부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에서 타 회계 혹은 기금으로의 전출에 대한 적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특별회계와 기금

국가의 특정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한에서 벗어나 운용되는 기금은 그 성격을 비추어볼 때, 특별회계와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음(나중식)

- 그러나 특별회계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것이며 동 회계연도 안에 모두 지출될 것이 예견되는 반면, 기금의 경우 원본의 잠식됨이 없이 운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음.
- 즉,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공기금은 특별회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예산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일반적 특징은 아래와 같음(이종익·강창구, 2004)

첫째, 예산은 특정한 세입을 특정 용도의 목적으로 지출하도록 정하지 않음(non-affection)

- 그러나 기금은 특정수입을 특정지출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둘째, 예산은 세법상의 조세고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과세하여 징수하며 또 그 지출에 있어 무상급부가 원칙인데, 기금은 유상적인 경우가 많음

셋째, 예산의 운용은 작성과 확정 그리고 집행 단계에서 법률에 의하여 엄격히 이루어지며, 특히 예산은 확정된 금액 이상의 집행이 불가능하지만, 기금의 경우 비교적 탄력적이며 유연 한 집행이 가능함.

- 물론, 「국가재정법」 개정 전에는 예산이 각 부처의 예산요구에 의해 예산주무부서의 사정을 거쳐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데 반해, 기금은 기금운 용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확정되어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나, 개정 후 기금 또한 예산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가 확정하게 되어 개정 전보다는 국회의 통제가 강화되었음(국가재정법 제68조)
- 그러나 예산과 기금의 탄력성은 자금의 운용 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임
- 즉,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각 항목의 금액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예산한도를 넘어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반면, 기금의 경우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은 주요항목 (프로그램) 기준으로 20%(금융성 기금의 경우 30%)까지 지출한도를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
- 이는 기금의 변경된 지출이 원래 계획의 20%를 초과할 경우에만 국회에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을 의미함(임명현, 2010)
- 또한 「국가재정법」 제5조 제2항은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산과 비교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설치사유	·국가고유의 일반재정활동	·특정사업운용 ·특정자금보유운용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의 신축적 운용에 대한 필요가 있을 때
재원조달 및	·조세수입을 주재원으로	·일반회계 및 기금의	·출연금과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운용 형태	·무상급부원칙	운용형태 혼재	융자사업 등의 유상급부제공
확정절차	·중앙관서장의 예산요구서작성→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조정→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적법한 집행을 원칙으로 엄격한 통제		·예산보다 합목적적 집행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비교적 자율성과 탄력적 운용이 보장됨
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계획변경	·추경예산의 편성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기금은 30%) 이상 변경 시 국회 의결 필요
결산	·국회의 결산심의		

2. 새로운 방안에 대한 재정법적 검토

▮ 전입전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법정 배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제안됨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배분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익금을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안정적으로 배분할 필요성이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규정하여야 함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현재 칸막이 재정으로 인한 경직적 재정운용이 문제가 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함

▮ 융합계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문화예술, 관광, 체육, 영화에 대한 통합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로 하나의 계정을 신설하는 방식이 제안됨

- 그러나 주요 재원을 부담금에 의존하는 기금의 경우, 목적 사업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융합계정으로의 전출은 부담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적절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금의 재원 중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융합계정으로의 전출은 각 기금의 법정 지출용도 외의 사업에 지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기금과 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하는 문제가 발생함

설령 융합계정이 가능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이 융합계정을 어떠한 기금에 설치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함

- 융합계정만이 별도로 존재하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사실상 융합'기금'의 설치를 고려하거나 국민 체육진흥기금 혹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하위계정으로 신설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제외한 기금의 설치 법률에 융합기금으로의 전출을 지출용도 또는 사용용도 규정에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기금 통합에 대한 검토

동일한 중앙관서장 및 동일한 기금관리주체 아래 하나의 기금만을 운영하고 세부적으로는 현행의 6개 계정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기금의 외형적 개수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함

다만 6개 계정으로 세부 구분되고 이에 대한 법률상의 근거도 뒤따라야하므로 제도상 큰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각 계정이 가지는 법정 고유사업이 있는 경우, 계정의 고유사업 수행이 우선이므로 계정 간 전입 및 전출의 유연성이 대폭 증대되어 보장되는지는 불분명함

또한 계정 간 전입 및 전출에 관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계정 간 전입 및 전출은 가능하겠으나, 회계·기금 간 전·출입의 경우에 있어서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절차상 편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 회계 기금 간 전출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해야 함(「국가재정법」 제13조 제2항)

각 계정별로 계정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이 계정의 지출용도를 구체적으로 법정화한다면 마찬가지로 계정 간 탄력적 재정운용이 지금보다 더욱 수월하다고 보장하기 어려움

3.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법적 검토

■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

기존의 기금 사업을 뛰어넘는 상위 카테고리의 사업을 위해서는 유사 기금의 융합보다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가 적절함

특히 문화체육관광이라는 포괄적 정책목적을 수행하거나 이에 대한 중첩적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의 운영방식으로서 현재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음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되는 영화부담금이 폐지될 예정임과 동시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출국납부금도 감액이 예정되어 각 기금에 있어서 부담금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칭)문화발전특별회계'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별회계의 제도상 장점

문화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및 정부출연금이 주요재원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기금보다 더욱 광범위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해짐

또한 기존의 부담금이 재원이 되는 목적사업 카지노사업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관광진흥개

발기금을 특별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특별회계 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계정을 제외하고서는 회계운영에 있어서 광범위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가칭)문화발전특별회계법'의 제정이 필요함

- 또한「국가재정법」제4조 제3항 별표도 동시에 개정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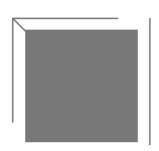
▮ 특별회계의 제도상 단점

다만 특별회계는 예산의 한 종류이므로, 기금과 달리 더욱 엄격한 재정통제가 가해짐

- 특별회계를 통해 다양하고도 포괄적인 문화예술체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는 예산 수립 시 예산항목에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며, 또한 국회의 심의·확정이 필요함
- 따라서 국회가 삭감할 경우에는 삭감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특히, 재정운용에 있어서 탄력성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냄

- 문화예술관광의 재정운용 방식을 특별회계로 할 경우 국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은 지출한도액이 되어 예산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참고문헌

연구보고서

감사원 감사연구원(2015), 『사업성 기금의 수입·지출 분석과 재정위험』.

강주영·현대호·김도승(2010), 『재정법제의 현대적 과제 : 공기금의 관리 · 통제』 한국 법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14),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국회예산정책처(2022), 『목적세 제도의 평가와 정책방향 연구』.

국회예산정책처(2023a),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 인구위기 대응전략: 2.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회예산정책처(2023b),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

기획재정부(각 연도), 『각 연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기획재정부(2001), 『2001년도 기금현황』.

기획재정부(2018),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보고서』.

기획재정부(2021),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분야』

기획재정부(2023),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기획재정부(2023),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기획재정부(2024),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주요내용』.

김미숙(2016),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생활체육정책 방향과 과제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분석 기반고령인구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개발원.

김지민·배성희(202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화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개선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현안분석, 제262호.

김학수·이태석·홍우형(2021), 『코로나19 이후 조세·재정정책 방향의 재검토』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주·최경은·김형종(202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내관광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형종·송철재·송정연·이관영·윤수영(2022),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코로나19의 영향과 변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광빈·정연백·탁현우(2012),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기금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 정책처.

문화체육관광부(각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23a), 『2023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3b), 『2023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23c), 『2024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2023d), 「제1차 스포츠진흥계획」.

성창훈(2022), 『인구감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2022년 9월호.

유홍식·이은주·이지은(2017), 『언론진흥기금 활용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윤소영·김영현(202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적 영향분석 및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소영·김윤경(2023), 『고령층 문화누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태열(2023), 『소비 회복 여력 평가』. KIRI 리포트 제574호.

임명현(2010), 『공적 기금 관리운용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0』.

조성일(2004),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관한 공청회』, 한국개발연구원.

진보라·조아라·김진영·김현정(2022), 『관광 트랜드 분석 및 전망 2023-20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은행(2024), 『2023년도 연차보고서 1. 경제동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2024), 『5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문화분야 재정구조 개선 및 신규과제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재정 대응방향』.

한국언론정보학회(2011),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모델 개발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재정학회(2020),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마련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황성현(2003), 『한국의 기금제도 : 현황, 문제점 및 정책방향』.

황윤원(2022), 『범정권·범부처 국가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정책 FOCUS, 2022년 봄호, Vol.32.

International Monetary Funds(2001),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J.

보도자료

기획재정부(2023). 2024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2023.12.21.

기획재정부(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자료, 2024.05.17.

대통령실(2024). 尹 대통령,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보도자료. 2024.05.17.

문화체육관광부(2023d). 2028년까지 국민 스포츠참여율 70%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한다. 2023.12.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22).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2022.12.28.

통계청(2023).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023.12.14.

통계청(2024).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4.2.29.

연구논문 및 단행본

강혜진·김병섭(2022), 장관의 영향력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 예산과정에서의 패러다임 모형 탐색, 한국정책학회보, 31(2), 31-70.

금경만(2020), 중앙정부 체육예산의 조성 및 배분에 관한 연구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금현섭(202), 이론기반평가(Theory-based evaluation)의 이론적 재조명,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30), 17-41.

김덕파·어윤종(2022),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의 원인 분석: 지출목적별 물가지수를 중심으로』. 한국경제포럼, 15(2), 1-20.

김은규(2018),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에 따른 지역신문의 변화 경향성 탐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9(1), 481-518.

김우철·신영효(2022),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조성방안, 신용카드리뷰, 15(2), 62-85.

박종미(2017),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방법으로서 부담금에 대한 입법제안,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109-128.

유승원·김수희(2020), 정부예산과 재정관리 : 이론과 현장 실무로 풀어쓴 재무행정 : 제2판, 문우사. 정광호·안상열(2018), 이용자중심 재정전달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행정학보, 15(3), 81-108.

주상원·이재호·김병조(2022), 증거기반정책의 발전과 성숙: 미얀마, 인도네시아, 홍콩, 일본, 한국 사례비교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3(3), 97-131.

Mallach, Alan(2024), Smaller Cities in a Shrinking World: Learning ti Thrive Without Growth, 김현정 역, 축소되는 세계: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지금 세계는 모든 것이 축소되고 있다. 경기도: 사이.

Büchler, Alexandra and Trentacosti, Giulia (2015) Publishing translated literature in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1990 - 2012 statistical report, Wales: Literature Across Frontiers.

CEATL (2022) Survey on Working Conditions 2020, European Council of Literary Translators' Associations.

Dickens, Eric (2002) 'Literary Translation in Britain and Selective Xenophobia'. CLCWeb: Comparative Literature and Culture 4.1.

Donahaye, Jasmine (2012) Three percent? Publishing data and statistics on translated literature in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Literature Across Frontiers.

EC, CIOL and ITI (2017) UK Translator Survey Fin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Representation in the UK, the Chartered Institute of Linguists and the Institute of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Fock, Holger, De Haan, Martin, and Lhotová, Alena (2008) Comparative income of literary translators in Europe, Brussels: European Council of Literary Translators'Associations.

Hoyte-West, A (2023) 'University-Based Training Courses for Literary Translator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n Overview from the United Kingdom'. Translation Studies: Theory and Practice3(1): 5-13.

J.Q.Wilson(1984), The politics of regulation, The Political Economy: Readings in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American Public Policy, Routledge.

Koster, Cees (2014) 'Literary Translation', in Translation: A Multidisciplinary Aproach, eds Juliane House, London: Palgrave Macmillan.

LeLoup&W.Moreland(1978) Agency strategies and executive review: The hidden politics of budgeting,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3), 232-239.

Lindblom(1959), The science of muddling throug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19(2), 77-88.

Ruffo, Paola (2018) 'Human-Computer Interaction in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ors on Technology and Their Roles', Proceedings of the 40th Conference Translating and the Computer: 127-131.

Ruffo, Paola (2021) In-between role and technology: literary translators on navigating the new socio-technological paradigm, Diss, Heriot-Watt University.

Senge, Peter(2014), The fifth discipline fieldbook: Strategies and tools for building a learning organization, Crown.

Stock, Robert (2020) Celebrity Translation in British Theatre: Relevance and Reception, Voice and Visibility,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Vieira, Lucas Nunes (2020) 'Automation anxiety and translators', Translation Studies13(1): 1-21.

ATLF, 2020, La condition socio-économique des traducteurs littéraires.

ATLF, ATLAS, 2023, IA et traduction littéraire: les traductrices et traducteurs exigent la transparence.

ATLAS, 2023, Bilan d'activité 2022.

홈페이지

글밥 아카데미, http://www.glbab.com/

한겨레교육, http://www.hanter21.co.kr/jsp/index.jsp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s://www.kf.or.kr/

한국번역가협회, https://kstinc.or.kr

한국자막번역원, http://www.subtitle.co.kr/

한국학진흥사업단, http://ksps.aks.ac.kr/

CLASS101, https://class101.net/ko/browse?noRedirect=true

ITT시험위원회, http://www.itt.or.kr/

Advanced Translation Workshops (N/A) British Centre for Literary Translation, https://www.uea.ac.uk/web/groups-and-centres/british-centre-for-literary-translation/advanced-translation-workshops, accessed 12 July 2023.

Anderson, Porter (2021) 'Translators in the UK Call for Racial Equality in Literary Translation', Publishing Perspectives,

https://publishingperspectives.com/2021/04/translators-in-the-uk-call-for-racial-equality-in-literary-translation/, 6 April, accessed 18 August 2023.

Aply Now (N/A) National Centre for Writing,

https://nationalcentreforwriting.org.uk/get-involved/translators/etm/aply/, accessed 24 August 2023.

GeotheUK (2020) Al and literary translation - How close does machine translation get to human translators?, https://www.youtube.com/watch?v=q6BBoDvQBSI, 21 September, accessed 18 August 2023.

Inbox Translation (2020) 'Freelance Translator Survey 2020', Association of Translation Companies, https://atc.org.uk/freelance-translator-survey-2020/, 18 December, accessed 18 August 2023.

Inbox Translation (2022) '[Research] NHS spending o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ervices', Inbox Translation,

https://inboxtranslation.com/resources/research/nhs-spending-translation-interpreting-services/, accessed 30 July 2023.

International Script Submissions (N/A) Royal Court Theatre,

https://royalcourttheatre.com/international-script-submissions/, accessed 17 July 2023.

Introducing the literary translation database (2020), National Centre for Writing,

https://nationalcentreforwriting.org.uk/article/introducing-the-literary-translation-database/, 29 September, accessed 3 July 2023.

Introduction to Translation(N/A) Royal Court

Theatre, https://royalcourttheatre.com/introduction-to-translation/, accessed 17 July 2022.

Literature Projects (2021) Arts Council England,

https://www.artscouncil.org.uk/ProjectGrants/project-grants-information-sheets, accessed 21 August 2023.

Name the Transloator (N/A) The Society of Authors,

https://www.societyofauthors.org/Where-We-Stand/Credit/Name-the-Translator, accessed 27 July 2023.

PEN Translates (N/A) English PEN, https://www.englishpen.org/translation/pen-translates/, accessed 17 July 2023.

Rates and Fees (N/A) The Society of Authors,

https://societyofauthors.org/Advice/Rates-Fees, accessed 13 July 2023.

Shaffi, Sarah (N/A) The Art of Translation,

https://thebookerprizes.com/the-booker-library/features/the-art-of-translation, accessed 11 July 2023.

The Hub (2019), 'Jeremy Tiang Announced as LBF's Inaugural Literary Translator of the Fair', The London Book Fiar,

https://hub.londonbookfair.co.uk/jeremy-tiang-announced-as-lbfs-inaugural-literary-translat or-of-the-fair/, accessed 17 Aug 2023.

The Lit Flatform (N/A), 'Twelve UK British writers announced for British Council translation competition',

https://theliteraryplatform.com/news/2016/04/twelve-uk-british-writers-announced-as-part -of-the-translation-competition-for-british-councils-uk-russia-year-of-language-and-literatur e-2016/, accessed 17 Aug 2023.

Translation Suport and Funding (N/A) Publishing Scotland,

https://www.publishingscotland.org/what-we-do/translation-fund-2/translation-fund/, accessed 17 July 2023.

#TranslatorsOnTheCover (N/A) The Society of Authors,

https://www2.societyofauthors.org/translators-on-the-cover/, accessed 21 August 2023.

Wood, Gaby. and Rocco, Fiammetta (2023) 'Eight essential questions about the International Booker Prize', The Booker Prizes, 13 March,

https://thebookerprizes.com/the-booker-library/features/eight-essential-questions-about-the-international-booker-prize, accessed 11 July 2023.

신문기사 및 칼럼

연합인포맥스(2023.9.13.), "[장재철의 경제보기] 글로벌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80789

장민(2022.6.13.), "우리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국가미래연구원 ifs POST,

https://www.ifs.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4297

[연구진]

- 연구책임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김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 연구원김도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 안정화 및 연계활용 방안 연구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 쇄 일 2024년 6월

2024년 6월

발 행 일 인 쇄 인

ISBN 비매품